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공동연구자: 김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박수연 (육아정책개발센터)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오병욱 (한국교육개발원)

김형은 (한국교육개발원)

기 획 재 정 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내용

- 이 연구는 육아 관련 기업들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절한 실시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둠.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을 추정함.
 - 둘째,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 구조 및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시설 설치 미활성화 이유를 파악함.
 - 셋째, 관련 기업과 시·군·구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을 모색함.
 - 넷째,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하여, BTL방식 보육시설 도입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의 방법

- 국내외 BTL사업 관련 문헌과 통계 등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관계 부처 BTL사업 담당자, 육아 관련 사업체 실무자, BTL사업 참여 건설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BTL사업 현황, 복합화 보육시설 포함 가능성과 포함 시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였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및 수용성을 조사하였음.
- 전국 229개 시·군·구의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및 수용성을 조사하였음.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요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구분되며, 2007년 현재 30,856개소 보육시설에서 약 110만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은 1,748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 아동은 119,141명으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8%임.
-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은 2008년 791개소이며, 이 중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55.6%인 440개소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2007년 44.4%인 351개소임.

나. 보육비용

-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별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됨.
 - 보육비용 지원과 별도로 세제 혜택도 주어짐.
- 2008년도 보육예산은 총 1조 4000여억원으로, 이 중 97%가 보육료,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금임.
- 총 보육비용과 보육료는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다. 보육시설 운영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각 연령별 교사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정부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입법화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육과정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 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음.
- 정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에게 보육서비스에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 기준을 제시함.

라. 보육시설 재무회계

- 정부는 2006년에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하였음.
 - 재무회계는 그 동안 국공립보육시설 등 인건비 지원 시설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보육비용 지원이 증가하면서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됨.

3.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과 수요

가.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 현황(2008)

- 시·도 단위의 보육 공급률은 49.4%이고 이용률은 38.8%임.
- 시·군·구 단위의 보육 공급률 최다 빈도는 41~50%로 59개 시·군·구가 해당되고, 이용률 평균은 42.8%임.
- 읍·면·동 단위의 보육 공급률 최다 빈도는 41~50%로 486개 읍·면·동이 해당되고, 이용률 평균은 41.2%임.

나. 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 지역

- 영유아수가 100명 미만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은 409개이고,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립유치원이 모두 없는 읍·면·동은 29개임.
- 영유아수가 100명 이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은 143개이고,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립유치원이 모두 없는 읍·면·동은 38개임.

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공무원 의견

- 조사된 226개 시·군·구의 약 46%인 105개 지역 공무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 국공립보육시설 충분, 아동감소, 재정부담 순으로 나타남.

4.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와 보육시설

- BTL사업 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Build), 시설 완공시점에 민간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Transfer)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하며, 이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Lease) 약정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함.
 - 민간투자 대상 시설은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44개 사회기반시설임.
 - 민간투자자 수익보장 방안으로 주무관청은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의 합인 정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함.
- 기존의 BTL사업은 대체로 대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육시설 설치는 소규모 BTL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 시 복합화 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국방부만 활발하게 추진하였음.
- 일본의 사례로 이치가와제7중학교의 교사 중 노후화된 일부를 개축하여 공회당, 보육소, 케어하우스 등을 한 건물에 복합화하여 신설하였음.

5.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 가능성 모색

가.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

- 현재 보육제도 하에서는 육아서비스 관련 기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투자 의지는 약하지만, 운영조건을 현재와 달리한다면 아동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교, 한솔, 웅진씽크빅, 몬테소리, 킨데솔레 등이 대체로 긍정적 관심을 나타냄.
 -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상 기업이 사업시행법인(SPC)을 운영할 가능성은 높음.
 - 보육시설 운영을 통한 유무형의 수익 창출 모델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함.

-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위한 투자로서의 참여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공익성을 바탕으로 소규모로 투자하여 시설이 완공 시 위탁운영권을 보장 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함.

나. 직장보육의무 설치 사업장의 수용 가능성

- BTL방식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9%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시설 위탁운영권은 희망 41.4%. 희망하지 않음 58.6%로 나타남.
- BTL방식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직장 내 보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6%, 추진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15.6%로 나타남.

다. 시·군·구의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 수용 가능성

-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의향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5개 지역 중 48%인 108개 지역은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었음. 설치가 어렵다고 보는 지역은 48개 지역,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69개이었음.
 - 설치가 어려운 이유는 민간시설의 반발, 운영권 장기간 부여, 민간투자 상환금에 대한 부담 순이었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불필요, 시·군·구 비용부담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27개의 시·군·구에서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자금 상환기간, 보육료 수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5개는 동의, 21개 지역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여 모두 26개 지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인건비 미지원 및 별도의 보육료 체계 적용, 특정프로그램 실시, 재무회계규칙의 예외 적용, 평가인증 유예, 교사대 아동수 예외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8~17개 지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음.

- BTL방식으로 보육시설 설치 후 일부를 직장보육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4.8%인 147개 지역에서 찬성 의사를 나타냄.
 - 반대 이유로는 국공립보육시설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과반 수이고, 약 40%는 지역사회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였음.

6.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가. 모델 설정

- 운영형태, 운영, 서비스 모형 설정
 - 준거사업의 운영서비스 제공을 전제, 공사비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이며, 공사비의 6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함.
- 5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보육료비율을 검토하여, 제 5안에 대한 단독형 및 통합형으로 구분함.
 - 단독형은 보육시설 1개소, 138명, 1,040㎡으로 설정
 - 통합형은 보육시설 3개소, 414명, 3,120㎡으로 설정
- 금융비용은 자기자본비율 5%에 나머지 95% 사업비는 은행차입을 통해 전액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타인자본비율 95%에 대한 금융비용을 임대기간 10년 장기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건설이자는 7.04%인 것으로 가정함.
 - 건축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과 운영준비금,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보육관련비로 구분, 유비보수비 산정
- 보육료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지출비용에서 타 시설 보다 낮음으로 이에 따른 잉여 수익을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사업성 검토

-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IRR과 자본비용(WACC)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짐. 즉, IRR은 특정 투자안을 수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고, WACC는 그 투자에 소요되는 총자본의 비용이므로, 어떤 투자안의 IRR이

WACC보다 크다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육시설 BTL의 경우 IRR이 WACC보다 약 1.14%가 높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현재가치(NPV)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투자안의 NPV가 영(0)보다 크다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투자안의 경우 NPV가 9(26)천원으로 산출되므로 투자안을 수행할 경우 현재가치로 동 금액만큼의 이익이 예상되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WACC | IRR | NPV |
|-----|------|-------|------|
| 단독형 | 5.5% | 6.53% | 9천원 |
| 통합형 | 5.5% | 6.53% | 26천원 |

- 사업 참여자는 단독형 보육시설보다 통합형 보육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됨.
- 민감도 분석 결과 수익률은 동일함.

다. 시사점

- 민감도 분석결과 가산율(α)이 1.97%로 기존 학교 BTL사업 평균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협상 가능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 이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쟁에 의해 확정될 사항으로 사업구조, 시기, 경쟁률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입지조건,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단독형에 비해 NPV가 높은 통합형 사업모델의 민간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 3 |
| 3. 연구의 방법 | 4 |
| II.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요 | 6 |
| 1. 보육시설 설치 | 6 |
| 2. 보육비용 | 17 |
| 3. 보육시설 운영 | 27 |
| III.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과 수요 | 36 |
| 1.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 현황 | 36 |
| 2. 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 지역 | 43 |
| 3.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공무원 의견 | 50 |
| 4. 소결 | 53 |
| IV.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와 보육시설 | 55 |
| 1. BTL사업 방식의 개요 | 55 |
| 2. BTL방식의 복합화 보육시설 추진 | 67 |
| 3. 일본의 사례: 학교 복합화 보육시설 | 70 |
| 4. 소결 | 73 |
| V.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 가능성 모색 | 75 |
| 1.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 조사 결과 | 75 |
| 2. 직장보육의무 설치 사업장의 수용 가능성 | 94 |
| 3. 시·군·구의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 수용성 | 98 |
| 4. 소결 | 115 |

| | |
|---------------------------------|-----|
| VI.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 117 |
| 1.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의 기본 입장 | 117 |
| 2.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 설정 | 123 |
| 3. BTL방식의 보육시설 사업성 검토 | 132 |
| 4. 소결 | 144 |
| 참고문헌 | 147 |
| 부록 | 149 |

표 목 차

| | | |
|-------------|--|----|
| 〈표 II-1- 1〉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 7 |
| 〈표 II-1- 2〉 |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 8 |
| 〈표 II-1- 3〉 |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및 비율(2007) | 8 |
| 〈표 II-1- 4〉 |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비율 | 10 |
| 〈표 II-1- 5〉 | 국공립보육시설 건축비 지원 분담금(예) | 12 |
| 〈표 II-1-6〉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부대 비용 | 12 |
| 〈표 II-1- 7〉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실적 및 계획 | 13 |
| 〈표 II-1- 8〉 |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 15 |
| 〈표 II-1- 9〉 |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2007) | 15 |
| 〈표 II-1-10〉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저조 이유 | 16 |
| 〈표 II-1-11〉 |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계획 | 17 |
| 〈표 II-2- 1〉 |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 18 |
| 〈표 II-2- 2〉 | 연도별 보육료 지원단가 | 19 |
| 〈표 II-2- 3〉 | 보육시설 지원 계획 및 실제(2008) | 19 |
| 〈표 II-2- 4〉 | 지자체별 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 | 20 |
| 〈표 II-2- 5〉 |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 21 |
| 〈표 II-2- 6〉 | 보육사업 예산(2008) | 22 |
| 〈표 II-2- 7〉 |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 23 |
| 〈표 II-2- 8〉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 25 |
| 〈표 II-2- 9〉 |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 26 |
| 〈표 II-2-10〉 | 보육료 지원 현황 | 26 |
| 〈표 II-3- 1〉 |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입예산 관·항·목 | 31 |
| 〈표 II-3- 2〉 |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출예산 관·항·목 | 31 |
| 〈표 II-3- 3〉 |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추진비 기준 | 31 |
| 〈표 II-3- 4〉 | 보육시설 재무 회계 사례 대상 시설 특성 | 32 |
| 〈표 II-3- 5〉 | 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 33 |
| 〈표 II-3- 6〉 | 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2007) | 34 |
| 〈표 II-3- 7〉 | 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 비율(2007) | 34 |
| 〈표 II-3- 8〉 | 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 비율(2007) | 35 |

| | | |
|--------------|--|-----|
| 〈표 III-1- 1〉 |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 37 |
| 〈표 III-1- 2〉 |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분포 | 38 |
| 〈표 III-1- 3〉 |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 39 |
| 〈표 III-1- 4〉 |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분포 | 41 |
| 〈표 III-1- 5〉 |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 42 |
| 〈표 III-2- 1〉 | 시·도별 조건별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 43 |
| 〈표 III-2- 2〉 | 아동수 100명 미만, 국공립보육시설·공립유치원 미설치 읍·면·동 | 44 |
| 〈표 III-2- 3〉 | 시·도별 조건별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 45 |
| 〈표 III-2- 4〉 |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중 보육 공급률이 저조한 읍·면·동 | 46 |
| 〈표 III-3- 1〉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예정 | 50 |
| 〈표 III-3- 2〉 |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 및 필요 규모 | 51 |
| 〈표 III-3- 3〉 | 국공립시설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 이유 | 52 |
| 〈표 IV-1- 1〉 | BTL 사업비 구성 항목 | 60 |
| 〈표 IV-1- 2〉 | '05년-'08년 BTL사업 현황 | 64 |
| 〈표 IV-1- 3〉 | 사업 규모별 장단점 | 66 |
| 〈표 IV-2- 1〉 | BTL방식에 의한 군 관사 복합화 보육시설 설치 계획('10~'14) | 67 |
| 〈표 IV-3- 1〉 |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사업개요 | 71 |
| 〈표 IV-3- 2〉 | 일본 이치가와시와 사업자의 역할 분담 | 72 |
| 〈표 V-1- 1〉 | 기업의 의견 조사 시 제시된 BTL사업 개요 | 76 |
| 〈표 V-1- 2〉 | BTL사업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개요 | 94 |
| 〈표 V-2- 1〉 |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유 | 95 |
| 〈표 V-2- 2〉 |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 | 95 |
| 〈표 V-2- 3〉 |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96 |
| 〈표 V-2- 4〉 | BTL방식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가능성 | 96 |
| 〈표 V-2- 5〉 | BTL방식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시 장점 | 97 |
| 〈표 V-2- 6〉 | BTL방식 도입 시 위탁운영권 희망여부 | 97 |
| 〈표 V-2- 7〉 | BTL방식에 의한 설치의무 이행의 어려움 및 불가능한 이유 | 98 |
| 〈표 V-3- 1〉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민간이 기여한 사례 | 99 |
| 〈표 V-3- 2〉 |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의 사업개요 | 101 |
| 〈표 V-3- 3〉 |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104 |

| | |
|--|-----|
| 〈표 V-3- 4〉 BTL방식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불필요한 이유 | 105 |
| 〈표 V-3- 5〉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의사별 부지 제공 의향 | 106 |
| 〈표 V-3- 6〉 부지 제공이 가능한 지역 | 107 |
| 〈표 V-3- 7〉 민간투자자의 장기 위탁 운영권 보장에 대한 의견 | 108 |
| 〈표 V-3- 8〉 민간지분 활용 의견별 위탁운영권 부여에 대한 의견 | 108 |
| 〈표 V-3- 9〉 위탁운영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 | 109 |
| 〈표 V-3-10〉 BTL방식에서 운영상 자율권에 관한 원칙 동의 여부 | 110 |
| 〈표 V-3-11〉 BTL 보육시설 운영자율권 동의한 지역 | 111 |
| 〈표 V-3-12〉 운영 자율권에 동의하는 경우, 각 조건별 의견 | 112 |
| 〈표 V-3-13〉 구체적 자율성 조건별 동의하는 지역 | 112 |
| 〈표 V-3-14〉 정원 일부를 근로자 자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113 |
| 〈표 V-3-15〉 근로자 자녀 이용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 | 114 |
| 〈표 VI-1- 1〉 설립·운영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 120 |
| 〈표 VI-1- 2〉 공립 보육시설과 BTL 보육시설과의 차이점 | 121 |
| 〈표 VI-2- 1〉 시설별 지원현황 | 123 |
| 〈표 VI-2- 2〉 월 보육료 상한액(2008년 기준) | 124 |
| 〈표 VI-2- 3〉 준거사업: 하나푸르니어린이집(2008년도 개원) | 125 |
| 〈표 VI-2- 4〉 연령별 보육인원 및 교사수 | 125 |
| 〈표 VI-2- 5〉 대상시설 규모 | 126 |
| 〈표 VI-2- 6〉 공립보육시설과 대상모델의 원아 수 및 보육료비교 | 126 |
| 〈표 VI-2- 7〉 대상시설 보육교사 배치 및 인건비 | 127 |
| 〈표 VI-2- 8〉 대상시설 기타 보육인건비 | 127 |
| 〈표 VI-2- 9〉 보육시설 연간운영비 사례 | 128 |
| 〈표 VI-2-10〉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설정 | 128 |
| 〈표 VI-2-11〉 보육료 비율 산정기준 | 129 |
| 〈표 VI-2-12〉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의 특징 | 129 |
| 〈표 VI-2-13〉 연간 지출비용 | 130 |
| 〈표 VI-2-14〉 BTL 보육시설 사업모델 | 131 |
| 〈표 VI-2-15〉 통합형 모델 개요 | 131 |
| 〈표 VI-3- 1〉 기본가정 | 132 |
| 〈표 VI-3- 2〉 사업모델 개요 | 134 |

| | |
|-------------------------------------|-----|
| 〈표 VI-3- 3〉 운영제경비 항목 | 135 |
| 〈표 VI-3- 4〉 보육시설 운영비산정 | 135 |
| 〈표 VI-3- 5〉 FCF 산출 기본 가정 | 138 |
| 〈표 VI-3- 6〉 단독형 FCF 현재가치 | 139 |
| 〈표 VI-3- 7〉 통합형 FCF 현재가치 | 139 |
| 〈표 VI-3- 8〉 사업형태별 잉여현금흐름 상세내역 | 139 |
| 〈표 VI-3- 9〉 사업형태별 총민간투자비 | 140 |
| 〈표 VI-3-10〉 사업형태별 연간시설임대료 | 141 |
| 〈표 VI-3-11〉 단독형 분석 요약 | 142 |
| 〈표 VI-3-12〉 통합형 분석 요약 | 142 |
| 〈표 VI-3-13〉 사업형태별 가산율 민감도 요약 | 144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변동 추이 | 9 |
| [그림 II-1-2]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절차 | 13 |
| [그림 II-2-1] 영아 보육비용 지원 개념 | 25 |
| [그림 III-1-1] 시·도별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및 현원 비율 | 37 |
| [그림 III-1-2]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 40 |
| [그림 III-1-3]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 42 |
| [그림 IV-1-1] BTL사업의 기대효과 | 58 |
| [그림 IV-1-2] BTL사업 민간 참여 체계 | 63 |
| [그림 IV-3-1] 이치가와제7중학교 시설 배치도 | 72 |
| [그림 IV-3-2] 일본 이치가와제7중학교 시설 전경 | 73 |
| [그림 VI-1-1] BTL사업성 확보를 위한 방식 | 122 |
| [그림 VI-3-1] 사업타당성 분석절차 흐름도 | 138 |

부 록 표 목 차

| | |
|---|-----|
| 〈부표 II-3-1〉 보육시설 재무 회계 규칙 내용 | 151 |
| 〈부표 II-3-2〉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입예산 내역 | 153 |
| 〈부표 II-3-3〉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출예산 내역 | 154 |
| 〈부표 II-3-4〉 J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 | 156 |
| 〈부표 II-3-5〉 H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 157 |
| 〈부표 II-3-6〉 K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 158 |

부 록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4-1] 보육시설 예산편성절차 | 152 |
| [그림 II-4-2] 보육시설 결산절차 | 152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양적으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크게 발전되었다. 보육정책의 방향을 공보육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은 낮고 공공부문의 기능이 미흡하며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다. 국공립과 법인, 직장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0%, 아동의 20% 정도를 보육하고 있고, 민간 개인이 투자한 시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의 정원 규모는 50인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아동 20인 이하의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이 14,000여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수의 45%를 차지하면서 보육아동의 약 17%를 보육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은 구조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은 공공시설에 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보육사업은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료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도 지사가 보육료 상한성을 매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나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이외에도 개인이 설치한 시설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적용 시 기타 운영비를 10%를 인정하여 융자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료 상한선 유지는 대규모 자본의 보육시장 유입을 통한 보육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보육료 자율화는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육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접근 가능의 한계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 기능의 작동은 한계가 있다. 보육료 상한선을 철폐하여도 부모의 보육료 부담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기본 보육료 상승 폭은 크지 않겠으나, 일부 지역은 보육료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 있어서 지역적 편차로 국민간의 위화감 발생 소지가 있고, 기본 보육료 보다는 특별활동비 등 부가비용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 높아서 실제로 부모 부담 상승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특별활동은 지나칠 경우에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200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보육정책인 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보육정책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보육료 자율화 상태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의 효과성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규제들이 중산층 이상의 다양한 보육이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영어학원 등 학원 형태의 각종 영유아 반일제 이용 시설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사회자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그 대상 사업 중의 하나로 아동보육시설을 포함하였다. 보육시설을 포함한 이유는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들이 소규모 영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비스도 제각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고 제고해 보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방법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실적은 미미하다. 소규모인 단독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 규모가 대규모인 BTL사업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일부 기능으로 보육시설이 포함되는 복합화 사업으로 시설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군 주거시설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사업이었다. 군 주거시설 내 보육시설은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BTL사업에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유아교육계의 반대로 영아전담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마저도 설치 실적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BTL방식을 이용하여 영유아 관련 기업, 공익법인 등 민간자본이 보육시설 설치에 참여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육시설에의 진출 유도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육아관련 분야 기업들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정한 실시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내용

육아관련 분야 기업 등 민간기업이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절한 실시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 보육정책 개요 파악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설치 유형별 이용 설치 규모, 아동, 보육시설 운영상 특성,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 등 보육과 보육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나.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 추정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 단위 보육수요와 공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보육공급은 전체 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추정하였다.

다.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와 보육시설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 구조의 개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대한 BTL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학교, 군 주거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설치 시 복합화 보육시설의 설치 여부와 미활성화 이유 등을 파악하였다.

라. BTL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모색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모색하였다. 첫째,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과 공익법인 등 민간 기업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탐색하였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중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을 중심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직장보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보육시설 설치 주체인 시·군·구의 BTL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성을 검토하였다.

였다.

마. BTL방식 보육시설 도입 방안 제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도입모형을 제시하였다. 준거모형을 설정하고 BTL사업의 타당성·적격성을 검토하였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과 비용, 건설비, 운영비, 자기자본비용, 상환기간, 설치주체, 운영방식 등에서의 전제조건, 각 주체간 표준 MOU 등 표준 RFP/협약안, 운영법인 중심의 시장구조 유인책 등 보육시설 BTL사업 구조를 제시하였다.

사업 유형은 지역사회 모형으로 단독형과 복수의 시설을 통합하는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재원부담방식별 사업유형으로는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의 BTL사업 참여 모형, 정부 재정+BTL방식 등 다양한 모형을 모색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심층 면담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가. 기존 자료 수집

국내외 BTL사업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2008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면접 조사

관계 부처 BTL사업 담당자, 연구기관 BTL사업 실무자, BTL사업 참여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BTL사업 현황, 복합화 보육시설 포함 가능성과 포함 시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교, 웅진씽크빅, 몬테소리, 킨더솔레, 한솔, 몬테소리 등 유아 관련 서비스 사업체, 푸른보육경영, 모아맘 등 직장보육시설 운영 위탁체, 공익법인, 유한킴벌리 등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기업 특성,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

치 참여 능력, 참여 의사, 참여 조건 등을 조사하였다.

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 조사

보육시설의 설치 주체로 만약에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군·구의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및 수용성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긍정적 수용 태도를 나타낸 시·군·구를 선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자우편과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29개 시·군·구 자료가 수집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국 4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구체적, 심층적 질문을 하여 이들의 사업 수용성 의견을 취합하였다.

2)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의무사업장 담당자 조사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이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사업장 규모와 아동수를 고려하여 100여 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시·군·구 공무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자우편과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II.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요

제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비용, 시설 운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보육시설 설치 유형별 설치 규모와 이용 아동 등을 파악하고 특히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의 최근 변동 추세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전반적인 보육비용 지원 제도와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 보육시설 운영상 지켜야 하는 법 및 제도적 사항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평가인증, 재무 회계 규칙 등을 검토하였으며, 재무회계와 관련해서는 사례를 제시하여 보육시설의 재정 측면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1. 보육시설 설치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1) 시설 설치제도

현재 제도권 안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2005년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되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998년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던 것을 다시 인가제로 환원하였고, 가정보육시설도 법 제정 이후 신고제이었던 것을 2005년부터 인가제로 바꾸어 설치 규정을 강화하였다. 시설 설치는 1층을 원칙으로 하고 1층 사용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받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비는 중앙정부가 평당 건축비 단가의 1/2만 지원하고 나머지 1/2는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2008년 지원단가는 m²당 1,201,300원이며 최대 396m²까지 지원한다.¹⁾

1) 2004년 이전까지는 법인보육시설도 건축비를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남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설 설치 시 3층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 사업주가 설치 주체이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설치비를 융자하고 있다. 이외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일부 기업주 자부담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며 설치비의 7%를 세액 공제한다.

〈표 II-1-1〉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 지원종류 | 지원내용 |
|---------------------|--|
| 설치비 융자 (고용보험기금) | - 연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업주단체 1%, 대기업 2% • 최고 5억,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 설치 무상지원 (고용보험기금) |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 지원 • 시설전환비 한도는 1억원, 단체의 경우 2억원. - 유구비품비는 교재교구, 장비구입 비용으로 설치시 최고 5천만원 • 5년 주기로 계속 지원 • 자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60% |
| 세제지원 | - 직장보육시설 신축, 구입시 취득 금액의 7% 공제, - 보육시설 설치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면제 |

자료: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8). URL: <http://www.escac.or.kr>.

2) 시설 및 이용아동 규모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07년 현재 30,85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약 110만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민간 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아동의 85%를 담당하고 있다(표 II-1-2 참조).

만5세 이하 전체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연령별로 최소 0세아 15.3%, 최고 만3세아 50.0%로 총 36.7%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할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비율은 만5세아가 14.6%로 가장 낮고, 0세아는 84.7%로 가장 높다(표 II-1-3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외에 학원 이용률이나 개인에 의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수이다.

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아전담시설에만 적용하고 있음.

〈표 II-1-2〉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 | 부모협동 | 가정 | 직장 | |
|------|-----|-----------|---------|---------|---------|--------|---------|-------|---------|--------|
| | | | | 소계 | 법인외 | 민간개인 | | | | |
| 시설 수 | 개소 | 30,856 | 1,748 | 1,460 | 14,083 | 1,002 | 13,081 | 61 | 13,184 | 320 |
| | 비율 | 100.0 | 5.7 | 4.7 | 45.6 | 3.2 | 42.4 | 0.3 | 42.7 | 1.0 |
| 아동 수 | 현원 | 1,099,933 | 119,141 | 118,211 | 668,390 | 55,906 | 612,484 | 1,444 | 177,623 | 15,124 |
| | 비율 | 100.0 | 10.8 | 10.7 | 60.8 | 5.1 | 55.7 | 0.2 | 16.1 | 1.4 |
| | 이용률 | 81.8 | 88.1 | 81.6 | 82.0 | 81.9 | 82.0 | 81.9 | 78.5 | 72.8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표 II-1-3〉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및 비율(2007)

단위: 명, %

| 구분 | 전체아동수 (A) ¹⁾ | 시설 이용 아동수(B) | | 미이용 아동수 (A-B) | 모취업률 ⁴⁾ (2004) |
|----|----------------------------|--------------------|-------------------|------------------|------------------------------|
| | | 보육시설 ²⁾ | 유치원 ³⁾ | | |
| 총계 | 2,832,282(100.0) | 1,038,615(36.7) | 535,060(19.1) | 1,258,607(44.2) | 34.8 |
| 0세 | 449,027(100.0) | 68,908(15.3) | - | 380,119(84.7) | 20.2 |
| 1세 | 439,640(100.0) | 122,663(27.9) | - | 316,977(72.1) | 24.5 |
| 2세 | 449,410(100.0) | 222,258(49.5) | - | 227,152(50.5) | 35.9 |
| 3세 | 476,281(100.0) | 237,919(50.0) | 93,005(19.5) | 145,357(30.5) | 43.4 |
| 4세 | 490,314(100.0) | 207,305(42.3) | 170,726(34.8) | 112,283(22.9) | 40.1 |
| 5세 | 527,610(100.0) | 179,562(34.0) | 271,326(51.4) | 76,722(14.6) | 44.9 |

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6세 아동을 제외하여 전체 통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1) 통계청·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2)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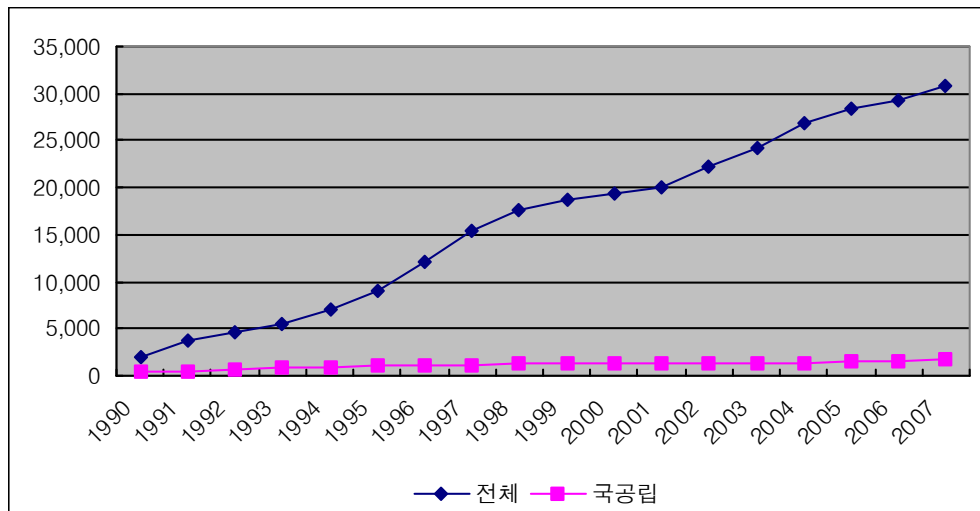
4)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아의 경우는 학원 이용률이 높고, 영아는 조부모 등의 혈연, 또는 파출부 등의 타인과 육아부담을 나누고 있다. 특히 0세아는 개인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영아가 보육시설보다 개별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부모 본인이 돌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유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인지 학습, 전인적 발달, 특기교육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서문희 외, 2004; 서문희·최혜선, 2007).

나. 국공립보육시설

1) 시설 규모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시설의 수는 1,748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육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주로 민간부문의 확충이 이루어졌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율은 감소하여, 1992년 16.0%이던 국공립보육시설이 2007년 현재 5.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1-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변동 추이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1995년에 실시된 보육3개년확충사업에 의한 것인데, 이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이 보육시설 유형간의 구조를 민간 우위 구조로 변모시킨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²⁾(서문희 외, 2007).

2)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은 당초 계획했던 바의 122%를 달성하였고, 민간부문의 확충 달성률은 238%로 당초의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학교 부설 보육시설의 확충이 당초 계획의 32% 수준으로 미비하였음. 당초에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보다는 각각 시설당 3,000만원, 2,50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사회복지법인

2) 이용 아동 규모

2007년 12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는 아동은 119,141명이며, 이는 전체 보육 아동의 10.8%에 해당된다. 1992년에 12만 3천명 정도였던 보육아동수는 2007년 현재 약 110만명에 이르러 약 8.9배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보육시설 보육 아동수는 약 4% 증가하여 전체 보육 아동수 증가 추세와 비교하면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수가 전체 보육아동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 받는 아동 비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3) 국공립보육시설 지역별 배치

<표 II-1-4>는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비율을 보여준다. 이 표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 시·군·구 중 13개 시·군·구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시·군·구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화천군,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임실군과 부안군,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경상북도 군위군이다.

<표 II-1-4>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비율

단위: 개소, 명, %

| 구분 | 시설 | | | 아동 | | |
|------|--------|-------|-------|-----------|--------|------|
| | 전체 | 국공립 | 비율 | 전체 | 국공립 | 비율 |
| 전국 | 30,856 | 1,748 | 5.67 | 1,099,933 | 119,14 | 10.8 |
| 대도시 | 12,456 | 938 | 7.53 | 443,670 | 68,506 | 15.4 |
| 중소도시 | 13,499 | 458 | 3.39 | 428,469 | 31,117 | 7.3 |
| 농어촌 | 4,901 | 352 | 7.18 | 227,794 | 19,518 | 8.6 |
| 서울 | 5,532 | 637 | 11.51 | 189,768 | 48,856 | 25.7 |
| 부산 | 1,614 | 131 | 8.12 | 63,435 | 9,668 | 15.2 |
| 대구 | 1,285 | 27 | 2.10 | 54,699 | 1,562 | 2.9 |
| 인천 | 1,531 | 78 | 5.09 | 51,601 | 4,154 | 8.1 |
| 광주 | 1,045 | 31 | 2.97 | 42,970 | 2,424 | 5.6 |

및 종교단체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의한 공보육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및 기능보강비를 대출해 준 용자제도의 실시로 민간 부분의 확충은 약 21만명 확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계됨(서문희 외, 2000).

(표 계속)

| 구분 | 시설 | | | 아동 | | |
|----|-------|-----|------|---------|--------|------|
| | 전체 | 국공립 | 비율 | 전체 | 국공립 | 비율 |
| 대전 | 1,185 | 28 | 2.36 | 33,012 | 1,396 | 4.2 |
| 울산 | 573 | 28 | 4.89 | 22,499 | 1,713 | 7.6 |
| 경기 | 8,691 | 336 | 3.87 | 253,864 | 21,936 | 8.6 |
| 강원 | 832 | 72 | 8.65 | 35,632 | 4,672 | 13.1 |
| 충북 | 879 | 40 | 4.55 | 40,466 | 2,852 | 7.0 |
| 충남 | 1,215 | 43 | 3.54 | 46,842 | 2,431 | 5.2 |
| 전북 | 1,298 | 36 | 2.77 | 55,950 | 2,116 | 3.8 |
| 전남 | 1,002 | 55 | 5.49 | 50,487 | 3,261 | 6.5 |
| 경북 | 1,533 | 96 | 6.26 | 61,083 | 4,712 | 7.7 |
| 경남 | 2,212 | 94 | 4.25 | 75,793 | 6,408 | 8.5 |
| 제주 | 429 | 16 | 3.73 | 21,832 | 980 | 4.5 |

4)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경향

정부는 2004년 이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³⁾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공립 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보육시설 건축용 공공시설용지 공급 확대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며, 학교복합시설 BTL사업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도시공원 및 대학 내 부지 활용,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였다. 두번째로는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 국공립보육시설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시설 확충 속도가 빨라서 전체적 구조 변화에는 별 영향을 미

3) 여성가족부 보육 중장기 계획인 「새싹 플랜」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수를 2010년까지 2배로 확충한다고 하였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는 보육아동 30%로 설정하였음. 특히 2005년도에는 여성가족부내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작업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2008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에서는 제외되었고 「새로마지플랜 2010」 수정본에서도 제외됨.

치지 못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어려운 이유는 민간시설의 반대나 아동 감소도 있으나,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규모는 크다. 실제 사례를 보면 95명 정원의 3층짜리 연건평 597 m² 창원시 상남동어린이집의 총사업비는 9억 6388만원으로 국·도비 지원금액 3억 324만원 보다 무려 2배 이상인 6억 6064만 3천원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를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관악구 봉천동 금빛어린이집 이전신축에도 국비 2억 1660만원 이외에 그의 8배가 되는 16억 1500만원의 지방비가 소요되었다(표 II-1-5 참조).

〈표 II-1-5〉 국공립보육시설 건축비 지원 분담금(예)

| 구분 | 단위: 천원 | | | 계 |
|-----------------|---------|-----------|---------|-----------|
| | 국고 | 시·도 | 시·군·구 | |
| 정부 기준 | 216,600 | 158,300 | 158,300 | 433,200 |
| 경남 창원시 상남동 어린이집 | 216,600 | 660,643 | | 963,883 |
| 관악구 봉천동 금빛어린이집 | 216,600 | 1,615,623 | | 1,832,223 |

자료: 여성가족부(2006). 내부자료.

이러한 이유는 우선 중앙정부의 건축비 지원단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어린이집은 신축에 약 150만원/m²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고, 경기도 일산시에서는 약 140만원/m²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건축비 이외 부지 확보 등 기타비용이 모두 시·군·구 부담이다. 건축비, 부지비 이외에 추가 비용도 적지 않다(표 II-1-6 참조).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하는 비용 등이 소요될 때도 있다.⁴⁾ [그림 II-1-2]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설치 및 개원 절차를 나타낸다.

〈표 II-1-6〉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부대 비용

| 구분 | 단위: 천원 | | |
|----------------------|--------|--------|-----------|
| | 설계비 | 감리비 | 비고 |
| 경남 창원시 상남어린이집 (95명) | 40,596 | 14,790 | 기자재 구입 별도 |
| 경기도 고양시 마두어린이집 (80명) | 27,600 | 7,960 | |

자료: 경남 창원시 및 경기도 고양시(2006). 내부자료.

4) 한 예로, 연천군 은대근린공원 내 보육시설 신축 공사 중 암반이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들 수 있음.

(표 계속)

| 구분 | 총계 | 신축 | | 기존건물 리모델링 | | | | | 전환 | |
|---------|----|-----------|----------|-----------|----|-----|-----|-------|----------|----|
| | | 국공립 신축 | 민간 매입 | 동사 무소 | 학교 | 군관사 | 복지관 | 기타 1) | 주공 임대 | 일반 |
| 충청북도 | 4 | 1 | - | - | - | - | - | - | 2 | 1 |
| 충청남도 | 9 | 4 | 1 | 1 | - | - | - | - | - | 3 |
| 전라북도 | 2 | 1 | - | - | - | - | - | - | 1 | - |
| 전라남도 | 3 | 1 | 2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2 | 2 | - | - | - | - | - | - | 2 | - |
| 경상남도 | 7 | 4 | - | - | - | - | - | - | 3 | - |
| 제주특별자치도 | 2 | 2 | - | - | - | - | - | - | - | - |
| 2009년계획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24 | 17 | - | 5 | - | - | - | 2 | - | - |
| 부산광역시 | 7 | 4 | - | - | - | - | - | - | 1 | 2 |
| 대구광역시 | 6 | - | - | - | - | 1 | - | - | 4 | 1 |
| 인천광역시 | 17 | 14 | 2 | - | - | - | 1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4 | 2 | - | 1 | - | - | - | - | 1 | - |
| 울산광역시 | 1 | 1 | - | - | - | - | - | - | - | - |
| 경기도 | 49 | 17 | - | 3 | - | - | 2 | 1 | 18 | 8 |
| 강원도 | 3 | 2 | - | - | - | - | - | - | 1 | - |
| 충청북도 | 2 | 1 | - | - | - | - | - | - | 1 | - |
| 충청남도 | 9 | 3 | - | - | - | - | - | - | 4 | 2 |
| 전라북도 | 4 | - | - | - | - | - | - | - | 3 | 1 |
| 전라남도 | 6 | 3 | 2 | - | - | - | - | - | 1 | - |
| 경상북도 | 10 | 4 | 2 | - | - | - | - | - | 4 | - |
| 경상남도 | 21 | 10 | 2 | - | - | - | 1 | - | 8 | - |
| 제주특별자치도 | 2 | - | - | - | - | - | - | 1 | 1 | - |

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보육 지원 의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의무 사업장은 791개소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중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55.6%인 440개소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007년 44.4%인 351개소이다. 의무이행 사업장 440개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253개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47개소,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40개소이다.

〈표 II-1-8〉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 이 행 | | | | 미이행 |
|-----------------|---------|--------|--------|--------|-------|--------|
| | | 계 | 설치 | 수당 | 위탁 | |
| 전체 | 791 | 440 | 253 | 147 | 40 | 351 |
| | (100.0) | (55.6) | (32.0) | (18.6) | (5.1) | (44.4) |
| 국가기관 | 47 | 36 | 35 | - | 1 | 11 |
| | (100.0) | (76.6) | (74.5) | - | (2.1) | (23.4) |
| 지자체 | 142 | 138 | 69 | 68 | 1 | 4 |
| | (100.0) | (97.2) | (48.6) | (47.9) | (0.7) | (2.8) |
| 학교 | 67 | 35 | 10 | 21 | 4 | 32 |
| | (100.0) | (52.2) | (14.9) | (31.3) | (6.0) | (47.8) |
| 민간 (공사 등 포함) | 535 | 231 | 139 | 58 | 34 | 304 |
| | (100.0) | (43.2) | (26.0) | (10.8) | (6.4) | (56.8)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133개 기관 중 131개 기관이 설치하여 98.5%로 이행 비율이 가장 높고, 국가기관이 42개 중 26개로 61.9%, 공사를 포함한 민간 사업장이 531개 중 186개로 35.0%, 학교는 69개 중 22개로 31.9%로, 학교와 민간 부문의 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1-8 참조). 이러한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시설 설치 등 의무 이행은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무 이행 비율은 2005년 38.4%에서 2007년 말에는 55.6%로 증가하였고, 특히 시설 설치 사업장이 21.6%에서 32.0%로 확대되었다(표 II-1-9 참조).

〈표 II-1-9〉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2007)
단위: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 의무이행 사업장 | | | | 미이행 사업장 |
|-------|---------|----------|--------|--------|-------|------------|
| | | 계 | 설치 | 수당 | 위탁 | |
| 2007년 | 791 | 440 | 253 | 147 | 40 | 351 |
| | (100.0) | (55.6) | (32.0) | (18.6) | (5.1) | (44.4) |
| 2006년 | 775 | 365 | 199 | 132 | 34 | 410 |
| | (100.0) | (47.1) | (25.7) | (17.0) | (4.4) | (52.9) |
| 2005년 | 787 | 302 | 170 | 105 | 27 | 485 |
| | (100.0) | (38.4) | (21.6) | (13.3) | (3.4) | (61.6)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그러나 아직 직장보육 지원 의무 사업장의 의무 이행 수준은 낮은 편이며, 그동

안 이것의 주된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칙 조항의 부재를 들어왔다(김유경 외, 2003; 이기숙 외, 2002). <표 II-1-10>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칙 조항 이외에 의무설치 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 표를 보면 민간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비용 부담이 46.8%로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 지원 부족이 21.9%이며, 해당 아동이나 이용 희망 아동이 소수라는 응답이 12.5%이었다. 이외에 사업주 인식 부족이 5.1%를 차지하였다. 여기서는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응답이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이들 중 42.8%가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지적하였고, 20.1%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21.0%는 해당아동이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아동이 소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의무 이행을 시설 설치로 동일시하는 경향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변함이 없다. 특히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2.0%로 다소 높아서, 직장보육 시설이 설치된 국가·지자체 직장보육 담당자들이 민간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의무 이행을 저조의 주요 이유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II-1-1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 저조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 사업주 인식 부족 | 정부 지원 부족 | 사업주 비용 부담 | 아동 소수 | 설치 기준 규제 | 직원 합의 부족 | 기타 | 모름 | 계(수) |
|---------|-----------------|----------------|-----------------|----------|----------------|----------------|-----|-----|------------|
| 민간 사업장 | 5.1 | 21.9 | 46.8 | 12.5 | 5.2 | 1.9 | 4.3 | 2.2 | 100.0(534) |
| 시설 의무설치 | 6.3 | 21.3 | 48.8 | 5.5 | 8.7 | 2.4 | 2.4 | 4.7 | 100.0(127) |
| 위탁 | 6.1 | 24.2 | 54.5 | 3.0 | 6.1 | 3.0 | 3.0 | - | 100.0(33) |
| 보육수당 | 3.4 | 18.6 | 55.9 | 11.9 | 3.4 | 1.7 | 3.4 | 1.7 | 100.0(59) |
| 미이행 | 3.1 | 20.1 | 42.8 | 21.0 | 4.8 | 0.7 | 6.6 | 0.9 | 100.0(229) |
| 시설 임의설치 | 9.3 | 29.1 | 45.3 | 4.7 | 2.3 | 3.5 | 2.3 | 3.5 | 100.0(86) |
| 전체 사업장 | 7.8 | 22.2 | 46.6 | 10.5 | 4.4 | 1.9 | 4.3 | 2.3 | 100.0(772) |
| 시설 의무설치 | 12.0 | 17.8 | 48.9 | 4.9 | 5.3 | 1.8 | 4.4 | 4.9 | 100.0(225) |
| 위탁 | 5.0 | 25.0 | 52.5 | 2.5 | 7.5 | 5.0 | 2.5 | - | 100.0(40) |
| 보육수당 | 9.5 | 20.3 | 52.0 | 8.1 | 3.4 | 2.7 | 3.4 | 0.7 | 100.0(148) |
| 미이행 | 3.0 | 24.1 | 41.0 | 19.9 | 4.5 | 0.8 | 5.6 | 1.1 | 100.0(266) |
| 시설 임의설치 | 9.7 | 29.0 | 46.2 | 4.3 | 2.2 | 3.2 | 2.2 | 3.2 | 100.0(93)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II-1-11〉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계획

단위: %(개소)

| 구분 | 수당 지급 | 시설 설치 | 보육시설 위탁 | 방법 미정 | 없음 | 계(수) |
|--------|-------|-------|------------|-------|------|------------|
| 민간 | 11.0 | 20.0 | 4.0 | 54.5 | 10.5 | 100.0(200) |
| 국가·지자체 | - | 40.0 | - | 40.0 | 20.0 | 100.0(10) |
| 대학 | 18.2 | 36.4 | 4.5 | 22.7 | 18.2 | 100.0(22) |
| 전체 | 11.2 | 22.3 | 3.9 | 51.1 | 11.6 | 100.0(233)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한편 이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10.5%의 민간 사업장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4.5%의 사업장이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가 시설 설치, 11.0%가 수당 지급, 4.0%가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유형의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비율은 국가·지자체와 대학이 각각 40.0%, 36.4%로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II-1-11 참조).

2. 보육비용

제2절에서는 보육료, 비용 지원 등 보육비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 보육 비용, 보육료 및 지원 기준

현재 총 보육비용과 보육료는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시설별 지원여부의 차이 때문에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민간개인·가정 보육시설간에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는 시·도 지사가 상한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1)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보육료인 동시에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단가로 사용되는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곧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급식비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을 현재 실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II-2-2>는 연도별 보육료 지원 기준액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증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시설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1:5에서 1:3으로의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을 1:20을 1:15로의 조정을 반영하여 만3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표 II-2-1〉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 2세 미만아반 | 2세아반 | 3세 이상아반 | 79명 시설 평균 |
|--------------|------------|------------|------------|-------------|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 | | | |
| 종사자 인건비 | 66.6 | 59.6 | 38.1 | 50.0 |
| 보육아동급식비 | 21.2 | 25.7 | 39.4 | 31.8 |
| 교재교구비 | 3.3 | 4.0 | 6.1 | 4.6 |
| 시설관리운영비 | 5.3 | 6.4 | 9.7 | 4.7 |
| 차량유지비 | 3.6 | 4.4 | 6.7 | 5.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 12,815,715 | 14,836,905 | 27,638,121 | 125,403,888 |
| 시설별 지원 | 7,457,745 | 7,380,560 | 8,247,674 | 46,961,887 |
| 연간 운영비 총액 | 20,273,460 | 22,217,465 | 35,885,795 | 172,365,775 |
| 민간시설 | | | | |
| 종사자 인건비 | 76.6 | 73.0 | 56.2 | 65.2 |
| | 76.6(42.1) | 73.0(39.8) | 56.2(29.3) | 65.2(34.9) |
| 보육아동급식비 | 13.4 | 17.2 | 30.3 | 23.0 |
| 교재교구비 | 2.1 | 2.7 | 4.7 | 3.6 |
| 시설관리운영비 | 5.6 | 7.2 | 8.8 | 7.7 |
| 차량유지비 | 2.3 | 2.9 | 1.3 | 2.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연간 운영비 총액 | 20,273,460 | 22,217,465 | 35,885,795 | 172,365,775 |

주: 보건복지부(1999).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표 II-2-2〉 연도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천원

| 구분 | 0세아 | 1세아 | 2세아 | 3세아 | 4세이상아 | 비고 |
|------|-----|-----|-----|-----|-------|-----------------|
| 1999 | | 213 | 176 | | 109 | |
| 2000 | | 219 | 181 | | 112 | |
| 2001 | | 225 | 186 | | 115 | |
| 2002 | | 232 | 192 | | 119 | |
| 2003 | | 243 | 201 | | 125 | |
| 2004 | | 257 | 212 | | 131 | |
| 2005 | | 299 | 247 | | 153 |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
| 2006 | 350 | 308 | 254 | | 158 |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
| 2007 | 361 | 317 | 262 | 180 | 162 | 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
| 2008 | 372 | 327 | 270 | 185 | 167 | |

자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2) 민간보육시설 지원 기준

〈표 II-2-3〉은 2008년 현재 연령별 총 보육비용, 부모부담, 정부지원 기준 등을 나타낸다.

〈표 II-2-3〉 보육시설 지원 계획 및 실제(2008)

단위: 억원

| 연도 | 인건비 지원시설 실제 | | | 민간시설 실제 | | |
|---------|-------------|-------|--------|---------|-------|--------|
| | 총비용 | 부모 부담 | 인건비 지원 | 총비용 | 부모 부담 | 기본금 지원 |
| 0세아 | 921 | 372 | 549 | 712 | 372 | 340 |
| 만1세아 | 679 | 327 | 352 | 491 | 327 | 164 |
| 만2세아 | 538 | 270 | 268 | 379 | 270 | 109 |
| 만3세아 | 243 | 185 | 58 | - | 236 | - |
| 만4세 이상아 | 216 | 167 | 49 | - | 231 | - |

주: 1) 2008년 계획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2008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와 시설장 6호봉 인건비와 취사부 3호봉 인건비를 기준으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을 산출하였고, 민간시설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50인 시설 기준임.

정부의 인건비 지원시설 비용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의 경우 보육교사 6호봉 인건비와 시설장 인건비(6호봉⁵⁾, 취사부 3호봉을 기준으로 하였고, 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도 포함하여 영아 80%, 유아 30%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시설 규모는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민간시설 부모 부담은

5) 시설장 평균 호봉은 13호봉으로 다소 낮게 추정함.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보면 시설유형별 총 비용의 차이가 아직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80%이고,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지원도⁶⁾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영아는 80%, 유아는 30%이다.

다음으로 <표 II-2-4>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영아는 기본보조금의 지원으로 보육료 상한선이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유아 보육료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만4세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시설 최저는 제주도로 210,00원, 최대는 경기도로 240,000원이고, 가정 시설 최저는 경북 202,000원, 최고 경기도 265,000원이다. 전반적으로 민간시설 보육료에 비하여 가정시설 보육료가 비싸다. 그러나 전북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

<표 II-2-4> 지자체별 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천원

| 시·도별 | 정부지원시설 | | 민간보육시설 | | 가정보육시설 | |
|------|--------|--------|--------|--------|--------|--------|
| | 만3세 | 만4세 이상 | 만3세 | 만4세 이상 | 만3세 | 만4세 이상 |
| 서울 | 185 | 167 | 236 | 231 | 236 | 231 |
| 부산 | | | 230 | 210 | 260 | 240 |
| 대구 | | | 225 | 208 | 241 | 236 |
| 인천 | | | 229 | 212 | 266 | 251 |
| 광주 | | | 222 | 206 | 238 | 232 |
| 대전 | | | 230 | 215 | 260 | 260 |
| 울산 | | | 217 | 206 | 247 | 237 |
| 경기 | | | 260 | 240 | 265 | 265 |
| 강원 | | | 218 | 207 | 240 | 240 |
| 충북 | | | 235 | 212 | 262 | 256 |
| 충남 | | | 225 | 210 | 250 | 240 |
| 전북 | | | 223 | 202 | 223 | 202 |
| 전남 | | | 220 | 210 | 239 | 236 |
| 경북 | | | 230 | 206 | 250 | 235 |
| 경남 | | | 223 | 209 | 235 | 228 |
| 제주 | | | 208 | 201 | 230 | 230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소위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를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실태는 <표 II-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필요경비 결정 방법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3종을 모두 시·군·구에 위

6) 2008년 기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4.5%, 국민건강보험료 2.54%, 보용보험료 0.7%, 산재보험료 0.7%로 총 8.44%이고, 퇴직적립금 1/12인 8.33%가 포함됨.

입하고 경기도는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경남은 보육시설에서 3종의 추가 경비를 모두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상북도는 특기적성비만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에는 구에서 다시 보육시설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도가 결정한 추가 수납액 기준을 보면 입소료는 대부분이 7만원, 8만원 수준이며, 최소인 지역은 전북과 제주로 5만원이고 경기도가 98,000원으로 가장 많다. 현장학습비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월 1회 1회 시 1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기적성비는 최소 월 3만원인 지역도 있으나 평균 월 8만원 정도가 가장 많다.

〈표 II-2-5〉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단위: 원

| 시·도별 | 입소료 | 현장학습비 | 특기적성비 |
|------|--|--|--------------------------------|
| 서울 |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납 한도액 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임 불가 | | |
| 부산 | 80,000 | 연 80,000 | 연 70,000 |
| 대구 | 72,000 | 실비 | 월 70,000 |
| 인천 | 국고보조시설 70,000 민간, 가정 등 100,000 | 국고보조시설 월 30,000 민간, 가정 등 월 60,000 - 종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 군구에서는 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고려하여 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별도 결정 가능 | |
| 광주 | 70,000 | 연 120,000 행사비 연 50,000원 별도 | 연 80,000 |
| 대전 | 90,000 | 월 10,000 | 연 60,000 |
| 울산 | 77,000 (재원아 20,000) | 연 15회 | 만2세 이상 과목당 20,000원 2개 과목 |
| 경기 | 98,000 | 시군에 위임 | 시군에 위임 |
| 강원 | 70,000 | 시군에 위임 | 월 30,000 |
| 충북 | 80,000 | 연 120,000 | 월 80,000 |
| 충남 | 80,000 | 연 120,000 | 월 80,000 |
| 전북 | 50,000 (재원아 20,000) | 시 월 70,000 군 월 60,000 | |
| 전남 | 80,000 | 월 10,000 | 월 80,000 |

(표 계속)

| 시·도별 | 입소료 | 현장학습비 | 특기적성비 |
|------|---|-----------|---------------------------------------|
| 경북 | 80,000 | 회당 20,000 | 보호자와 협의하여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 |
| 경남 | -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납 - 보호자의 동의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 부모 승낙 동의서 받는 것 | | |
| 제주 | 회당 50,000 | 연 50,000 | 월 50,000 |

자료: 각 시·도청(2008). 내부자료.

시·도에서 시·군·구 위임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에의 위임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협의 결정하도록 맡긴 구가 상당수이다. 2007년에 구에서 보육시설에 위임한 구가 13개로 파악되었는데(김형준 외, 2007), 2008년에는 이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의 자율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경우, 액수를 보면 입소료는 다른 시·도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비 기준은 높다. 가장 액수가 높은 구는 광진구이다. 광진구는 구립시설은 현장학습비 연 18만원, 특기적성비 월 6만원으로 정하였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연간 현장학습비는 25만원, 월 특기적성비는 2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립 8만원, 민간 15만원을 책정하였다.

나. 보육비용 지원

2008년도 보육예산은 총 1조 4000여억원으로, 이 중 97%가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금이며, 시설별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II-2-6〉 보육사업 예산(2008)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영유아 보육료 | 인건비 | 영아 기본보조금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 보육시설 기능보강 | 보육 인프라 구축 등 | 계 |
|--------|---------|---------|----------|--------------|-----------|-------------|-----------|
| '08 예산 | 807,851 | 299,383 | 254,763 | 14,364 | 24,039 | 17,180 | 1,417,780 |
| 비율 | 57.0 | 21.1 | 18.0 | 1.0 | 1.7 | 1.2 | 100.0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1) 보육시설별 지원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된다. 설치비 지원은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이 비용은 2008년 전체 보육예산의 1.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II-2-7〉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 구 분 | | 지원내용 |
|------------------------------------|-----------------------|--|
|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 20인 이상 시설 |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 (영아반교사 2개반 이상, 24개월 미만은 1개반 80%) - 추가지원: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영아반 1개반 이상 인건비 80% 지원 |
| | 20인 미만 시설 |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
|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방과후 보육 |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 2004년 방과후 지정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
| | 장애아 통합 시설 | - 장애아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특수교사 수당 |
| | 공통 |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대체교사 인건비 |
|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 | - 원장(1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편성시 인건비 30% - 취사부 인건비 100% -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 | -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특수교사 수당 -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 방과후 교사 인건비 100% - 취사부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 민간가정 보육시설 | 일반보육시설 |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
| | 장애아 통합 시설 | -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 |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 |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 | 방과후 보육시설 | - 방과후 20명 이상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100% 지원 |
| 직장보육시설 | |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주: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임.
 자료: 여성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시설규모별로는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시설장 인건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농어촌 시설에는 개소당 월 20만원⁷⁾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에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이 해당된다. 휴일보육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는 모든 시설 유형이 대상이 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영아전담시설은 시설장과 교사 인건비 이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보육비용 지원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방세법시행령⁸⁾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는 운영비로 노동부가 시설장, 교사, 취사부 등 인건비를 월 80만원 기준으로 무상지원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는 교재교구비, 영아 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야간보육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제 지원으로 사업주가 지원한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2) 보육료 지원

1)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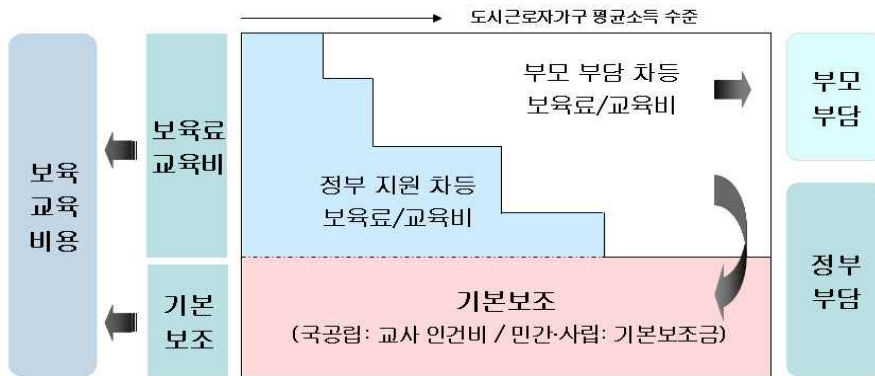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⁹⁾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된 이후¹⁰⁾,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7)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

8)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9) 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모 부담 보육료 기준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그림 II-2-1 참조).



자료: 서문희·최혜선·유은영(2006).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그림 II-2-1] 영아 보육비용 지원 개념

<표 II-2-8>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총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 부모 협동 | 가정 | 직장 |
|------|---------|------|------|-------|---------|----------|---------|------|
| | | | | 법인외 | 민간개인 | | | |
| 지원인원 | 305,202 | - | 151 | 1,352 | 155,929 | 401 | 147,032 | 330 |
| 비율 | 100 | - | 0.05 | 0.44 | 51.09 | 0.13 | 48.18 | 0.11 |

주: '08년도 예산: 2,297억원, 지원대상: 0~2세 영아 253,751명, 지원단가: 0세(340천원), 1세(164천원), 2세(109천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은 노동부 인건비 지원이 없는 직장보육시설도 지원한다.

2007년 말 영아보육 지원 현황은 <표 II-2-8>과 같다. 2007년 말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영아 중 민간 시설은 86.6%, 가정보육시설은 97.2%가 기본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보육서비스이용권 도입으로 차등보육료체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방침이다.

10)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 보육료 차등 지원

보육료 차등지원 제도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1991년 시설 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2009년 계획을 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아동의 50%까지는 무상지원하고¹¹⁾ 그 이상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는 영아 60%, 유아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아는 대신에 기본보조금 명목의 별도 지원은 없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있다.

〈표 II-2-9〉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 구분 |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 지원비율 | | | | | | |
|----|-------------------------------|-------------|-------|-------|-------|-------|-------|----------------|
| | | 2003년 이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1층 | 법정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2층 | 차상위 계층 | 40 | 60 | 80 | 100 | 100 | 100 | 100 |
| 3층 | 50%까지 | - | 40 | 60 | 70 | 80 | 80 | 100 |
| 4층 | 60%까지 | - | - | 30 | 40 | 50 | 60 | 100 |
| | 70%까지 | - | - | - | | | | |
| 5층 | 100%까지 | - | - | - | - | 20 | 30 | 영아 60 유아 30 |
| 6층 | 130%까지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표 II-2-10〉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저소득차등 보육료 | 두자녀이상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아동지원 |
|-------------|--------------------|-------------------|-------------------|-------------------|-----------------|
| 아동수 (비율) | 859,353 (100.0) | 586,836 (68.3) | 109,599 (12.8) | 145,303 (16.9) | 17,615 (2.0)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2007년 12월 현재 보육아동 86만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표 II-2-10 참조).

11) 보육아동의 50%가 포함되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5~70% 정도로 추정됨.

전체 아동으로 환산하면 보육료 지원아동은 30.7%이고, 무상보육아동 비율은 14.6%이다.

3) 무상보육 등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농어촌은 전체 만5세 아동에 전액 지원을 적용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과 관계없이 출생순위를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4) 육아비용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2004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세 지원방식으로 과표기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과표기준액별로 차이가 있다.

3.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운영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표준보육과정,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교사대 아동 비율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육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육시설별로 시설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20인 이하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은 만1세 미만 1:3,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1:5,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1:7,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1:10,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1: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의 경우 1:3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기타 종사자로는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이 있는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취사부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시·군·구청장은 도·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종사자 배치기준 중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표준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에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후 정부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입법화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육과정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 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는 표준보육과정을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 가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이러한 목적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보육과정은 연령

에 따라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 연령 집단의 보육목표와 내용을 계열성 있게 경험하도록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처음 시범운영이 실시된 이후 2006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에게 보육서비스에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 기준을 갖도록 한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보육정책 수립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시설 규모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평가영역은 일반 시설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양건강, 안전, 가족과 지역사회 협력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양건강, 안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기준 전국의 30,856개소 중 55.4%인 17,086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전체의 29.1%인 8,975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하였다. 참여시설의 유형 분포를 보면, 국공립시설 14.7%, 법인보육시설 11.9%, 민간보육시설 37.6%, 가정보육시설 34.4%, 부모협동보육시설 0.1%, 직장보육시설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 보육시설 재무·회계

정부는 2006년에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하였다. 재무·회계규칙은 그 동안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의 인건비 지원 시설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보육비용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를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¹²⁾

12) 개인이 투자한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

1)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총 3장3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e-보육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은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게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익년도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이나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세입·세출 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결산서 보조서류,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이다.

2) 보육시설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세입예산은 크게 입소자 부담금, 보조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전입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자 부담금은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세출예산은 <표 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두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업무추진비와 기타 운영비이다.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설명 자료를 보면 연 업무추진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별·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역은 <표 II-3-3>과 같다.

해서는 논란이 있음.

〈표 II-3-1〉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입예산 관·항·목

| 관 | 항 | 목 |
|-----------|---------|------------------------------|
| 입소자 부담금수입 | 입소비용 수입 | 보육료수입, 수익자부담금 |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 잡수입 | 잡수입 |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
| 보조금수입 | 경상보조금수입 | 인건비보조금,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기타지원금 |
| | 자본보조금수입 | 자본보조금 |
| 전입금 | 전입금 | 전입금, 차입금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보육시설은 잡수입 과목 통합 가능

〈표 II-3-2〉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출예산 관·항·목

| 관 | 항 | 목 |
|-------|-------|---|
| 시설운영비 | 인건비 | 급여,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
|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 | 관리운영비 |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
| 사업비 | 사업운영비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 전출금 |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차입금 상환 반환금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잡지출 | 잡지출 | 잡지출 |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시설은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별도) 및 시설비 과목 통합 가능

〈표 II-3-3〉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추진비 기준

단위: 원

| 구분(현원기준) |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항목별 편성기준 | | |
|----------|-----------|----------|-----------|-----|
| | | 기관운영비 | 직책급 | 회의비 |
| 100인 이상 | 7,200,000 | 자율 | 3,000,000 | 자율 |
| 40인 이상 | 6,000,000 | 자율 | 2,400,000 | 자율 |
| 40인 미만 | 4,800,000 | 자율 | 1,800,000 | 자율 |

또한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 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 경비로, 시설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007년까지는 수입의 4%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10%를 인정하였다.

3) 보육시설 재무·회계 사례

보육시설 3곳의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작성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이 3개소이다.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은 제외하였다.

〈표 II-3-4〉 보육시설 재무 회계 사례 대상 시설 특성

단위: 명, 원, %

| 시설 | 유형 | 정원 | 인력수 | 예산액 | 수납액 | 지출액 | 지출/수납 비율 |
|-------|----|-----|-----|---------|---------|---------|-------------|
| J어린이집 | 공립 | 140 | 21 | 651,686 | 654,570 | 638,493 | 97.5 |
| H어린이집 | 공립 | 165 | 23 | 834,641 | 698,361 | 670,937 | 96.1 |
| K어린이집 | 공립 | 156 | 23 | 774,625 | 693,970 | 677,184 | 97.6 |

J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동 현원이 평균 137명이다. 만2세미만아 13명, 만2세아 19명, 만3세아 19명, 만4세이상아 46명, 만6세이상아 40명이다. J보육시설은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로 이중 보육하는 장애아동은 연평균 13명이다. 종사자 수는 연평균 24명이다. 인건비 지원인력은 21명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15명, 비상근 1인, 보조교사 3인을 두고 있고, 이외 인건비 미지원 인력으로 취사부 2명과 공동영양사를 두고 있다. 이 보육시설의 세입예산 651,686,000원에 대하여 실수입액은 654,570,698원이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수입 비율이 100%를 약간 넘는다. 한편, 세출예산은 수입예산액 651,68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8,493,805원으로 98.0%이다. 실제 수납액 대비는 97.5%이다.

H어린이집은 정원 165명 규모의 어린이집이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보육인력의 규모는 21명이다. 시설장, 보육교사 14명, 장애아통합교사 3명 이외에 취사부 1인과 보육도우미 1인을 두고 있다.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세입예산

884,641,810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액은 698,861,862원으로, 예산대비 수납액 비율은 80.0% 수준이다 한편, 실제 집행액은 670,987,600원이다. 이는 실제 수입액 대비 96.1%이다.

K어린이집은 정원 156명 규모의 어린이집이고, 보육인력의 규모는 23명이다. 시설장, 보육교사 16명, 영양사 1인, 취사부 2인 및 기타 인력이 3명이다. 세입예산은 774,725,065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액은 698,969,985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액 비율은 80.1% 수준이다. 한편, 실제 집행액은 677,184,058원으로 실제 수입액 대비 97.6%이다.

〈표 11-3-5〉 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단위: 천원

| 과 목 | | | J | | H | | K | |
|---------------|--------------|--------------|---------|---------|---------|---------|---------|---------|
| 관 | 항 | 목 | 예 산 액 | 수 납 액 | 예 산 액 | 수 납 액 | 예 산 액 | 수 납 액 |
| 합 계(1+2) | | | 651,686 | 654,570 | 834,641 | 698,361 | 774,625 | 693,970 |
| 소 계 1) | | | 207,655 | 209,567 | 402,311 | 293,749 | 363,375 | 308,660 |
| 입소자부담 금수 입 | 입소비용 수입 | 보육료 수입 | 168,406 | 167,569 | 307,261 | 245,938 | 274,411 | 247,256 |
| | | 수익자 부담금 | 38,827 | 40,822 | 91,000 | 41,719 | 81,730 | 50,617 |
| 과년도수입 | 과년도 수입 | 과년도 수입 | 0 | | 0 | 0 | 0 | 0 |
| 잡수입 | 잡수입 | 이자 수입 | 22 | 37 | 50 | 25 | 24 | 34 |
| | | 후원금 수입 | | | 2,000 | 2,017 | 0 | 0 |
| | | 기타 잡수입 | 400 | 1,139 | 2,000 | 4,048 | 7,210 | 10,751 |
| 소 계 2) | | | 444,031 | 445,001 | 432,330 | 404,612 | 411,249 | 385,309 |
| 보조금수입 | 경상보조 금 수입 | 인건비 보조금 | 236,533 | 233,985 | 284,396 | 237,363 | 254,852 | 233,700 |
| | | 보육료 보조금 | 145,771 | 150,232 | 103,712 | 131,756 | 119,775 | 123,162 |
| | | 기본 보조금 | 0 | | 0 | 0 | 0 | 0 |
| | | 기타 지원금 | 42,514 | 41,569 | 21,788 | 12,059 | 15,843 | 7,668 |
| 전입금 | 전입금 | 자본보조 금 수입 | 0 | | 0 | 1,000 | 0 | 0 |
| | | 전입금 | 0 | | 0 | 0 | 3,600 | 3,600 |
| 이월금 | 이월금 | 차입금 | 0 | | 0 | 0 | 0 | 0 |
| | | 전년도이월 금 | 19,213 | 19,213 | 22,433 | 22,433 | 17,178 | 17,178 |

〈표 II-3-6〉 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2007)

단위: 천원

| 과 목 | | J | | H | | K | |
|-------|--------|---------|---------|---------|---------|---------|---------|
| 관 | 항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합 계 | | 651,686 | 638,493 | 832,636 | 670,937 | 773,125 | 677,184 |
| 시설운영비 | 소 계 1) | 651,686 | 455,020 | 596,770 | 505,219 | 500,780 | 474,035 |
| | 인건비 | 415,044 | 408,404 | 475,621 | 419,636 | 450,650 | 43,1867 |
| | 업무추진비 | 9,100 | 4,394 | 7,000 | 5,744 | 7,170 | 3,869 |
| | 관리운영비 | 42,698 | 42,221 | 114,149 | 79,838 | 42,959 | 38,298 |
| 사업비 | 사업운영비 | 119,848 | 119,795 | 199,020 | 138,703 | 216,655 | 158,929 |
| 재산조정비 | 시설비 | 63,678 | 63,677 | 28,500 | 27,014 | 48,440 | 44,219 |
| 전출금 | 전출금 | 0 | 0 | 0 | 0 | 0 | 0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0 | 0 | 0 | 0 | 0 | 0 |
| 잡지출 | 잡지출 | 0 | 0 | 0 | 0 | 0 | 0 |
| 예비비 | 예비비 | 1,318 | 0 | 8,346 | 0 | 7,249 | 0 |

다음 <표 II-3-7>과 <표 II-3-8>은 위의 <표 II-3-5>와 <표 II-3-6>의 총액을 항목별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수납액의 경우 보육료 수입이 J어린이집은 25.6%이고 H어린이집과 K어린이집은 36% 수준이다.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의 63~64%가 인건비이고 19~24%가 사업운영비이며, 관리운영비가 6~12%에 이른다.

〈표 II-3-7〉 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 비율(2007)

단위: %

| 구분 | J | | H | | K | |
|--------------|-------|-------|-------|-------|-------|-------|
| | 예산액 | 수납액 | 예산액 | 수납액 | 예산액 | 수납액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보육료 수입 | 25.8 | 25.6 | 36.8 | 35.2 | 35.4 | 35.6 |
| 수익자 부담금 | 6.0 | 6.2 | 10.9 | 6.0 | 10.6 | 7.3 |
| 이자·후원금·잡수입 등 | 0.1 | 0.2 | 0.5 | 0.9 | 0.9 | 1.6 |
| 인건비 보조금 | 36.3 | 35.7 | 34.1 | 34.0 | 32.9 | 33.7 |
| 보육료 보조금 | 22.4 | 23.0 | 12.4 | 18.9 | 15.5 | 17.7 |
| 기타 지원금 | 6.5 | 6.4 | 2.6 | 1.7 | 2.0 | 1.1 |
| 기타 | 2.9 | 2.9 | 2.7 | 3.3 | 2.7 | 3.0 |

〈표 II-3-8〉 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 비율(2007)

단위: %

| 구분 | J | | H | | K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인건비 | 63.7 | 64.0 | 57.1 | 62.5 | 58.3 | 63.8 |
| 업무추진비 | 1.4 | 0.7 | 0.8 | 0.9 | 0.9 | 0.6 |
| 관리운영비 | 6.6 | 6.6 | 13.7 | 11.9 | 5.6 | 5.7 |
| 사업운영비 | 18.4 | 18.8 | 23.9 | 20.7 | 28.0 | 23.5 |
| 시설비 | 9.8 | 10.0 | 3.4 | 4.0 | 6.3 | 6.5 |
| 예비비 | 0.2 | - | 1.0 | - | 0.9 | - |

Ⅲ.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과 수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보육시설은 물론 국공립보육시설도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2008년 읍·면·동 단위의 보육시설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유치원 설치여부 등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3,564개¹³⁾ 읍·면·동과 232개 시·군·구 단위별로 보육시설 공급률과 보육시설 이용률을 산출하고, 제2절에서는 이 자료 이외에 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수 규모나 유치원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절에서는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관한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 현황

제1절에서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로 보육 수요와 공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시·도 단위 보육 공급

먼저 전국 및 시·도 단위 보육공급과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I-1-1>은 2008년 시·도 단위의 보육시설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로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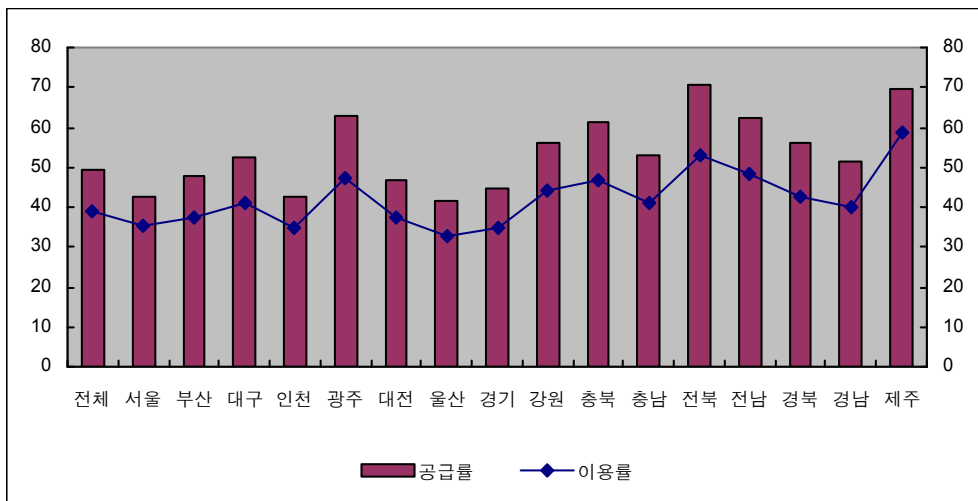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49.4%이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38.8%이다.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41.4%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69.8%로 가장 높다. 이용률은 울산이 32.5%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58.9%로 가장 높다.

13) 총 읍·면·동 수는 3,566개인데 2개 동이 현재 재건축 중임.

〈표 III-1-1〉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명, %

| | 영유아인구수(A) | 보육정원(B) | 보육현원(C) | 공급률(B/A) | 이용률(C/A) |
|----|-----------|-----------|-----------|----------|----------|
| 전체 | 2,810,293 | 1,387,651 | 1,091,287 | 49.4 | 38.8 |
| 서울 | 530,922 | 225,001 | 186,691 | 42.4 | 35.2 |
| 부산 | 161,508 | 77,367 | 60,269 | 47.9 | 37.3 |
| 대구 | 130,826 | 68,584 | 53,463 | 52.4 | 40.9 |
| 인천 | 154,358 | 65,437 | 53,621 | 42.4 | 34.7 |
| 광주 | 88,509 | 55,777 | 41,890 | 63.0 | 47.3 |
| 대전 | 90,938 | 42,671 | 33,862 | 46.9 | 37.2 |
| 울산 | 66,862 | 27,728 | 21,715 | 41.5 | 32.5 |
| 경기 | 734,107 | 328,517 | 257,166 | 44.8 | 35.0 |
| 강원 | 80,725 | 45,348 | 35,744 | 56.2 | 44.3 |
| 충북 | 86,100 | 52,588 | 40,060 | 61.1 | 46.5 |
| 충남 | 116,468 | 61,915 | 47,675 | 53.2 | 40.9 |
| 전북 | 101,755 | 71,677 | 53,680 | 70.4 | 52.8 |
| 전남 | 100,883 | 62,864 | 48,727 | 62.3 | 48.3 |
| 경북 | 140,643 | 79,172 | 59,968 | 56.3 | 42.6 |
| 경남 | 188,968 | 97,390 | 75,125 | 51.5 | 39.8 |
| 제주 | 36,721 | 25,615 | 21,631 | 69.8 | 58.9 |



[그림 III-1-1] 시·도별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및 현원 비율

나.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

다음은 앞서와 같이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보육공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I-1-2>를 보면 최다 빈도는 41~50%로 59개 시·군·구, 51~60%가 58개 시·군·구이고 다음이 61~70%로 50개 시·도이다. 공급이 과소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4개 시·군·구이고 31~40%는 35개 시·군·구이다. 한편 공급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아동인구 대비 정원수가 71~80%는 20개 시·군·구이고 81~90%와 100%가 넘는 곳이 각각 3개 지역이다.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남 연기군, 경북 울릉군이고,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 강원도 정선군과 양구군이다.

<표 III-1-2>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분포

단위: 개

| | 30이하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100이상 | 전체 |
|----|------|-------|-------|-------|-------|-------|-------|-------|-----|
| 서울 | 0 | 9 | 10 | 4 | 2 | 0 | 0 | 0 | 25 |
| 부산 | 0 | 2 | 8 | 3 | 2 | 0 | 0 | 1 | 16 |
| 대구 | 0 | 0 | 1 | 6 | 1 | 0 | 0 | 0 | 8 |
| 인천 | 0 | 3 | 7 | 0 | 0 | 0 | 0 | 0 | 10 |
| 광주 | 0 | 0 | 1 | 0 | 3 | 1 | 0 | 0 | 5 |
| 대전 | 0 | 0 | 3 | 2 | 0 | 0 | 0 | 0 | 5 |
| 울산 | 0 | 3 | 1 | 1 | 0 | 0 | 0 | 0 | 5 |
| 경기 | 0 | 8 | 9 | 4 | 9 | 1 | 0 | 0 | 31 |
| 강원 | 2 | 1 | 3 | 5 | 2 | 3 | 0 | 2 | 18 |
| 충북 | 0 | 0 | 2 | 3 | 4 | 3 | 0 | 0 | 12 |
| 충남 | 1 | 0 | 3 | 7 | 3 | 1 | 1 | 0 | 16 |
| 전북 | 0 | 3 | 1 | 2 | 4 | 3 | 1 | 0 | 14 |
| 전남 | 0 | 1 | 2 | 6 | 8 | 5 | 0 | 0 | 22 |
| 경북 | 1 | 2 | 5 | 9 | 5 | 1 | 0 | 0 | 23 |
| 경남 | 0 | 3 | 3 | 6 | 7 | 1 | 0 | 0 | 20 |
| 제주 | 0 | 0 | 0 | 0 | 0 | 1 | 1 | 0 | 2 |
| 전체 | 4 | 35 | 59 | 58 | 50 | 20 | 3 | 3 | 232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시·군·구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77.6%를 나타낸다. 제주도는 두 개 자치시가 각각 72.4%, 82.8%로 10%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과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은 평균 60%가 넘는 지역은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강원으로

60~63%에 분포한다. 이들 자치 시·군·구 평균 공급률이 60%가 넘는 지역인 광주와 충북은 표준편차가 9.4%, 10.4%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전북은 최저치가 40% 미만으로 낮은 지역이 있으나 비교적 고른 비율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강원은 최저 22.1%, 최고 135.6%로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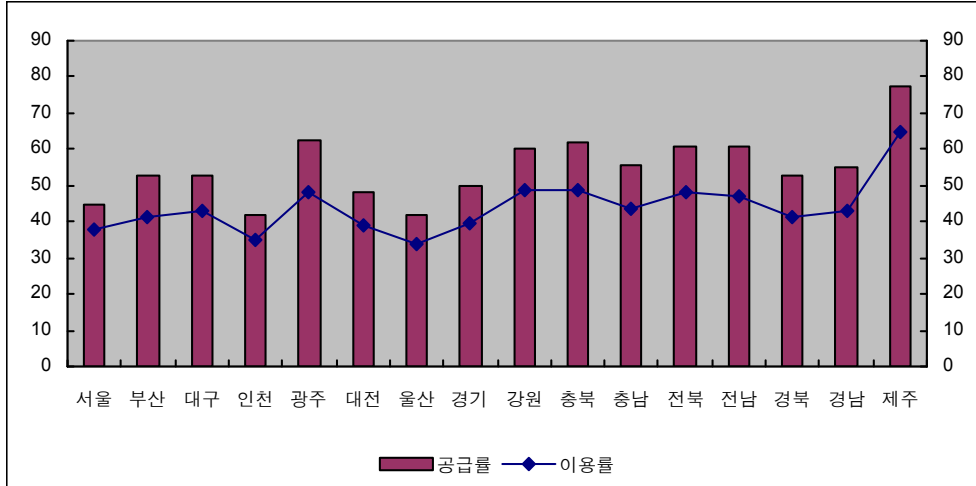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2.8%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4.5%이다. 이외는 강원이 49.0%로 가장 높고 울산, 인천이 가장 낮아서 34% 정도를 나타낸다. 보육 이용률 역시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최저 17.9%, 최고 107.0%로 최고와 최저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III-1-3〉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 개

| | 공급 | | | | 이용 | | | | 정원 총족률 | (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최저 | 최고 | 평균 | 표준편차 | 최저 | 최고 | | |
| 서울 | 44.5 | 9.1 | 30.5 | 65.2 | 37.6 | 7.4 | 25.4 | 54.5 | 84.7 | 16 |
| 부산 | 53.0 | 18.8 | 35.6 | 116.0 | 41.2 | 10.9 | 29.4 | 76.8 | 79.3 | 8 |
| 대구 | 52.8 | 7.8 | 41.7 | 70.0 | 42.8 | 7.1 | 33.5 | 58.8 | 80.8 | 10 |
| 인천 | 41.9 | 4.5 | 31.6 | 46.7 | 34.9 | 4.8 | 23.6 | 40.0 | 83.0 | 5 |
| 광주 | 62.7 | 9.4 | 48.5 | 74.7 | 48.0 | 6.6 | 38.2 | 56.0 | 76.8 | 5 |
| 대전 | 48.3 | 5.5 | 41.9 | 54.8 | 39.2 | 4.2 | 33.8 | 43.7 | 81.1 | 5 |
| 울산 | 42.0 | 6.1 | 35.8 | 51.5 | 33.7 | 4.0 | 30.5 | 40.4 | 80.6 | 31 |
| 경기 | 49.7 | 12.2 | 33.4 | 71.1 | 39.7 | 8.6 | 28.2 | 57.1 | 80.5 | 18 |
| 강원 | 60.4 | 28.3 | 22.1 | 135.6 | 49.0 | 22.5 | 17.9 | 107.0 | 81.4 | 12 |
| 충북 | 61.9 | 10.4 | 45.6 | 79.1 | 48.7 | 7.5 | 38.5 | 60.3 | 78.9 | 16 |
| 충남 | 55.4 | 13.0 | 28.7 | 85.8 | 43.6 | 8.6 | 24.0 | 61.2 | 79.5 | 14 |
| 전북 | 60.9 | 16.5 | 34.3 | 86.0 | 48.4 | 11.0 | 30.2 | 64.9 | 80.7 | 22 |
| 전남 | 60.9 | 10.3 | 38.8 | 77.8 | 47.0 | 7.2 | 32.5 | 62.8 | 77.7 | 23 |
| 경북 | 52.9 | 11.2 | 23.0 | 72.6 | 41.3 | 8.2 | 20.3 | 50.9 | 78.7 | 20 |
| 경남 | 55.2 | 11.8 | 32.6 | 74.4 | 43.2 | 8.1 | 27.7 | 55.4 | 78.9 | 2 |
| 제주 | 77.6 | 7.4 | 72.4 | 82.8 | 64.5 | 0.3 | 64.3 | 64.7 | 83.5 | 232 |
| 전체 | 53.8 | 14.9 | 22.1 | 135.6 | 42.9 | 10.8 | 17.9 | 107.0 | 80.3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그림 III-1-2] 시·도별 시·군·구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다. 읍·면·동 단위 보육 공급

<표 III-1-4>는 2008년 읍·면·동 단위의 보육시설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로 보육 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최다 빈도는 41~50%로 486개 읍·면·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31~40%로 451개 지역이다. 과다 또는 과소로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지역을 보면 전국 3,564개의 읍·면·동 중에서 573개 읍·면·동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87개 읍·면·동은 인구수 대비 정원 비율이 20% 이하이고 254개 읍·면·동은 21~30% 이다. 반면에 91~100%가 126개이고 공급이 영유아수보다 많아서 공급률이 100%를 넘는 곳도 355개 지역에 달한다.

다음 <표 III-1-5>는 읍·면·동 단위 평균을 나타낸다. 평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53.2%이고, 시·도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제주도가 읍·면·동 평균이 91.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광주로 84.7%이며, 낮은 지역은 경기도가 39.3%로 가장 낮고 다음이 인천 42.5%, 경상북도 46.0%, 서울 47.5%의 순이다.

각 시·도의 읍·면·동의 정원 비율의 최대치는 최소 경기도 111.1%이고 최대로는 충청북도 계룡시 두마면으로 주민등록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은 1125%에 달한다. 이 지역 아동수는 68명에 불과한데 보육시설은 18개소이다. 이들 보육시설들의 총 정원 대비 현원율도 82%에 달한다. 즉, 인근의 다른 지역 아동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읍·면·동 단위 이용률 평균은 울산이 평균 32.0%로 가장 낮고, 40% 미만인 지역은 인천, 경북, 전남, 경남, 경기, 대전 등이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76.3%이고 다음이 광주로 평균 61.1%이다. 즉 보육시설 공급률이 높은 지역이 이용률도 높다.

〈표 III-1-4〉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분포

단위: 개소

| 시·도 | 미설치 | 10 이하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100 이상 | 전체 |
|-----|-----|----------|-------|-------|-------|-------|-------|-------|-------|-------|--------|-----------|------|
| 서울 | 8 | 15 | 29 | 61 | 112 | 107 | 63 | 45 | 24 | 14 | 6 | 19 | 503 |
| 부산 | 6 | 10 | 17 | 20 | 40 | 32 | 25 | 21 | 14 | 5 | 7 | 26 | 223 |
| 대구 | 5 | 0 | 3 | 13 | 17 | 28 | 19 | 24 | 8 | 4 | 9 | 13 | 143 |
| 인천 | 15 | 0 | 7 | 18 | 27 | 27 | 20 | 13 | 7 | 4 | 2 | 3 | 143 |
| 광주 | 9 | 1 | 0 | 6 | 9 | 12 | 12 | 8 | 5 | 8 | 5 | 16 | 91 |
| 대전 | 5 | 1 | 1 | 7 | 15 | 16 | 16 | 10 | 1 | 5 | 0 | 4 | 81 |
| 울산 | 7 | 1 | 7 | 6 | 6 | 14 | 5 | 4 | 5 | 2 | 0 | 1 | 58 |
| 경기 | 29 | 9 | 37 | 57 | 90 | 95 | 77 | 53 | 18 | 20 | 15 | 33 | 533 |
| 강원 | 28 | 1 | 5 | 8 | 13 | 21 | 32 | 18 | 12 | 7 | 5 | 37 | 187 |
| 충북 | 36 | 0 | 2 | 6 | 10 | 17 | 10 | 16 | 12 | 10 | 8 | 26 | 153 |
| 충남 | 47 | 1 | 6 | 11 | 19 | 21 | 33 | 16 | 11 | 8 | 11 | 28 | 212 |
| 전북 | 68 | 0 | 5 | 11 | 13 | 16 | 14 | 22 | 21 | 15 | 16 | 43 | 244 |
| 전남 | 90 | 2 | 4 | 14 | 16 | 16 | 25 | 32 | 23 | 24 | 15 | 34 | 295 |
| 경북 | 105 | 5 | 8 | 22 | 28 | 28 | 21 | 36 | 27 | 19 | 10 | 29 | 338 |
| 경남 | 90 | 0 | 10 | 14 | 34 | 29 | 31 | 35 | 17 | 8 | 16 | 33 | 317 |
| 제주 | 3 | 0 | 0 | 0 | 2 | 7 | 8 | 3 | 5 | 4 | 1 | 10 | 43 |
| 전체 | 551 | 46 | 141 | 274 | 451 | 486 | 411 | 356 | 210 | 157 | 126 | 355 | 35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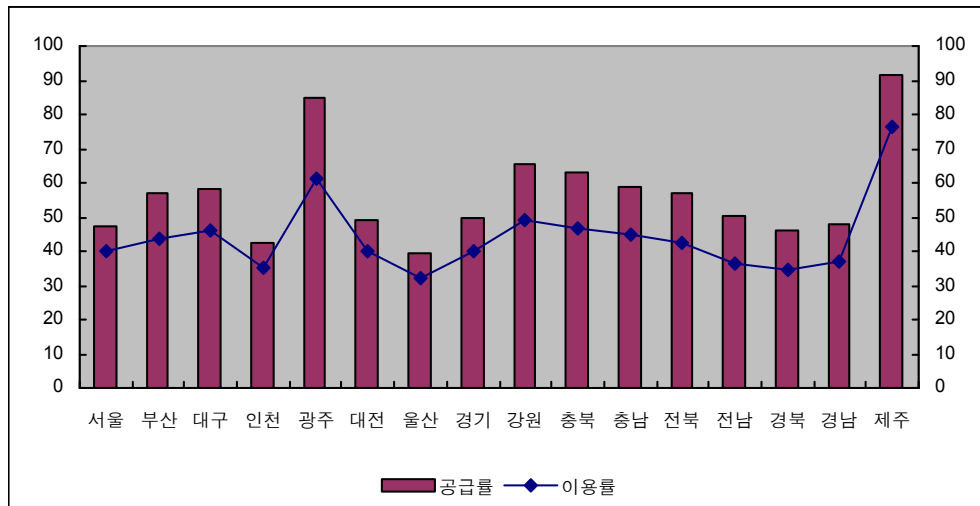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표 III-1-5〉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 개

| 구분 | 공급 | | | 이용 | | | 정원 총족률 | (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최고 | 평균 | 표준편차 | 최고 | | |
| 서울 | 47.5 | 40.3 | 680.4 | 40.0 | 33.7 | 593.5 | 84.7 | 505 |
| 부산 | 57.0 | 47.8 | 389.9 | 43.6 | 31.5 | 195.0 | 79.0 | 223 |
| 대구 | 58.1 | 32.0 | 229.4 | 45.9 | 26.2 | 174.7 | 79.0 | 143 |
| 인천 | 42.5 | 25.9 | 164.0 | 35.3 | 21.3 | 141.7 | 84.0 | 143 |
| 광주 | 84.7 | 111.6 | 784.0 | 61.1 | 73.5 | 453.1 | 76.6 | 91 |
| 대전 | 49.1 | 25.8 | 138.0 | 39.7 | 21.7 | 120.7 | 80.3 | 81 |
| 울산 | 39.3 | 24.9 | 111.1 | 32.0 | 21.1 | 90.1 | 82.5 | 58 |
| 경기 | 50.0 | 39.3 | 477.5 | 39.9 | 31.6 | 402.5 | 81.0 | 533 |
| 강원 | 65.6 | 56.8 | 343.6 | 49.3 | 43.8 | 287.2 | 77.6 | 187 |
| 충북 | 63.1 | 71.2 | 708.6 | 46.5 | 49.1 | 459.1 | 76.4 | 153 |
| 충남 | 58.9 | 88.7 | 1125.0 | 44.8 | 69.6 | 926.5 | 79.2 | 212 |
| 전북 | 57.2 | 51.1 | 317.7 | 42.3 | 40.1 | 283.3 | 74.3 | 244 |
| 전남 | 50.2 | 44.3 | 220.6 | 36.1 | 31.0 | 144.0 | 75.0 | 295 |
| 경북 | 46.0 | 49.0 | 430.6 | 34.7 | 36.4 | 300.0 | 77.1 | 338 |
| 경남 | 48.1 | 46.3 | 266.5 | 36.7 | 35.1 | 204.9 | 77.5 | 317 |
| 제주 | 91.5 | 94.0 | 584.1 | 76.3 | 79.5 | 496.9 | 84.3 | 43 |
| 전체 | 53.2 | 52.9 | 1125.0 | 41.2 | 40.0 | 926.5 | 79.6 | 3,566 |

주: 정원총족률은 시설이 없거나 이용아동수가 없는 지역을 제외한 3011개 시·군·구 대상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함.



[그림 III-1-3] 시·도별 읍면동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 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 지역

앞에서 살펴본 읍·면·동 및 시·군·구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률 자료에 기초하고 이외에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여부, 아동인구, 유치원 설치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할 수요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유아수 10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영유아수 100명 미만 지역

먼저 <표 III-2-1>은 영유아 아동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에 관한 것으로, 영유아수가 100명 미만이고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이 없으며 보육시설 공급 비율이 낮은 지역을 나타낸다.

<표 III-2-1> 시·도별 조건별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단위: 지역

| | 아동수 100명 미만, 국공립보육시설미설치 | | | | | | 아동수 100명 미만,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미설치 | | | | | |
|----|-------------------------|-----|-------|-------|-------|-----|------------------------------|-----|-------|-------|-------|----|
| | 미설치 | ~10 | 11~20 | 20~30 | 30~40 | 계 | 미설치 | ~10 | 11~20 | 20~30 | 30~40 | 계 |
| 서울 | 2 | - | - | 0 | 0 | 2 | 1 | - | - | - | - | 1 |
| 부산 | 3 | - | - | 0 | 0 | 3 | 2 | - | - | - | - | 2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 10 | - | - | 0 | 1 | 11 | 1 | - | - | - | - | 1 |
| 광주 | 5 | - | - | 0 | 0 | 5 | - | - | - | - | - | - |
| 대전 | 2 | - | - | 0 | 0 | 2 | 1 | - | - | - | - | 1 |
| 울산 | 1 | - | - | 0 | 0 | 1 | - | - | - | - | - | - |
| 경기 | 15 | - | - | 1 | 0 | 16 | 5 | - | - | - | - | 5 |
| 강원 | 19 | - | - | 0 | 1 | 20 | 2 | - | - | - | - | 2 |
| 충북 | 34 | - | - | 2 | 0 | 36 | - | - | - | - | - | - |
| 충남 | 28 | - | - | 0 | 2 | 30 | - | - | - | - | - | - |
| 전북 | 56 | - | - | 2 | 0 | 58 | 1 | - | - | - | - | 1 |
| 전남 | 66 | - | - | 1 | 2 | 69 | 3 | - | - | - | - | 3 |
| 경북 | 91 | - | - | 2 | 5 | 98 | 8 | - | - | - | - | 8 |
| 경남 | 77 | - | - | 0 | 4 | 81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409 | - | - | 8 | 15 | 432 | 29 | - | - | - | - | 29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유치원을 고려하지 않고 보육시설 미설치만을 보면 해당되는 지역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409개이고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급률이 40% 미만인 지역이 23개 지역이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하면 29개 지역이 남는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보육시설이 없다. 즉 29개 지역은 아동수가 100명 미만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유아수가 100명 미만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전혀 없는 지역은 <표 III-2-2>에 제시된 지역으로, 대도시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부산시 중구 광복동, 금정구 선두구동 대전시 동구 중앙동 등이고, 중소도시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시흥시 과림동, 파주시 진동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상주시 화남면 등이다.

<표 III-2-2> 아동수 100명 미만, 국공립보육시설·공립유치원 미설치 읍·면·동
단위: 지역

| 구분 | 수 | 지역 |
|-------|----|---|
| 서울특별시 | 1 | 강동구 강일동 |
| 부산광역시 | 2 | 중구 광복동, 금정구 선두구동 |
| 인천광역시 | 1 | 강화군 서도면 |
| 대전광역시 | 1 | 동구 중앙동 |
| 경기도 | 5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시흥시 과림동, 파주시 진동면, 연천군 장남면, 증면 |
| 강원도 | 2 | 춘천시 조운동, 삼척시 노곡면 |
| 전라북도 | 1 | 진안군 상전면 |
| 전라남도 | 3 | 담양군 겸면, 곡성군 목사동면, 오곡면 |
| 경상북도 | 8 | 포항시 북구 기북면, 상주시 화남면, 의성군 비안면, 안사면, 영덕군 달산면, 성주군 금수면, 예천군 개포면, 보문면 |
| 계 | 25 | |

나. 영유아수 100명 이상 지역

다음은 영유아수가 100명 이상인 지역이다. <표 III-2-3>은 영유아수가 100명 이상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영유아수가 100명 이상이고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이 40% 이하인 지역의 수를 보육 공급률 정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다수가 읍·면이지만 읍·면에는 초등학교 병설 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표 III-2-3〉 시·도별 조건별 보육공급률별 읍면동 수

단위: 지역

| |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시설미설치 | | | | | |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미설치 | | | | | |
|----|-------------------------|------|-------|-------|-------|-----|------------------------------|------|-------|-------|-------|-----|
| | 미설치 | 10이하 | 11~20 | 20~30 | 30~40 | 계 | 미설치 | 10이하 | 11~20 | 20~30 | 30~40 | 계 |
| 서울 | 7 | 14 | 14 | 13 | 9 | 57 | 7 | 9 | 10 | 11 | 7 | 44 |
| 부산 | 3 | 10 | 14 | 16 | 20 | 63 | 2 | 7 | 12 | 15 | 18 | 54 |
| 대구 | 5 | 0 | 2 | 12 | 15 | 34 | 3 | 0 | 2 | 4 | 7 | 16 |
| 인천 | 5 | 0 | 6 | 14 | 16 | 41 | 1 | 0 | 6 | 7 | 6 | 20 |
| 광주 | 4 | 1 | 0 | 5 | 8 | 18 | 1 | 1 | 0 | 2 | 3 | 7 |
| 대전 | 3 | 1 | 1 | 6 | 9 | 20 | 3 | 1 | 0 | 2 | 5 | 11 |
| 울산 | 6 | 1 | 5 | 4 | 3 | 19 | 0 | 0 | 1 | 1 | 0 | 2 |
| 경기 | 14 | 9 | 29 | 38 | 38 | 128 | 8 | 5 | 7 | 13 | 5 | 38 |
| 강원 | 9 | 1 | 5 | 6 | 9 | 30 | 0 | 0 | 0 | 3 | 1 | 4 |
| 충북 | 2 | 0 | 2 | 4 | 8 | 16 | 1 | 0 | 0 | 0 | 0 | 1 |
| 충남 | 19 | 1 | 6 | 9 | 13 | 48 | 2 | 0 | 1 | 2 | 0 | 5 |
| 전북 | 12 | 0 | 3 | 6 | 10 | 31 | 1 | 0 | 0 | 2 | 1 | 4 |
| 전남 | 24 | 2 | 3 | 10 | 9 | 48 | 5 | 1 | 1 | 3 | 2 | 12 |
| 경북 | 14 | 5 | 8 | 15 | 18 | 60 | 1 | 1 | 3 | 2 | 1 | 8 |
| 경남 | 13 | 0 | 8 | 11 | 17 | 49 | 1 | 0 | 2 | 2 | 4 | 9 |
| 제주 | 3 | 0 | 0 | 0 | 1 | 4 | 2 | 0 | 0 | 0 | 0 | 2 |
| 계 | 143 | 45 | 106 | 169 | 203 | 666 | 38 | 25 | 45 | 69 | 60 | 237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 자료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산출

다음 <표 III-2-4>는 앞의 <표 III-2-3> 중에서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 시설·유치원 미설치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미설치 지역은 38개소가 된다. 이들 지역은 보육시설 추가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특성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다른 대체 기관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III-2-4〉 아동수 100명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중
보육 공급률이 저조한 읍·면·동

| 지역 | 보육 공급률 | | | | |
|-------|------------------|----------------------------------|--------------------------------|-----------------------|--------------------------|
| | 미설치 | 10이하 | 11~20 | 21~30 | 30~40 |
| 서울특별시 | 7 | 9 | 10 | 11 | 7 |
| 종로구 | 명륜3가동 | 평창동 | | | |
| 중구 | 광희동 | | | | |
| 용산구 | | 한강로제1동 한강로제3동 한남제1동 | 이촌제1동 | 남영동 | 이태원제1동 |
| 성동구 | 송정동 | | | | |
| 광진구 | | | | | |
| 동대문구 | | | 답십리제1동 | 신설동 | 답십리제4동 휘경제1동 상계제7동 |
| 노원구 | | | 중계2동 | 상계9동 | |
| 은평구 | | | 응암제2동 | 불광제1동 | 홍제제4동 |
| 서대문구 | | | | | |
| 마포구 | | 신공덕동 | | | |
| 양천구 | | | | 신정제6동 | |
| 금천구 | | | | | 시흥제1동 |
| 영등포구 | | | 문래제2동 | 당산제2동 | |
| 동작구 | | | 동작동 | | |
| 관악구 | | | | 남현동 봉천제2동 | |
| 서초구 | 반포제3동 | | 반포제2동 양재제2동 | | |
| 강남구 |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 | | | |
| 송파구 | 잠실제7동 | 문정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둔촌제1동 | 방이제2동 | 방이제1동 송파제2동 장지동 | 가락본동 |
| 강동구 | | | 명일제2동 | | |
| 부산광역시 | 2 | 7 | 12 | 15 | 18 |
| 중구 | 동광동 영주제1동 | | 영주제2동 | | |
| 서구 | | 남부민제3동 | | 부민동 암남동 충무동 | |
| 동구 | | | 초량제4동 | | 범일제4동 |
| 영도구 | | 영선제1동 | | 봉래제1동 | |
| 부산진구 | | 부암제1동 | 가야제1동 부전제2동 양정제1동 연지동 | 가야제2동 범천제1동 | 부암제3동 |

(표 계속)

| 지역 | 보육공급률 | | | | |
|-------|----------------------|----------------|----------------|----------------|--------------------------------|
| | 미설치 | 10이하 | 11~20 | 21~30 | 30~40 |
| 동래구 | | | 명륜제2동 온천제2동 | | 안락제1동 |
| 남구 | | 용호제4동 | 대연제1동 | 대연제2동 | 대연제3동 문현제3동 용호제2동 |
| 북구 | | | | 만덕제3동 | |
| 해운대구 | | | | 좌제1동 좌제2동 | 반여제4동 재송제1동 좌제3동 좌제4동 |
| 사하구 | | | | 하단제2동 | 괴정제1동 괴정제2동 |
| 금정구 | | 청룡노포동 | 부곡제3동 부곡제4동 | 구서제1동 | 서제2동 장전제1동 |
| 연제구 | | 거제제3동 연산제7동 | 연산제5동 | 거제제1동 연산제9동 | |
| 수영구 | | | | | 광안제3동 광안제4동 망미제2동 |
| 사상구 | | | | 모라제1동 | 염곡동 |
| 대구광역시 | 3 | 0 | 2 | 4 | 7 |
| 중구 | 대봉2동 대신동 동인3가동 | | 대봉1동 | | |
| 동구 | | | 동촌동 | 안심2동 | 효목2동 |
| 서구 | | | | 내당4동 | |
| 남구 | | | | 대명10동 | |
| 북구 | | | | 침산2동 | 칠성동 |
| 수성구 | | | | | 범물2동 수성1가동 황금2동 |
| 달서구 | | | | | 본동 월성1동 |
| 인천광역시 | | | | | |
| 중구 | 연안동 | | 율목동 | 송현3동 | |
| 동구 | | | 화수2동 | 용현2동 용현3동 | |
| 남구 | | | 주안1동 | 동촌2동 동촌3동 | 주안2동 |
| 연수구 | | | 옥련2동 | | |
| 남동구 | | | | | 간석2동 간석4동 |
| 부평구 | | | | | |
| 계양구 | | | 계산4동 | 계산3동 | 작전2동 효성2동 |
| 서구 | | | 가정2동 | 가정1동 | 가좌3동 |

(표 계속)

| 지역 | 보육공급률 | | | | |
|-------|---|----------------------|------------------------------|----------------------|--------------|
| | 미설치 | 이하10 | 11~20 | 21~30 | 30~40 |
| 광주광역시 | 1 | 0 | 6 | 7 | 6 |
| 동구 | | 지산1동 | | | |
| 서구 | | | | 치평동 | |
| 남구 | | | | 문흥2동 | 봉선1동 |
| 북구 | | | | | 송정1동 |
| 광산구 | 첨단1동 | | | | 월곡1동 |
| 대전광역시 | 1 | 1 | 0 | 2 | 3 |
| 동구 | 대신동 | | | | 성남2동 |
| 중구 | 소제동 | 대사동 | | 태평2동 | 인동 |
| 서구 | 문창동 | | | 둔산1동 | 오류동 |
| | | | | | 월평1동 |
| | | | | | 탄방동 |
| 울산광역시 | 0 | 0 | 1 | 1 | 0 |
| 남구 | | | 신정2동 | | |
| 동구 | | | | 대송동 | |
| 경기도 | 11 | 5 | 7 | 13 | 5 |
| 수원시 | | | 팔달구 매교동 | 영통구 매탄2동 영통구 매탄4동 | |
| 성남시 | 수정구 시흥동 분당구 금곡2동 분당구 수내2동 | 분당구 수내1동 분당구 야탑1동 | 수정구 신촌동 분당구 이매2동 | 분당구 정자3동 | 분당구 서현1동 |
| 안양시 | | 동안구 범계동 | 동안구 귀인동 동안구 신촌동 | 동안구 평안동 | 만안구 안양1동 |
| 부천시 | 소사구 역곡3동 | | | 원미구 상3동 원미구 소사동 | |
| 광명시 | | | | 철산1동 | |
| 안산시 | | 상록구 사3동 | | 단원구 원곡본동 | |
| 고양시 | 덕양구 대덕동 일산동구 장항1동 일산서구 송포동 동구동 | | 일산동구 마두2동 일산동구 장항2동 | 덕양구 행신3동 | 일산서구 일산3동 |
| 구리시 | | | | | 수택1동 |
| 남양주시 | | | | 양정동 | |
| 오산시 | | 초평동 | | | |
| 시흥시 | | | | 정왕4동 | |
| 용인시 | | | | | 수지구 풍덕천1동 |
| 이천시 | | | | 관고동 | |
| 화성시 | | | | 동탄동 | |

(표 계속)

| 지역 | 보육공급률 | | | | |
|--|----------------------------------|-----------|------------------------|-----------------------|---------------------------------|
| | 미설치 | 10이하 | 11~20 | 21~30 | 30~40 |
|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 0 | 0 | 0 | 2 소양동 동명동, 청호동 | 1 성덕동 |
| 충청북도 충주시 | 1 성내충인동 | 0 | 0 | 0 | 0 |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 2 활성동 남선면 | 0 | 1 산성동 | 2 신방동 쌍용2동 | 0 |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 1 영등2동 | 0 | 0 | 2 시기동 왕정동 | 1 완산구 서서학동 |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 5 만호동 광림동, 동문동 왕조2동, 향동 | 1 매곡동 | 1 조곡동 | 3 연동 중앙동 금호동 | 2 송월동, 영산동 |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 1 원평1동 | 1 공단2동 | 3 황오동 송하동 동성동 | 2 성동동 평화동 | 1 남구 해도1동 |
| 경상남도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 1 중앙동 | 0 | 2 성지동 이동 | 2 오동동 마전동 | 4 양덕2동 회원1동 강남동 용현면 |
|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2 일도1동 중앙동 | 0 | 0 | 0 | 0 |

3.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공무원 의견

제3절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자료를 기초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2,379개이고 신축중인 시설은 130개, 그리고 2010년까지 확충 예정인 시설은 489개로,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는 2,90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존재하게 될 예정이다.

〈표 III-3-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예정

단위: 개소

| 구분 | 운영중인 시설 | 신축중인 시설 | 2010년까지 확충예정시설 | 계 |
|-------|---------|---------|----------------|-------|
| 전체 | 2,379 | 130 | 489 | 2,998 |
| 시·도 | | | | |
| 서울특별시 | 779 | 38 | 67 | 884 |
| 부산광역시 | 370 | 8 | 17 | 395 |
| 대구광역시 | 27 | 6 | 17 | 50 |
| 인천광역시 | 67 | 12 | 38 | 117 |
| 광주광역시 | 19 | 0 | 0 | 20 |
| 대전광역시 | 42 | 0 | 1 | 43 |
| 울산광역시 | 28 | 0 | 0 | 28 |
| 경기도 | 382 | 29 | 175 | 586 |
| 강원도 | 75 | 2 | 4 | 81 |
| 충청북도 | 49 | 4 | 7 | 60 |
| 충청남도 | 142 | 4 | 68 | 214 |
| 전라북도 | 47 | 8 | 9 | 64 |
| 전라남도 | 93 | 6 | 10 | 109 |
| 경상북도 | 129 | 2 | 8 | 139 |
| 경상남도 | 114 | 9 | 48 | 171 |
| 제주자치도 | 16 | 2 | 20 | 38 |
| 행정구역 | | | | |
| 시 | 736 | 53 | 307 | 1,096 |
| 군 | 309 | 15 | 26 | 350 |
| 구 | 1,318 | 60 | 136 | 1,514 |
| 도 | 16 | 2 | 20 | 38 |

시·군·구별로는 중소도시는 시 736개, 군 지역 309개, 그리고 대도시인 구 지역에 1,31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 운영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6개의 국공립보

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까지 확충예정시설을 포함하면 시 지역은 1,096개소, 군 지역은 350개소, 구 지역은 1,514개소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표 III-3-1 참조).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를 공무원들에게 물었을 때, 조사된 전국 226개 시·군·구 지역 공무원 중 46%정도인 105개 지역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0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III-3-2 참조). 가장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한 지역은 경기도로 25명이었고 다음은 서울 19명, 경상남도 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응답자 23명 중 19명이 추가 설치에 반대하였고 4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지역은 필요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3-2〉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 및 필요 규모

단위: 명

| 구분 | 필요성 | | | | | 필요 시설수 |
|-------|-------|-------|----------|----------|-----|--------|
| | 매우 필요 | 조금 필요 | 별로 필요 없음 | 거의 필요 없음 | 계 | |
| 전체 | 40 | 65 | 59 | 62 | 226 | 105 |
| 시·도 | | | | | | |
| 서울특별시 | 5 | 14 | 2 | 4 | 25 | 19 |
| 부산광역시 | 2 | 5 | 5 | 4 | 16 | 7 |
| 대구광역시 | 1 | 2 | 1 | 4 | 8 | 3 |
| 인천광역시 | 4 | 4 | 1 | 0 | 9 | 8 |
| 광주광역시 | 0 | 0 | 2 | 3 | 5 | 3 |
| 대전광역시 | 0 | 3 | 1 | 1 | 5 | 4 |
| 울산광역시 | 2 | 2 | 1 | 0 | 5 | 0 |
| 경기도 | 14 | 11 | 4 | 3 | 32 | 25 |
| 강원도 | 2 | 1 | 6 | 7 | 16 | 3 |
| 충청북도 | 1 | 3 | 3 | 5 | 12 | 4 |
| 충청남도 | 2 | 4 | 3 | 7 | 16 | 6 |
| 전라북도 | 0 | 1 | 7 | 5 | 13 | 1 |
| 전라남도 | 3 | 5 | 5 | 7 | 20 | 8 |
| 경상북도 | 2 | 2 | 11 | 8 | 23 | 4 |
| 경상남도 | 2 | 7 | 7 | 4 | 20 | 9 |
| 제주자치도 | 0 | 1 | 0 | 0 | 1 | 1 |

(표 계속)

| 구분 | 필요성 | | | | | 필요 시설수 |
|------|----------|----------|-------------|-------------|----|-----------|
| | 매우 필요 | 조금 필요 | 별로 필요 없음 | 거의 필요 없음 | 계 | |
| 행정구역 | | | | | | |
| 시 | 23 | 18 | 18 | 17 | 76 | 41 |
| 군 | 3 | 19 | 28 | 30 | 80 | 22 |
| 구 | 14 | 27 | 13 | 15 | 69 | 41 |
| 도 | 0 | 1 | 0 | 0 | 1 | 1 |

이어서 추가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몇 개나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국에서 요구되고 있는 총수는 105개로 조사되었고, 경기도가 25개, 서울 19개, 경상남도 9개, 인천 8개, 전라남도 8개, 부산 7개, 충청남도 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별로 분석해보면 농어촌 지역인 군지역에서 22개의 추가 수요가 있었고 시 또는 구 지역은 각각 41개의 많은 수요 수치를 내놓았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국공립시설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수요 대비 공급 과잉 | 국공립 시설 충분 | 재정 부담 | 아동 감소 | 기타 | 계 |
|-------|----------------|--------------|-------|-------|----|-----|
| 전체 | 67 | 15 | 14 | 22 | 2 | 120 |
| 시·도 | | | | | | |
| 서울특별시 | 2 | 2 | 2 | 0 | 0 | 6 |
| 부산광역시 | 6 | 1 | 1 | 1 | 0 | 9 |
| 대구광역시 | 2 | 1 | 1 | 1 | 0 | 5 |
| 인천광역시 | 0 | 1 | 0 | 0 | 0 | 1 |
| 광주광역시 | 3 | 0 | 0 | 0 | 2 | 5 |
| 대전광역시 | 1 | 0 | 1 | 0 | 0 | 2 |
| 울산광역시 | 0 | 0 | 1 | 0 | 0 | 1 |
| 경기도 | 1 | 2 | 3 | 1 | 0 | 7 |
| 강원도 | 8 | 1 | 0 | 3 | 0 | 12 |
| 충청북도 | 7 | 1 | 0 | 0 | 0 | 8 |
| 충청남도 | 6 | 0 | 3 | 1 | 0 | 10 |
| 전라북도 | 7 | 2 | 0 | 3 | 0 | 12 |
| 전라남도 | 7 | 0 | 0 | 5 | 0 | 12 |
| 경상북도 | 11 | 2 | 1 | 5 | 0 | 19 |
| 경상남도 | 6 | 2 | 1 | 2 | 0 | 11 |

(표 계속)

| 구분 | 수요 대비 공급 과잉 | 국공립 시설 충분 | 재정 부담 | 아동 감소 | 기타 | 계 |
|------|----------------|--------------|-------|-------|----|----|
| 행정구역 | | | | | | |
| 시 | 19 | 4 | 5 | 7 | 0 | 35 |
| 군 | 34 | 7 | 3 | 13 | 0 | 57 |
| 구 | 14 | 4 | 6 | 2 | 2 | 28 |

<표 III-3-3>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지역 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총 120명 중 ‘수요대비 공급과잉이므로’가 67명, ‘국공립보육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이 15명, ‘아동감소’가 22명, ‘재정부담’이 14명으로 응답하였다.

수요대비 공급 과잉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군지역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아동감소 때문이라는 응답도 군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에서 수요대비 공급과잉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정부담을 이유로 든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의 순이었다(표 III-3-3 참조).

4. 소결

최근 보육시설은 규모가 커지고 수적으로도 확대되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기존 통계를 통해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보육수요와 공급수준을 살펴보면 공급률과 이용률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 단위로 볼 때 전국 평균 보육 공급률¹⁴⁾은 49.4%이고 이용률¹⁵⁾은 38.8%이나, 시·도별로 각각 41.4~69.8%, 32.5~58.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비교는 공급과 이용에서 오히려 더 큰 지역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초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의 수요 공급이 더욱 균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공급 필요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연령 아동수 100명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립유

14) 보육정원/영유아인구수*100으로 산출함.

15) 보육현원/영유아인구수*100으로 산출함.

지원 중 어느 것도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100명 미만에서는 25개 지역이, 100명 이상에서는 38개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읍·면·동 지역이 속하는 시·도를 살펴보면 100명 미만 지역 중에는 경상북도가 가장 공급이 부족하였고 100명 이상 지역 중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미설치 읍·면·동이 가장 많았다. 다른 요인들을 더 고려할 필요는 있겠으나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공립유치원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도는 서울·경기·경북이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내 추가 설치에 대해 공무원 226명 중 46.5%인 105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요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었고 다음이 서울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구역별로는 시와 구지역이 추가설치 필요성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중소도시와 서울시내 지역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군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으로 보육시설 추가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의 공무원 다수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앞선 분석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추가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실제의 보육수요를 읍·면·동 단위로 제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조사결과를 볼 때 경기도내 중소도시와 서울시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우선 필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IV.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와 보육시설

제4장에서는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와 보육시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1절에서는 BTL사업 방식의 개요를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각 부처 BTL사업 추진시 보육시설 복합화 추진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일본의 학교 복합화 보육 시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BTL사업 방식의 개요

가. 민간자본 유치의 개념 및 특징

민간 자본 유치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국가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 범위내 공공 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모성은, 2000).¹⁶⁾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는 제정 목적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는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고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작용이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민자유치의 법적 개념요소로는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민관 협력의 주체가 된다는 점, 둘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이 목적이란 점, 셋째, 민간부문으로부터 건설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는 점, 넷째, 민간부문은 법령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가진다는 점 등이 있다(배득중, 1995).

16) 민간자본 유치가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정의한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민자유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실무상 쓰는 용어임.

민간 투자 사업 추진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셋째, BOT(Build-Own-Transfer)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넷째, BOO(Build-Own-Operate)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이외에도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러한 네 가지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채택할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 이후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이 확대, 도입되고 있다. 2005년 새로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초·중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대학 기숙사, 사병내무반,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생활기반시설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나. BTL사업 방식

1) 개념 및 특징

BTL사업은 민간의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Build), 시설 완공시점에 민간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Transfer) 대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하며, 이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Lease) 약정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BTL사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BTL사업이 다른 민간 투자방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이 건설한 시설이 정부 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된다. 이는 민간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된다. 셋째,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선정하여 지급하므로 사전에 목표 수익률을 실현이 보장된다. 즉 민간의 수요 위험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된다. 넷째, 시설 설계, 건설,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기존 재정사업과 차별된다. 설계, 건설, 운영의 통합관리와 건설, 운영 위험의 민간 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2) BTL사업 추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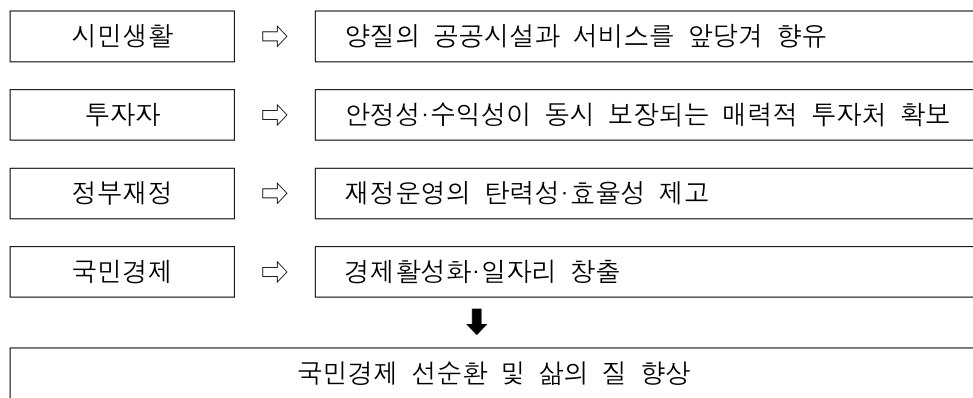
BTL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그림 IV-1-1 참조).

첫째, BTL사업은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에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증·개축하는 데 20년이 소요되나,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수요는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정부가 바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을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BTL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요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BTL사업을 통해 조기에 제공될 수 있는 시설로는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초·중등학교,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임대주택, 박물관, 문화회관,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또한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시설이라면 조기에 건설하여 완료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둘째,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는 중학교를 개축하여 문화센터, 수영장, 체육관을 지어 지역주민의 여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에 비해 목표 공사기간 준수율과 총사업비 준수율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30년 동안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므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 외국 사례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준수율과 공사비 준수율이 80%에 이르는 데 비해, 재정사업은 공사기간 준수율과 공사비 준수율이 각각 30%, 27% 수준을 나타낸다(UK National Audit Office, 2003).

셋째, 정부 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인다.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나갈 수 있으며, 경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에서 벗어나 연중 필요시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넷째, 민간 유휴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꾀한다. 장기채권 시장은 자산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기관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연기금 등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BTL사업은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인함으로써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BTL민간투자사업 홈페이지.

[그림 IV-1-1] BTL사업의 기대효과

다섯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BTL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건설 부문 일감 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3) BTL투자 대상 시설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44개 사회기반시설이 해당된다.¹⁷⁾ 이 중 BTL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시설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가 없는 시설은 민간투자 방식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한 시설이어야 한다. 사업사업편익이 크고, 시설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셋째, 사용료로만은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어야 한다.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거나,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더라도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이라면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 방안

민간투자자 수익보장 방안으로 주무관청은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의 합인 정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고,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한다.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

17)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여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포함됨.

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한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된다. 사업비 구성항목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BTL 사업비 구성 항목

| 항 목 | 내 용 |
|--------|--|
| 조사비 |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 지질조사 등 기타 조사비 |
| 설계비 | • 공사의 진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
| 공사비 |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 보상비 |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비 및 이주비와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
| 부대비 |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
| 운영설비비 |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비품비 및 기자재의 가액 |
| 제세공과금 |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 영업 준비금 |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임대수익률(세전수익률을 의미함)은 5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α 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시한다. 기준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과거 5영업일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단,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α 의 상한선을 협상대상자들에게 대상자 지정 통보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임대기간 설정은 20년 등 장기로 제안하고 있다.

시설임대료의 경감과 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는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¹⁸⁾.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권을 가지며 광열비 등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 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시설임대료에서 매년 공제하며 이 비용의 현가를 정부지급금 산정 시 반영하여 평가한다. 부대사업은 추진방식과는 상관없이 최소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의 순이익이 예상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은 100%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운영비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임대관리기법의 개선가능성, 인근 유사건축물의 운영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되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운영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이 차감되는 벌칙조항¹⁹⁾이 적용된다. 부속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공제한다. 부속수익사업²⁰⁾이 있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정부지급금에서 공제된다.

5) BTL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정부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여부를 미리 조사한다. 이후 모집된 여러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실시

18)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공간의 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됨. 단,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총민간사업비가 증가된 경우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부대사업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부대사업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임. 그러나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본 사업의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기타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9) 영국에서는 학교 냉난방, 조명, 수도, 편의시설 등에 장동 상태, 수리 기간, 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함.

20) 본 시설의 목적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학교의 경우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강진군 문화중합타운 건립의 고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설계·시공)하는 법인, 본 시설물 운영하는 법인 및 필요시 순수 투자법인 등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설계법인(설계자), 시공법인, 운영법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고시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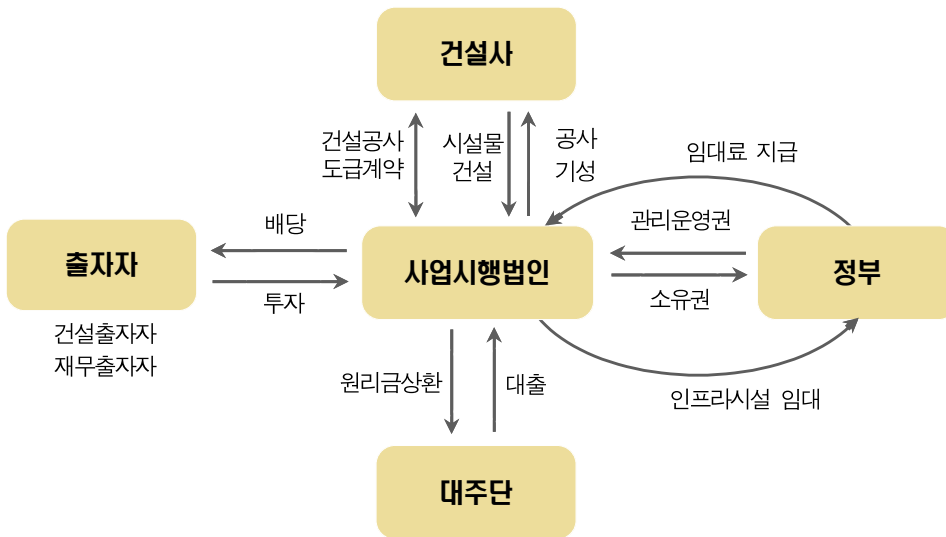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법인에는 재무적 투자자²¹⁾,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의 법인이 참여하는 구성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강진군의 사업

21) 재무적 투자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인프라펀드 등을 의미함.

고시 내용을 보면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기업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BTL사업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험분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법인이 사업시행사가 될 경우에 이 법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지만,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참여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 IV-1-2]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투자자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체계를 나타낸다. 이들의 직접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비용의 10%가 되고, 대체로 나머지 자본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확보한다. 즉, 법인에 투자자로 참여한 법인 중 건설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배당도 있으나, 이 보다는 시공이윤을 기대하며 안정적 수주물량을 확보한다.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기관은 투자에 대한 대가 이외에 대출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 운영전문사가 참여할 수도 있어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후에 투자비 회수와 함께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료: 남광토건(2008). 내부자료.

[그림 IV-1-2] BTL사업 민간 참여 체계

6) BTL사업 추진성과

지난 3년간 BTL사업 추진 성과를 보면, BTL사업 도입 첫해인 2005년에 3조 8억 원, 2006년 7조 2억 원, 2007년 5조 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3조 1천 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²²⁾. 이들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실제로 건설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도 있다.

사업은 국가사업, 국고 보조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으로 사업 주체는 다양하며, 사업 부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 건립 사업, 국립대학 건물이나 기숙사 등 건립 등 교육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환경부의 하수관거 사업, 국방부위 군숙소 건립 사업 등의 비중이 크다.

〈표 IV-1-2〉 '05년-'08년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주무 부처 | 시설 유형 | '05년 사업 | | '06년 사업 | | '07년 사업 | | '08년 사업 | |
|-----------|-------|----------|---------|--------|---------|--------|---------|--------|---------------|----|
| | | | 실고시액 | 건수 | 실고시액 | 건수 | 실고시액 | 건수 | 실고시액 | 건수 |
| 국가 | 교육부 | 국립대 | 5,427 | 10 | 544 | 2 | 3,282 | 2 | | |
| | 건교부 | 철도 | | | 10,523 | 2 | 13,259 | 1 | 8,863 | 1 |
| | | 임대주택 | | | | | | | 444 | 1 |
| | 국방부 | 정보통신망 | | | | | 2,367 | 1 | | |
| | | 군숙소 | 3,583 | 6 | 12,956 | 23 | | | 7,716 | 13 |
| | 노동부 | 기능대학 | 398 | 1 | 592 | 1 | 707 | 1 | 284 (대학시설) | 1 |
| | 해수부 | 해양박물관 | | | | | 1,028 | 1 | | |
| | 소계 | 9,408 | 17 | 24,615 | 28 | 25,628 | 14 | 17,307 | 16 | |
| 국고 보조 지자체 | 환경부 | 하수관거 | 10,528 | 17 | 21,589 | 29 | 11,732 | 15 | 11,579 | 16 |
| | 문화부 | 문화시설 | 3,986 | 12 | 1,568 | 9 | 939 | 3 | 1,351 | 4 |
| | 복지부 | 의료·복지 시설 | 598 | 2 | 454 | 1 | 669 | 2 | 1,060 | 6 |
| | 과기부 | 과학관 | | | 450 | 2 | 227 | 1 | 160 | 1 |
| | | 소계 | 15,112 | 31 | 24,061 | 41 | 13,567 | 21 | 14,150 | 27 |
| 지자체 | 교육부 | 초중등학교 | 13,404 | 38 | 23,817 | 58 | 16,294 | 42 | | |
| | 합계 | | 37,924 | 86 | 72,493 | 127 | 55,489 | 77 | 31,457 | 43 |

자료: 기획재정부(2008). 연도별 BTL사업 현황.

22) 연도별 사업현황(계획)을 부록에 제시함.

7) 소규모 BTL 사업의 장단점 및 요구

그 동안의 BTL사업은 대체로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의 설치에 시·군·구가 주체가 되고, 시·군·구가 보육시설 설치에 대규모 BTL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우선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령 Bundling 형으로 동시에 4개 정도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그 규모가 100억원을 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제우의 연구(2006)에 의거하여 100억 미만의 소규모 BTL사업에 대하여 장단점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소규모 사업에는 대형 건설업체와 제1금융권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규모별 BTL사업의 장단점 분석에 의하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역중소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중소업체 자기자본부담금 감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추정가액이 소액으로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량적 적격성 분석 결과 수익률이 가산율보다 낮아 지역별 사업관리 근접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거 BTL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권은 대량물량의 동시다발적 발주로 인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금융권에서는 출자 가능한 건설업체로는 도급순위는 150권 이내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닌 건설업체를 선호하며, Bundling 규모 300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사업 참여 주간사 역할이 가능한 금융권은 5~6개 금융권으로 이들의 참여 기회는 과다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은 중소기업이 건설사가 되므로 중소기업의 불안한 재무상태로 금융권이 기피하므로 재무적 투자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BTL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중소업체와 제휴하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고수익 보장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리운영기간도 5~10년 이내로 축소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감소해 주고, 운영을 제외하고 설계·자금조달·건설담당으로 구성하는 BTL사업 추진 방식의 적용, 실적비가 아닌 설계가를 추정한 사업 고시, 기술평가 대비 가격평가 비율이 높아 저가 경쟁 우려되므로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적정가격 평가제 도입(고시가 대비 90% 이하)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주무관청에서 기본설계 후 사업을 고시할 것, 주무관청에서 SPC 모집 후 지역을 제한한 경쟁입찰로 건설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V-1-3〉 사업 규모별 장단점

| 구분 | | 내용 |
|-------------|----|---|
| 70억원 규모 | 장점 | - BTL추진 Bundling수 확대로 지역중소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중소업체 자기자본부담금 감소 |
| | 단점 | - 추정가액이 소액으로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가 어려움 - 경량적 적격성 분석 결과 수익률이 가산율보다 낮아 지역별 사업관리 근접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거 BTL사업 추진 |
| 150억원 규모 | 장점 | - 중·대형건설업체와 지역중소업체의 공동참여로 학교시설의 품질 향상 기대 - 적정규모의 Bundling으로 지역중소업체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건설등급별 균등 참여 확대 가능 |
| | 단점 | - 전국 단위의 제1금융권의 재무적 투자자 사업 참여 어려움 예상 - 정량적 적격성 결과 투자적격성(VFM)은 있으나 가산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BTL사업 추진 가능 |
| 300억원 규모 | 장점 | - 전국의 제1금융권 사업 참여로 사업의 안전성 유도 가능 지역중소업체 - 대형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로 설계의 창의성과 건설의 고품질 확보 가능, 사업의 위험요인 축소 |
| | 단점 | - 사업 추진 Bundling수가 적어 지역중소업체 사업 참여 기회가 적음 - 단위사업의 개별학교 수가 많아 통합관리에 어려움 예상 |

한편 지역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방안의 지역중소업체 우대 배점 상향조정,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 상향 조정,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업체수에 의한 가점 부여 확대 및 세분화, 지역업체 참여업체수에 의한 가점부여 시 4등급 이하 등급별 참여업체 비율로 가점 부여, 재무적 투자자 사업 참여 출자자 제외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는 소규모 BTL사업의 별도 법인 운영방안으로는 기 시행중인 BTL SPC 법인과 연계한 SPC 운영으로 관리비 감소하는 방안, BTL 전문 운영사에 SPC 업무 위탁하는 방안, 상주인원을 최소화하고 분기별 평가 시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의 경우 건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본 시설과 이중 투입되는 경비관리 및 경비시스템 설치 관리는 학교 자체 관리, 학교 본 시설과 이중 투입되는 미화관리는 학교 자체 관리로 부담 완화를 제안하였다.

2. BTL방식의 복합화 보육시설 추진

가. 추진현황

1) 군관사 복합화 보육시설

BTL방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보육시설을 설치한 부처는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저출산문제가 미래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사·복지 분야 혜택 부여 등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2005년부터 군 관사 공동주택 건립과 병행한 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에 국방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여성가족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군 관사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시설 설치와 함께 BTL방식으로 설치되는 군 관사 재건축 사업에 복합화 시설로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사 재건축사업은 연차별로 추진되며 격오지, 도시 외곽지대 등 민간자본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은 일반재정 확보로 추진되지만 대부분이 BTL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군과 지자체간 첫 협력모델로서 충주시청과 공군²³⁾간 협력 등으로 군 관사 지역에 새로운 국공립보육시설이 2007년 6월에 개원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거나 2014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 건수는 총 38개소이다(표 IV-2-1 참조).

〈표 IV-2-1〉 BTL방식에 의한 군 관사 복합화 보육시설 설치 계획('10~'14)

단위: 개소, 명

| 구 분 | 총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개 | 38 | 6 | 14 | 12 | 1 | 6 |
| 수용 규모 | 시설당 평균 70명 | 420 | 980 | 840 | 70 | 620 |

자료: 국방부(2008). 내부자료.

이러한 사업은 국방부가 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현상

23) 제19비행장임.

극복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보육시설 부족, 기반시설 낙후 등으로 그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군부대 인근, 농어촌 등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무상임대함으로써, 부지매입·신축비 등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 받게 되는 지자체에서는 개소당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약 4억~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군 관사지역 인근 거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2만~6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영유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보육시설이 지역보육거점(childcare-spot)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군부대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군관사 건축 사업에 복합화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애로 사항으로는 사업시행사들이 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설계비와 건축비 모두 규모에 비하여 단위 당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2) 문화시설 복합화 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추진된 사업 및 투입 예산은 2005년 11개 사업에 3,804억원, 2006년 8개 사업에 1,425억원, 2007년 3개 사업에 939억원, 2008년 3개 사업에 1,087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25개 사업에 7,25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이 중 6개 사업은 학교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복합시설로는 도서관, 생활체육관, 지하주차장이 건립되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계획에 보육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업에 투입 예정이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축소하거나 제외할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육시설 설치 예정 부지 인근에 이미 국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지역,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취소되었다.

강진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시설과 보육시설 설치 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우선순위가 낮아서, 문화시설 안에 보육시설이 포함되

기에는 한계가 있다.

3) 학교 복합화 보육시설

교육과학기술부는 BTL방식에 의한 학교 건립 성과는 매우 크다. 국가사업으로 국립대학, 지자체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건립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다. 2005년 천안의 월봉중학교 복합화 시설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던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된 이후 이러한 방식을 다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천안의 월봉중학교 복합화는 설계상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관할하는 중학교 안에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 유아교육계의 반대가 커지면서 보육시설 설치는 무산되었다.

그 이후에 2007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영유아 통합 육아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통합 육아지원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0~2세반 또는 0~3세반으로 운영되며,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엔 0~5세 통합반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육아지원시설이 미비한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복지시설 복합화 보육시설

보건복지가족부의 BTL방식으로 복지시설 설치 시에 복합화로 신축된 보육시설은 아직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BTL사업 실적을 보면 2005년에 강진의료원²⁴⁾, 2006년 우수한 약유통지원시설, 2007년에 충주의료원과 화순군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추진되어 2008년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사업으로는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국립암센터 호수피스 완화·신치료기술지원센터, 그리고 노인치매병원 3곳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중 노인치매병원 3곳은 한도액이 각각 91억, 82억, 41억

24)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사업은 신안군수 교체와 위치 변경 문제 등으로 현재 사업 중지 상태임.

으로 소규모 사업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BTL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주로 공공보건의료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않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입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당초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 보육사업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 관심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사업으로 공공의료시설 2곳 이외에 청소년수련원, 국립영덕청소년환경센터, 광고신도시 에듀타운과 같은 청소년과 아동 복지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복합화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은 있다.

3. 일본의 사례: 학교 복합화 보육시설

가. 일본 보육시설 현황 개요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준의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의 시설로 구분되며, 이외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이 있다. 인가보육시설은 2006년 12월 현재 22,635개소로 공립시설 53.3%, 사립시설 46.7%이다. 일본의 사립시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보육시설이다. 인가 시설은 약 200만명의 아동이 이용한다. 인가의 보육시설은 2006년 말 현재 사업소내 보육시설 3,389개소, 기타 시설 2,169개소와 베이비호텔 1,620개소, 약 18만명의 아동이 보육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종일제를 기본으로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시간제보육도 제공한다. 2009년도 보육계획(안)에 따르면,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을 2008년 1,135개소에서 1,310개소로 늘리고, 병아(病兒)보육시설도 2008년 1,307개소에서 1,833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保育研究所, 2008a).

일본은 최근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증하는 보육실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은 이들 시설에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일본 보육정책의 하나로 일부 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립시설 민영화는 위탁, 대여 및 양도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일부 민영화 보육시설은, 토지는 시가 보유,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법인의 소유하며, 민간 법인의 선

정 방법은 공모에 의하고 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미영화 실적은 민간위탁이 317건, 대여 319건, 양도가 432건으로 총 약 1,050건에 이른다(保育研究所, 2008b).

보육시설 민영화는 공립시설의 과도한 소요예산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법에 따른 다양한 보육 서비스(연장 보육·일시 보육·휴일 보육)의 실시와 시립 보육시설 입소 정원의 확대에 의한 보육시설 대기 아동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하지 않는 공립보육시설은 각각의 시설의 기능·지역성 등을 근거로 해서 장애아 보육의 실시나 시의 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거점으로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영화하는 보육시설은 민간 법인의 유연성을 살려, 일시 보육, 휴일 보육, 연장 보육이라고 한 다양한 보육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민영화 보육시설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시설도 시립 보육시설도 시의 규칙에서 규정된 동일한 금액 적용하고 있다.

나. 학교 복합화 보육시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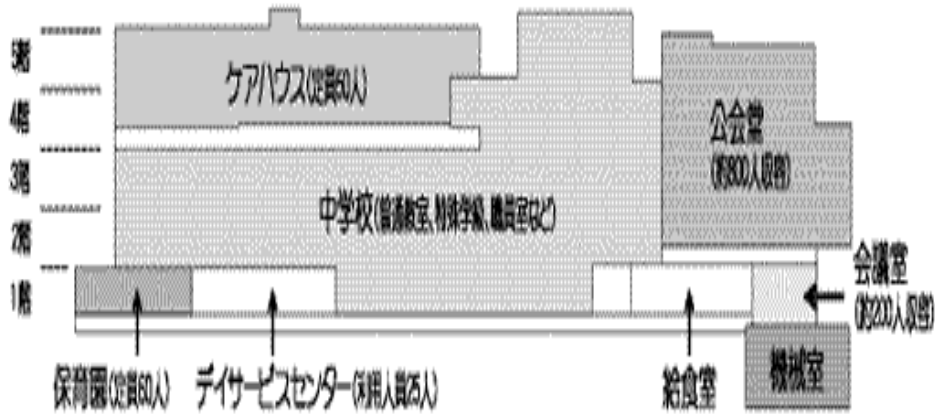
BTL사업을 통한 학교복합화 보육시설의 사례로 이치가와제7중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IV-3-1〉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사업개요

| 항 목 | 내용 | |
|-----------|---|---------------------------|
| 공공시설 관리자 | 이치가와시 | |
| 시설개요 | 소재지 | 이치가와시 스에히로 |
| | 부지면적 | 23,526㎡ |
| | 연면적 | 14,901㎡(3,280㎡케어하우스부분 포함) |
| | 시설내용 | 중학교, 급식실, 공회당, 보육원, 케어하우스 |
| 사업기간 | 약 16.5년(설계·건설 1.5년, 유지관리·운영 15년) | |
| 사업형태 | BTO방식 | |
| 사업유형 | 서비스구입형(중학교등 부분), 독립채산형(케어하우스 부분) | |
| 공사비 | 약 49억엔 (10억엔 케어하우스 부분 포함) | |
| 사업자의 사업내용 | 시설의 설계·건설, 유지관리업무, 소유권이전업무, 시설의 운영업무(케어하우스) | |

주: 케어하우스는 노인복지시설임.

이치가와시는 이치가와제7중학교의 교사 중 노후화된 일부를 개축과 동시에 조리 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급식실을 개축하여 여유면적을 활용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회당, 보육원, 케어하우스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하나의 동 건물에 복합하여 실시하였다(표 IV-3-1 참조)



[그림 IV-3-1] 이치가와제7중학교 시설 배치도

<표 IV-3-2> 일본 이치가와시와 사업자의 역할 분담

| | | | | | |
|-----------|-------------------------------------|-------|-------|---------------------------------------|----------------------|
| 사업명 | 이치가와 제7중학교, 급식실, 공회당 및 보육원 정비 PFI사업 | | | | 이치가와시 케어하우스 정비 PFI사업 |
| 대상시설 | 중학교교사 | 급식실 | 공회당 | 보육원 | 케어하우스 |
| 설계·건설 | 사업자 | | | | 사업자 |
| 건설자금 조달 | 사업자 | | | | 사업자 |
| 소유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 사업비지급 | 분할(일부 일괄지급) | | | | 분할 (일부 일괄지급) |
| 운영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이치가와시 | PFI사업의 대상 외 (시는 보육원시설을 보육원운영사업자에게 대여) | 사업자 |
| 시에 임대료 지급 | 없음 | | | | 사업자 |
| 유지관리 | 사업자 | | | | 사업자 |
| 계약 | 시설정비 계약/유지관리계약 | | | | 시설정비 계약/임대계약 |



[그림 IV-3-2] 일본 이치가와제7중학교 시설 전경

이치가와 제7중학교 사업(PFI)에 대하여 사업자는 보육원의 사업제안에 있어 치바현, 동경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의 1도 3현에 본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원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가시켜 노하우등을 살리도록 하였다.

시는 특정사업계약을 체결하는 SPC에 포함되어진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원 운영사업자와 별도 시설사용임대계약/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보육원 운영사업자는 보육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치가와 제7중학교의 보육원명은 스에히로 보육원으로 유아, 학생, 고령자와 지역 주민과의 만남·교류를 실현하는 시설로 정원 60명 규모의 치바현 인가 기준을 만족시킨 인가 보육시설이다. 이는 평생 학습 시설로서 지역에 개방하고, 고령자 및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함으로써, 고령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 다세대가 생활해 교류하는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소결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다른 BTL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하고, 정부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존의 BTL사업에 비해 총 투자비용이 소액이므로, 대형 건설업체와 제1금융권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

하여 소규모 BTL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L사업에 의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시 복합화 보육시설의 건립은 국방부에서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복합화는 영유아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유일하게 추진되었던 문화복합시설의 경우는 예산 삭감과 함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외되었다. 또한 정부 부처 사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국방부의 군관사 건립 사업의 경우도 사업 시행사들이 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추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나 종합복지타운 건설 시 등에 보육시설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가 보편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이 가장 높고 주민의 접근성에서도 입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시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기존의 BTL사업을 통한 복합화 보육시설 설치가 아닌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V.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 가능성 모색

제5장에서는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1절에서는 먼저 보육·유아교육분야 영리, 비영리기업, 공익법인 등의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의무사업장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시·군·구 공무원 조사를 통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주체인 시·군·구의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보육·유아교육분야 기업 조사 결과

제1절에서는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영리 및 비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면접 기업은 아동교육사업 기업으로 대교, 웅진씽크빅, 한솔교육·한솔희망복지재단, 몬테소리, 킨더솔레, 푸른보육경영,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를 조사하였고, 아동관련 물품제조 기업이면서 공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유한킴벌리, 공익법인으로 하나금융공익법인, LG복지재단 등 10개 기업·재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1차로는 현재 조건하에서의 보육사업 참여 가능성 및 조건,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다음 2차로는 구체적인 BTL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참여 의견이나 조건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후자에서는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사업 참여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가상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업에 제시된 사업 개요는 <표 V-1-1>과 같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BTL사업 참여 가능성, 참여시 특수목적법인(SPC) 주관 가능성을 질문하였고, BTL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의 우선순위와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각 기업별로 기업의 특성, 기존 제도 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 참여 가능성,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V-1-1〉 기업의 의견 조사 시 제시된 BTL사업 개요

※ 현재 구상하는 사업 모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BTL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민간이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후에 시·군·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기부채납한 대가로 약정한 임대료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부채납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권을 장기간 시설 설치에 투자한 민간 기업에게 부여합니다.
-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합니다.
 -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참여 법인들 중의 한 법인이 맡게 됩니다. 그 동안은 대부분 건설회사가 시행 법인을 주도해 왔으니, 운영사가 맡을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이 때 이들의 출자금은 전체 사업자금의 총 5-20% 정도이면 됩니다.
 - 나머지 80-95%는 재무출자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 투자금 상환기간은 사업의 규모를 볼 때 최소 10년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귀 기업이 운영출자자로 참여하시며 총 사업비의 2-7% 정도를 투자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국고채 이자에 +알파, 그리고 시설 운영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즉 30억 규모의 보육시설을 지을 경우 운영투자자는 최대 2억정도만 투자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무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국고채 이자 + 알파)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 건설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국고채 이자 + 알파)과 시공이윤을 받게 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된 BTL 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국공립시설이나 인건비 지원 시설과는 다른 시설로 다른 방식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정부가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보육료는 일정 수준에서 자율성이 인정되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즉, 일종의 가격규제 예외 시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 사항은 사업 참여 시 협약서에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 투자금에 대한 배당 수준(+알파의 수준), 보육료 수준, 회계처리 방식,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사의 자율성 등

가. (주)대교

1) 기업 특성

(주)대교는 가치중심 경영, 고객중심 경영, 성과중심 경영, 변화관리 강화를 경영 목표로 하는 회사로 1986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2월에 상장되었다. 대표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이고, 자본금은 2006년말 현재 521억원이며, 자산총계는 2007년말 8,824억원이다.

보육관련 사업에의 참여로는 푸른보육경영 출자를 통해 보육사업에 참여 중이다. 분당, 일산의 푸르니 어린이집은 대교가 함께 하는 것이고, 울산, 대구, 부산, 대전 등 4개 지역에 직장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현 제도하에서 보육사업 참여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첫째, 보육시설의 운영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가격에 제한선이 있고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기업의 눈으로 볼 때 보육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따라서 기업에서 꼭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초기 시설·설비비 투자의 규모가 너무 크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육시설을 짓고 설비를 구비하고 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기업에게 너무 크다. 상황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자금을 묶어 놓을 수 없는 기업으로서 어려운 일이다. 셋째,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교에게 있어 유아교육은 주 대상은 아니다. 유아가 seed 회원임을 중요시한다면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여 인식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 국가가 기업을 끌어들이면 대교뿐 아니라 한솔, 웅진 등 많은 회사를 함께 참여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교만이 특별히 보육이라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이미지 면에서 두드러지거나 좋아질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한 보육가격이 같은 경우 서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 질을 낮추어 운영하게 되는 결과가 날 수도 있어서 결코 seed 회원 관리에 유리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BTL사업에 대한 의견은 만약에 설치되면 국공립보육시설유형이므로 거기에 대기업의 이미지가 더해져 영유아 모집이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 모집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BTL사업 추진은 초기 대규모 투자 비용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건물 및 설비 설치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가 부담스러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투자비를 국가나 다른 기관과 50:50으로 분할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가 부지를 제공하거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일부를 이용하여 내부 구조와 설비만 기부채납하도록 하면 기업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참고적으로 학교 방과후 사업 BTL의 경우 투자금에 대해 3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지 제공, 투자 부담 완화와 국공립 교사 임금 80% 조건이 지켜진다면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 관계자는 두 가지 제한이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첫째, 가격제한을 없애고 운영자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교가 보육사업을 한다면 "educare" 형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므로 프리미엄급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며, 지역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보육료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는 일이므로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가격을 높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교사 임용권, 인원수 등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다양한 시간과 프로그램 운영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존 형식의 보육시설 운영에 덧붙여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예능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육정원 이외의 초등학생 등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며, 상품의 확대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얻을 창구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대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8~10%(최대 3억원)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며, 광역시 당 1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추가로 신도시 등에 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주)대교는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둘째, 재정과 회계 운영상의 자율권 보장, 셋째, 프로그램 선택의 자율권 부여, 넷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책정 권한, 다섯째, 소액의 초개 출자금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BTL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는 데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 첫째, 보육료 상한선 제도를 들었다. 정부가 보장하는 보육 시설의 개념인 "저가의, 상한선이 지켜지는"의 개념은 수익의 개념이 희미하고 투자에 대한 가치 또한 부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운영 기업이 운영 수익을 창출하거나 운영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프리미엄 또는 특화 컨셉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교사의 질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자율적 운영권의 미보장을 들었다. BTL방식의 사업은 사업 추진 이외에 기관장의 추가 지원에 따라 마케팅과 홍보, 기업의 공신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관장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담당 임원의 추가 지원 또는 소극적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 발생 시 민간 업자 클레임을 제도화 하는 방법 제안하였다.

나. 웅진씽크빅

1) 기업 특성

웅진씽크빅은 웅진그룹 중 교육·보육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본사 약 500명, 교사 포함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웅진씽크빅의 육아, 보육서비스 등 아동 관련 사업은 방과후 교실과 영어마을 운영이다. 방과후 교실은 500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영어마을은 총 2개를 운영 중이고 2009년 3월 2개를 오픈할 예정이다. 운영 중인 영어마을은 인천 서구 영아마을로 부지와 건축비를 지자체에서 제공하여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006년에 개원하였으며, 대전 동구 영아마을은 부지와 건축비를 지자체에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 5월에 개원하였다. 영어마을 사업은 원어민 숙박시설 완비하고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으로 주 4~5회에 월 최고 80,000원을 받으며, 오전에는 유치부 견학 프로그램, 성인반을 운영한다. 이용 규모는 1,3000여명이다. 운영은 웅진씽크빅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비용 등을 관리감독한다. 연 매출액은 45억으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있다. 개원예정인 영어마을은 부산시 사상구와 경기도 오산시로 웅진씽크빅이 건립하여 상환기간은 20년으로 위탁운영한다. 영어마

을 계속 추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영어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한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 검토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육시설이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육료가 제한되어 있고, 보육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한 상태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이 기업의 사업 대상으로 매력이 없다고 보았다.

사업 투자 비용을 외부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여도 결국 초기 소요 비용과 일정한 투자부분은 회사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그 투자 부분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은 영아를 포함하여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분야이므로 위험 요인도 크다고 보고 있다.

웅진씽크빅도 대교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이 보육시설 설치, 운영 투자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내용면에서 단순한 보육서비스 제공 이외에 부모들의 요구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부모가 희망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으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시, 전체 투자금의 5~6% 투자가 가능하며, 총 30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둘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셋째, 재정, 회계 운영의 자율권, 넷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책정, 다섯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순으로 응답하였다.

웅진씽크빅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의 방향성과 참여 범

인간의 정확한 역할 분담, 기업의 운영 및 수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 (주)한솔교육 · 한솔희망복지재단²⁵⁾

1) 기업 특성

(주) 한솔교육은 1982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 어린이 전문교육기업을 넘어 지구 인재를 키우는 세계적인 교육, 출판, 미디어 전문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 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출판, 미디어 부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서비스는 영유아 학습지 사업인 신기한 나라와 주니어를 위한 학습지 사업이 있고, 이외에 시설서비스로는 영재 양성 시설프로그램인 브레인스쿨과 유치원의 인성교육과 영어학원의 언어 학습프로그램을 접목시킨 브라이트 사업을 한다. 이중 시설 사업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다. 출판사업으로는 전집, 단행본, 교육잡지 사업을 하며, 미디어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문화 사업으로는 이벤트 사업인 월드스페이스와 완구 사업으로 톨스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재단으로 한솔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장애아동과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에듀케어 사업, 보육사업을 추진한다. 보육사업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사업으로 현재 5개 직장어린이집과 1개 지역사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역사회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운영 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나 운영이 기업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육사업이 현재는 보육료 상한선, 재무회계규칙과 같은 회계상의 규제, 보육과정 운영과 같은 운영적 규제 등으로 원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경영인 입장에서는 결코 매력적인 사업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한솔에서는 사업적인 그 대안으로 영재 양성 시설과 영어 관련 시설 프로

25) (주)한솔의 경우 보육사업은 한솔복지재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한솔을 대신하여 한솔희망복지재단 관계자와 면담하였음.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BTL방식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운영기준 조건 하에서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한솔은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기업인 한솔의 사업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접기보다는 한솔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솔희망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기로 결정하여 현재와 같은 보육시설 위탁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BTL방식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의 참여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의 입장에서 재단의 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BTL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투자할 수는 있으나, 한솔희망복지재단의 경우는 그 액수가 소규모이어야 어렵다고 보았다.

만약에 BTL 별도 법인에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어서, 설치 후에 보육시설 운영권을 위탁 받을 수 있다면 현재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희망복지재단 사업으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으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7% 투자가 가능하며, 총 2~3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둘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 셋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넷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다섯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는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보육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지 고민되며, 높은 보육료가 인정될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이 없을 경우 시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시설을 주민간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지자체의 관리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행정중심의 불필요한 관리 감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라. (주)몬테소리

1) 기업 특성

(주)몬테소리는 회사 설립연도가 1974년이며 매출액이 연 700~800억원 수준인 미상장기업이다. 최근의 주요 사업 내용은 가정용 몬테소리 교재교구 판매와 이를 활용한 가정방문교육 사업이다. 몬테소리 교구는 원래 기관용 교구이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우리나라의 방문교육시장을 겨냥하여 가정용 교구를 개발하여 방문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용 몬테소리 교구의 개발, 제작과 판매,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가정방문 사업은 전 세계 몬테소리 사업을 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목 몬테소리 교구 제작을 위하여 별도의 몬테소리 클래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사업의 내용은 전국에 몬테소리 지부를 두고 각 지부에 부모교육교사와 홈스쿨 교사를 두어 판매와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먼저 부모교육교사가 주로 0-3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만나서 0-3세의 중요성과 부모되기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카운슬링을 통하여 교재교구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재교구를 구입한 가정에 홈스쿨 교사가 약 1년 반 정도 주 1회 방문하여 아동에 적절하게 교육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전국에 500명 이상의 부모교육교사와 1,000여명의 홈스쿨 교사가 활동 중에 있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주)몬테소리는 부천시에 민간어린이집을 인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어린이집 개원하는데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이러한 기관 운영이 가정용 몬테소리 교구를 이용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다. 기관의 운영이 가정용 교구 판매에 사업성을 높이는 지원 기능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활동 시에 몬테소리 보육, 교육기관의 존재가 도움이 되고 또한 부모들도 프로그램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몬테소리 보육교육 기관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여 몬테소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기업의 기여 관점이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주)몬테소리가 비용을 더 지원하지는 않고 일반 어린이집과 같이 수익자 부담과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때문에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설치에 투자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BTL방식의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보육시설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운영 시에 몬테소리 방식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전략적 투자자로의 참여에는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즉, (주) 몬테소리는 사업 구조적 특성상 기관 운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BTL사업의 참여 의지는 높다. 그러나 공익성보다는 사업성 차원에서 운영 자체가 아니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가정용 몬테소리 교구 판매 및 방문교육 사업의 조직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설에서는 반드시 몬테소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권리 찾기와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국공립보육시설의 성격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으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3~5% 투자가 가능하며, 총 3~5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둘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셋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넷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 다섯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선택에서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익 창출의 불투명함과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어려움을 들었다.

마. (주)킨더솔레

1) 기업 특성

(주)킨더솔레는 1993년에 설립한 회사로 경영목표는 Good, Global, Gainful

Company이다. 사업분야는 놀이학교와 킨더뮤직 직영 및 가맹 사업을 한다. 교사를 양성하여 파견하고, 특수교육사업, 교구·교재 판매 사업을 한다. 비영리조직으로 보육경영연구소를 만들어서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BTL 보육시설 사업 참여 의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킨더솔레(주)는 BTL사업에 주체로 참여할 정도의 재정 규모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참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들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면담자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장을 역임하면서 BTL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한 경험이 있는데, 대기업(SK, LG, CJ, 담배인삼공사 등)을 상대로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했으나 이들 기업이 보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복지재단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재단들은 대부분 호의적이었으나, 경영진에서 어린이집 운영 사업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에 실제로 함께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었다고 한다.

면담자는 BTL사업과 유사한 사업 진행 방안 제안으로 ‘공익펀드’ 마련 및 ‘사회적 기업’ 설립을 제안하였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일반기업과 복지재단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사업과 사회기여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지재단들을 주주로서 참여케 하고 기업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사회적 우선권을 준다면 펀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설립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장려될 필요가 있고, 기업뿐 아니라 순복음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현금이 많은 종교단체들을 공익펀드에 동참시키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기업은 언론 홍보에 민감하므로 기업을 참여시키는 사업에는 반드시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특히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 즉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지자체가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언론에 기업홍보가 매우 용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으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

을 운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30% 투자가 가능하며, 총 10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운영 출자자로서 뿐 아니라, 재무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둘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셋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넷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 다섯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초기 투자금 조성을 꼽았다. (주) 킨더솔레에서는 BTL방식은 투자 상황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면 투자자나 기업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바. 푸른보육경영

1) 기업 특성

푸른보육경영은 조합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독특한 형태의 직장보육 설치 및 운영 기관이다.²⁶⁾ 2004년에 하나은행, 대교, IBM의 3개 기업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출자금은 100억원이다. 현재 인력은 16명의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5개소(서초2, 분당2, 일산1)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고, 위탁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25개이다. 현재 참여 사업체는 총 26개이다.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종사자 수는 모두 400여명이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앞으로의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등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접 설치, 운영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미추진 결정 이유는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150명 정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좋으며 가격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다.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운영은 되고, BTL방식으로 설치하므로 자본이 소규모이어도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까지 투자자, 시공사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26) 미국의 직장보육 경영업체인 'Bright Horizon'이 모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등 너무 많은 노력과 인력,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투자에 비하여 사후에 보육 시설 운영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육시설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사업 참여 가능성 매우 낮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 확보의 문제도 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부지를 제공한다면 다소의 참여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보았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투자 사업 참여를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해서는 첫째,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둘째,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보육시설과 기타 아동 관련 수익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여 가능성 있다. 이때, 단독건물에 보육 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상환 기간과 운영권 보장 기간을 20년 정도로 길게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약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5% 투자가 가능하며, 총 3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 둘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셋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넷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다섯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성 검토 시 공동 투자할 건설 및 재무적 출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모델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운영 관련 수익성, 보육료 수입 및 보육의 질 향상 부분의 상충에서 오는 선택의 문제, 참여자들간의 의견 조정 등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

1) 기업 특성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는 직장보육시설 위탁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모기업은 코스닥 등록 기업인 Q&S로, 이 기업은 고객관리 CRM 전문기업으로 주 고객은 SKT이다. 이외에 계열사로 유아복 기업인 (주)모아베이비가 있고 교육 컨설팅과 파파노노베이비스쿨 운영업체인 (주)모아맘을 두고 있다. 모 기업의 자본금은 총 38억 4천만원이다.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는 2005년 7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비영리기업으로 한정한다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과거 (주)모아맘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 직장보육시설 위탁 업무를 위임 받게 되었다. 보육·교육사업을 통한 사회봉사,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지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재개발, 산학협력 구조를 통한 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의 별도의 출자금은 없고 현재 인력은 12명의 사무직과 연구직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26개의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직장보육시설로부터는 월 일정한 위탁료를 받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 방식은 별개 보육시설 단위의 운영으로 공동구매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26개 보육시설 운영으로는 공동구매 등 공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공동구매를 통한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사업체는 앞으로 계속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위탁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지역사회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BTL방식의 사업 참여는 어렵다고 하였다. 모기업의 규모가 작고, 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였다. 보육료 상한선을 물론,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하고 운영상에서도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특별활동 제한 등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구조로는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 불가능 하므로 사업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는 직장보육시설과 달리 운영위탁금이 없으므로 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며,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법(SPC)을 운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총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2% 투자가 가능하며, 설치 가능 개소수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둘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셋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넷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다섯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에 적합한 보육료의 합리적 결정 가능성이 1차 관건이고 2차로 이러한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문제인데 가격과 수요의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보육료 자율성이라는 것이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창출이라는 범주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불투명하고도 보았다.

아. 유한킴벌리

1) 기업 특성

유한킴벌리는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5년 연속하여 선정되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1위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제품인 하기스, 화이트, 크리넥스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25년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7년 현재 자본금 6758억원, 매출액 9049억원 규모이다. 2007년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약 128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22억원이 가족친화, 여성 및 사회발전에 사용되었다. 아동위생용품 업체로 유아와 관련이 있고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가장 앞선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몇 년전에 대전시에서 초등학교 교실리모델링을 통하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주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현 제도하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유한킴벌리 사업관계자는 현재 보육시설과 관련된 BTL사업에 대하여 운영사로서의 참여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현재 사업 구조상 BTL사업은 건설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았다. 특히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제조업체가 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수익

발생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데 보육시설 운영은 복지사업으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제조업체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사업 부서를 개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체 등록등부터 변경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공헌 활동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에도 BTL사업 자체를 사회공헌 활동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TL사업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데 수익 발생 정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사업인데 비하여 사회공헌 활동은 수익 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BTL 이외 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업의 관점으로 접근하여도 현재의 유한 킴벌리로서는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보육시설을 설치, 인테리어 등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 문제가 적지 않고, 운영에서도 아동을 돌보는 보육이 갖는 특성 때문에 쉬운 분야가 아니라고 보았다. 보육은 전문적 보육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고, 시설 운영 기술도 있어야 한다.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 12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투자되어야 하는데, 투자가 1회성이라면 몰라도 매년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러한 투자는 현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BTL 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시행법(SPC)을 운영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한킴벌리는 보육사업기관이 아니고, 향후 보육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검토 자체가 필요 없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일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재무적 지원뿐 아니라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보육은 전문분야이므로 본 회사와는 별도로 재위탁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참여할 경우에 3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 시, 전체 투자금의 2~5% 투자가 가능하며, 총 1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의 우선순위로는 첫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둘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셋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넷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다섯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이라고 답하였다.

자. LG복지재단

1) 기업 특성

사회복지법인인 LG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이외에도 연암학원(학교법인), 상록재단(재단법인), 연암문화재단(재단법인) 등비영리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LG복지재단의 육아, 보육서비스 등 아동 관련 사업은 복지관 건립과 공부방 물품 지원사업은 각각 종료하였고, 현재 저신장 아동 성장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중고등학교 공연, 도서벽지 아동 지원, 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관 건립은 14개소를 건립한 후에 중단하였으며 공부방 물품 지원사업은 10년을 지속하고 2007년에 종료하였다. 복지관 건립 사업이 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복지관 건립 사업을 종료한 이유는 복지관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에 과주, 2008년에 구미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2009년과 2010년 설치 지역은 현재 고려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9년에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은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다. 지역은 복지재단에서 선정하지만, 구체적인 부지는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제공한다.

2)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보육시설 설치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배치되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단의 예치 출자금을 BTL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재단 자금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단이라는 특수성이 사업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었다. 재단 정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은 순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재단의 설립목적에도 반하고, 설립자의 뜻에도 상충하는 방식이다. BTL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LG복지재단이 20

년 가까이 쌓아올린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만약, 관할청의 승인으로 정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현 시스템에서 만족할 만한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을 보였다.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재단 단독 사업으로 추진될 때 보다 의미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익을 위해 집행되는 금액이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첫째, 장기간 운영권 보장, 둘째,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 셋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넷째, 프로그램 선택 자율권, 다섯째, 소액의 초기 출자금 이라고 응답하였다.

차. 하나금융공익재단

1) 기업 특성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영등포구에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20년 위탁 운영권과 정원의 40%를 하나금융그룹 근로자 자녀보육에 활용한다는 권리를 보장 받았다. 이 어린이집 설치에는 28억원이 소요되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영등포구에서 부비가 마련된다면 1개 정도 보육시설을 추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2) BTL사업 참여 가능성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BTL방식의 보육시설을 설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재단 단독사업으로 추진될 때 보다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

하. 요약 및 정리

기업 관계자의 면담 내용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보육제도 하에서는 육아서비스 관련 기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투자 의지는 약하다.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재와 같

이 보육료 상한선,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규칙 등이 존재하는 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이 적절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보육시설은 층수 제한 등 설치 관련 조건이 까다롭고 아동보육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비도 많이 든다. 또한 운영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선택에도 제약이 따른다. 재정 측면에서도 재무회계 적용 등으로 만족할만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므로 위험 부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대안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놀이공간, 영어교육시설 등을 개발하여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주)한솔이나 (주)킨더솔레가 그 예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보육시설 운영상 규제가 존재하는 한 이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BTL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대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 자율권 부여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규모 투자자로 참여하여 추후에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참여를 고려해볼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보다는 기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주)몬테소리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몬테소리 프로그램만 적용할 수 있다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러나 운영조건을 달리한다면 BTL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5개, 중간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개, 낮다는 기업이 1개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2개였다. 특히 아동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어 합리적인 참여 조건을 제안한다면 이들 기업의 BTL사업 참여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상 기업이 사업시행법인(SPC)을 운영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출자자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재정, 회계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교육 관련 기업들은 자신의 교재·교구가 보육시설에서 채택되고 활용될 수 있다면 최고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권 보장도 큰 메리트가 된다.

〈표 V-1-2〉 BTL사업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개요

| 질문 | 사업 참여 가능성 | SPC 운영 가능성 | 투자 가능 비율 (30억 규모 시) | 참여 가능 보육시설 수 |
|------------|--------------|---------------|------------------------|-----------------|
| 대교 | 매우 높음 | 가능 | 8-10% | 광역시 당 1개소 |
| 웅진씽크빅 | 비교적 높음 | 매우 가능 | 5-6% | 30 |
| 한솔 | 비교적 높음 | 어느 정도 가능 | 7% | 2-3 |
| 몬테소리 | 비교적 높음 | 어느 정도 가능 | 3-5% | 3-5 |
| 킨더솔레 | 비교적 높음 | 매우 가능 | 30% | 10 |
| 푸른보육경영 | 중간 | 어느 정도 가능 | 5% | 3 |
|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 | 중간 | 어느 정도 가능 | 2% | 미상 |
| 유한킴벌리 | 매우 낮음 | 전혀 없음 | 2-5% | 1 |
| LG복지재단 | 없음 | - | - | - |
| 하나금융공익재단 | 없음 | - | - | - |

셋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사업에의 투자 참여가 고유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위한 투자로서의 참여 가능성은 낮다.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여력이 있는 법인 규모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익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투자를 한 후에 시설이 완공되면 위탁운영권을 보장 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공익법인이 다 이러한 방식의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한솔희망복지재단의 경우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계속 추진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BTL방식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의 위상을 정립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수준, 관리감독의 범위, 시설의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장보육의무 설치 사업장의 수용 가능성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방안이면서 동시에 직장보육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보육시설 설치에 참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

영하면서 일부를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직장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경우 일반 직장보육시설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의 시설 설치 시에 고용보험기금 용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치 후에는 국공립시설로 운영된다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담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으로 보육수당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주에서 보육대상아동수가 많은 순서로 100여곳을 선별하여 사업장 직장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BTL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BTL방식에서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비 부담이 19.0%이고 8.0%는 운영비 부담으로 조사되었으며(표 IV-2-1 참조), 15%는 1~2년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2 참조).

〈표 V-2-1〉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유

단위: %(명)

| 구분 | 설치비 부담 | 운영비 부담 | 시설관리 어려움 | 수요 부족 | 벌칙 없음 | 직원들이 수당원함 | 공간 문제 | 노사협의 필요 | 본사에도 없음 | 계(수) |
|---------|--------|--------|----------|-------|-------|-----------|-------|---------|---------|------------|
| 전체 | 19.0 | 8.0 | 9.0 | 36.0 | 3.0 | 3.0 | 15.0 | 5.0 | 2.0 | 100.0(100) |
| 보육수당 지급 | 16.7 | 9.3 | 5.6 | 31.5 | 1.9 | 5.6 | 20.4 | 5.6 | 3.7 | 100.0(54) |
| 의무 미이행 | 21.7 | 6.5 | 13.0 | 41.3 | 4.3 | - | 8.7 | 4.3 | - | 100.0(4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공간문제, 장소 없음, 주변 여건, 설치 불가 건물, 위험요소 산재, 소음 때문이라는 응답은 모두 공간문제로 간주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V-2-2〉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

단위: %(명)

| 구 분 | 현재 설치 중 | 1-2년 내 설치/ 구체적 계획 | 설치하여야 하겠으나 계획 없음 | 설치할 생각 없음 | 계(수) | $\chi^2(df)$ |
|---------|---------|-------------------|------------------|-----------|------------|--------------|
| 전체 | - | 15.0 | 58.0 | 27.0 | 100.0(100) | |
| 보육수당 지급 | - | 11.1 | 53.7 | 35.2 | 100.0(54) | 4.5(2) |
| 의무 미이행 | - | 19.6 | 63.0 | 17.4 | 100.0(46)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본 조사에서는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방안이면서 동시에 직장보육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보육시설 설치에 참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를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업장 직장보육담당자를 중심으로 BTL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BTL방식으로서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 4.0%, 찬성하는 편 55.0%로 5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당지급시설과 의무 미이행 시설간의 찬성한다는 비율 차이는 거의 없다.

〈표 V-2-3〉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 반대하는 편 | 매우 반대 | 잘 모르겠음 | 계(수) |
|---------|-------|--------|--------|-------|--------|------------|
| 전체 | 4.0 | 55.0 | 25.0 | 7.0 | 9.0 | 100.0(100) |
| 보육수당 지급 | 3.7 | 55.6 | 16.7 | 9.3 | 14.8 | 100.0(54) |
| 의무 미이행 | 4.3 | 54.3 | 34.8 | 4.3 | 2.2 | 100.0(4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BTL방식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이행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응답하였고 절대 불가능함 1.0%,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63.0%로 64.0%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BTL방식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치 의무 이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 BTL사업 방식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수당 지급 사업장보다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표 V-2-4〉 BTL방식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가능성

단위: %(명)

| 구분 | 가능하다 |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절대 불가능함 | 잘 모르겠음 | 계(수) |
|---------|------|-----------------------|-------------------|------------|--------|------------|
| 전체 | - | 29.0 | 63.0 | 1.0 | 7.0 | 100.0(100) |
| 보육수당 지급 | - | 24.1 | 63.0 | - | 13.0 | 100.0(54) |
| 의무 미이행 | - | 34.8 | 63.0 | 2.2 | - | 100.0(4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BTL방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29명에 한하여 설치 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설치 후 국공립시설로 운영되므로 사업장의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지역사회 보육에 기여하므로 회사평판이 좋아진다는 점’ 31.0%로 나타났다.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점을 24.1%가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V-2-5〉 BTL방식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시 장점

단위: %(명)

| 구 분 | 설치시 비용이 많이 안 든다 | 설치 후 국공립시설로 운영되므로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다 | 지역사회 보육에 기여하므로 회사평판이 좋아진다 | 계(수) |
|---------|-----------------|---------------------------------|---------------------------|-----------|
| 전체 | 24.1 | 44.8 | 31.0 | 100.0(29) |
| 보육수당 지급 | 23.1 | 38.5 | 38.5 | 100.0(13) |
| 의무 미이행 | 25.0 | 50.0 | 25.0 | 100.0(1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BTL방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중 보육시설 위탁운영권 희망여부를 물어본 결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4%로 나타났으며,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7.2%p 높은 58.6%로 나타났다.

〈표 V-2-6〉 BTL방식 도입 시 위탁운영권 희망여부

단위: %(명)

| 구 분 | 위탁운영을 희망 | 위탁운영을 희망하지 않음 | 계(수) |
|---------|----------|---------------|-----------|
| 전체 | 41.4 | 58.6 | 100.0(29) |
| 보육수당 지급 | 61.5 | 38.5 | 100.0(13) |
| 의무 미이행 | 25.0 | 75.0 | 100.0(1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BTL방식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들 29명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육 정원 문제 등 직장 내 보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하는 팀이나 법인을 만드는 등 절차가 어렵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15.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2-7〉 BTL방식에 의한 설치의무 이행의 어려움 및 불가능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 주도하는 팀이나 법인을 만드는 등 절차가 어렵기 때문 | 보육 정원 문제 등 직장 내 보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 계(수) |
|-------------------|-------------------------------------|---|-------------------------------|-----------|
| 전체 | 15.6 | 76.6 | 7.8 | 100.0(64) |
| 보육수당 지급 의무 미이행 | 17.6 | 76.5 | 5.9 | 100.0(34) |
| | 13.3 | 76.7 | 10.0 | 100.0(3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시·군·구의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 수용성

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민간의 기여 실태

2004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민간의 기여를 통한 방안이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건물을 보육시설 용도로 무상임대해 준 경우,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군·구 공무원들도 이러한 민간의 기여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익숙한 상태라 하겠다.

1) 민간의 기여 실적

본 보고서에서는 시·군·구의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 수용성 파악의 전 단계로 먼저 최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민간이 기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결과 2007년에는 총 60개 경우가 민간이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67개의 경우가 있었다. 2008년의 경우 전국에서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사례는 12개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이 12개, 부산이 1개, 인천이 1개, 경기도 2개, 전라남도 3개, 경상북도 1개 등의 사례가 있었다(표 V-3-1 참조).

〈표 V-3-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민간이 기여한 사례

단위: 개소

| 구분 | 2007 | | | | | 2008 | | | | | 2009 | | | | |
|-------|----------------------|----------------------|----------------|----|----|----------------------|----------------------|----------------|----|----|----------------------|----------------------|----------------|----|----|
| | 보육 시설 기부 채납 | 보육 시설 무상 임대 | 부지 무상 제공 | 기타 | 계 | 보육 시설 기부 채납 | 보육 시설 무상 임대 | 부지 무상 제공 | 기타 | 계 | 보육 시설 기부 채납 | 보육 시설 무상 임대 | 부지 무상 제공 | 기타 | 계 |
| 전체 | 8 | 34 | 11 | 6 | 60 | 12 | 41 | 7 | 4 | 67 | 5 | 24 | 2 | 3 | 34 |
| 서울특별시 | 1 | 5 | 0 | 0 | 6 | 4 | 8 | 1 | 0 | 13 | 0 | 4 | 0 | 0 | 4 |
| 부산광역시 | 1 | 2 | 0 | 0 | 3 | 1 | 4 | 0 | 0 | 5 | 0 | 2 | 0 | 0 | 2 |
| 대구광역시 | 0 | 0 | 0 | 0 | 0 | 0 | 7 | 0 | 0 | 7 | 0 | 2 | 0 | 0 | 2 |
| 인천광역시 | 0 | 0 | 0 | 0 | 0 | 1 | 1 | 0 | 0 | 3 | 0 | 1 | 0 | 0 | 1 |
| 광주광역시 | 0 | 2 | 5 | 0 | 7 | 0 | 3 | 4 | 1 | 8 | 0 | 0 | 0 | 0 | 0 |
| 대전광역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울산광역시 | 0 | 1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도 | 0 | 12 | 1 | 0 | 13 | 2 | 9 | 0 | 0 | 11 | 2 | 2 | 1 | 0 | 5 |
| 강원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청북도 | 0 | 5 | 0 | 0 | 5 | 0 | 2 | 0 | 0 | 2 | 0 | 0 | 0 | 0 | 0 |
| 충청남도 | 1 | 2 | 0 | 3 | 7 | 0 | 3 | 1 | 3 | 7 | 0 | 3 | 0 | 3 | 6 |
| 전라북도 | 2 | 2 | 0 | 0 | 5 | 0 | 1 | 0 | 0 | 1 | 0 | 2 | 0 | 0 | 2 |
| 전라남도 | 3 | 1 | 3 | 2 | 9 | 3 | 0 | 1 | 0 | 4 | 1 | 1 | 1 | 0 | 3 |
| 경상북도 | 0 | 2 | 1 | 0 | 3 | 1 | 1 | 0 | 0 | 2 | 1 | 2 | 0 | 0 | 3 |
| 경상남도 | 0 | 0 | 0 | 1 | 1 | 0 | 2 | 0 | 0 | 3 | 1 | 5 | 0 | 0 | 6 |
| 제주자치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건물을 무상임대한 경우는 전국 41개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8개, 대구가 7개 등으로 높이 나타났다. 부지를 무상제공 받은 경우는 총 7개 사례가 있었다. 2009년에 민간이 기여할 것으로 예정된 사례는 총 34개 정도였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3년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간의 기여 사례

민간의 대표적인 기여 사례로 삼성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LG복지재단, 전경련이 추진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삼성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을 위하여 보육사업을

시작하였다. 1989년 천마어린이집 신축 후 서울시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꿈나무 어린이집, 미아 셋별어린이집, 홍익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6개소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²⁷⁾ 이후, 1991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사회복지재단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보육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였다. 1996년도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육시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삼성복지재단은 보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공동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08년 10월 현재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 16개소, 지역사회 보육시설 34개소이며, 지역사회 보육시설 중 3개소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삼성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재단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얻어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수원삼성어린이집, 부산 사하삼성어린이집, 전주 덕진삼성어린이집, 의왕삼성어린이집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의왕삼성어린이집과 사하삼성어린이집 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하삼성어린이집은 5년의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반면, 의왕삼성어린이집은 소재지역이 더 이상 저소득 지역이 아니므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 명칭도 변경되어 다른 위탁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나)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10개 사업체로 구성된 하나금융지주²⁸⁾ 중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IB증권, 하나캐피탈이 공동출연하여 지난 2006년에 설립한 기업재단이다. 이 중 하나은행은 공익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기업 내에 보육사업팀을 두고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푸른보육경영의 최대 주주 회원사로 참여하여 보육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이에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의 건립·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9월에 영등포구 신길4동에 보육시설을 신축, 기부채납하여 138명 정원의 국공립보육시설인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다.²⁹⁾ 특히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은 보육정보

27) 어린이집 기증 사업 이외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실시하였음.

28) 하나대투증권(구 대한투자증권), 하나IB증권, 하나생명, 하나캐피탈, 하나UBS자산운용, 하나 I&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도국제은행 등이 이에 포함됨.

29)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는 총 25억원 규모이며,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시유지임.

센터 및 영유아플라자가 한 건물 안에 있는 복합시설로서, 기부채납 후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을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위탁받은 상태이며, 보육아동 중 정원의 40%를 하나금융직원 자녀에게 할당하고 60%는 지역주민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04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원아수의 정원은 138명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며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순위(사업자 측 40% 정원 배정)로 배정하고 있다.

<표 V-3-2>는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의 사업개요이다.

<표 V-3-2>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의 사업개요

| 항 목 | | | 비 고 |
|-------|-------|----------------|----------------|
| 규모 | 부지면적 | 765㎡ | 지자체 부지 제공 |
| | 연면적 | 1,040㎡ | 지하1층, 지상3층 |
| | 원아수 | 138명 | 법인 40%, 지역 60% |
| 공사비 | | 28억원 | |
| 운영비 | 인건비 | 447,776,174원/년 | |
| | 보육료 | 220,430,000원/년 | |
| | 운영제경비 | 86,225,600원/년 | |
| 수익자부담 | | | |
| 재단전입금 | | 약 1억원/년 | |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립(직장 포함)보육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보육료와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일반 국공립보육시설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전입금을 일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LG복지재단

LG복지재단은 LG의 5개 공익법인 중 하나로서, 모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³⁰⁾ LG복지재단은 1991년 설립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지속하여 왔다. 이 사업의 경우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매해 1개소의 복지관을 건축하여 기증하여 왔는데³¹⁾, 2006년 광구광역시에 건립한 복지관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부터 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전환하였다.

LG복지재단이 건립한 첫 번째 보육시설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택지지구 공원부지(1653m²)에 건립된 '큰나무 미래·희망 어린이집'이다. 총 건축 비용 23억6000만원 중 15억원을 LG복지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가 부담했다.³²⁾ 이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858m²(260평), 140인 규모의 '큰나무미래어린이집'과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한 399m²(121평), 41인 규모의 '큰나무희망어린이집'의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아동용 보육시설은 운동치료실,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경북 구미시에 두 번째 보육시설 건립을 시작하였다. 이 시설은 구미시 구포동 국가산업4단지의 1026m²(310평) 부지에 110인 규모의 2층 건물과 야외 놀이 공간 등으로 건립되며, 2009년 3월 완공 예정이다.

LG복지재단은 보육시설 기부채납 시, 설계, 시공사 선정 및 사후관리와 같이 건물 기증 시 요구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기업재단과는 다르게 기부채납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위탁받지 않고 있다.

LG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요청에 의해 보육시설을 건립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후보 부지를 실사하며, 확정 후 시설 설계 및 시공의 과정 통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사후평가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현재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 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5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380여개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자계 기업 15개사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전경련은 경제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민간경제계의 의견개선과 구현, 대외교

30) LG복지재단 이외에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연암학원, LG상남언론재단이 있음.

31) 이 외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지원, 저소득층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필요물품 지원,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2)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시유지임. 이에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류를 통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 사회 각계와의 유대 강화와 건전한 경제사회 풍토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이를 위해 전경련은 국내외의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외국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³³⁾

전경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32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50곳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유아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계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자원은 전경련이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할당받은 돈이다.

전경련은 전문가 자문과 시·군·구 수요조사를 통하여 첫 사업 대상 지역을 안산시, 오산시, 서귀포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경제계와 안산시를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위해 시설 건립 예산을 분담하고 설계 등 모든 건립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경련은 2010년에 10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 설치되는 3개 지역 외에 7개 시설 설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경련의 이번 사업에는 현재 삼성과 현대기아차그룹,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두산, 대림산업, 효성, 동양, 삼양, 동아제약, 대한해운, 유한양행, 대성산업 등 2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1)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다음은 시설 설치 주체인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앞서서 서술한 민간의 단순한 기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본 조사에서는 공무원에게 BTL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인지도를 높

33)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www.fki.or.kr)를 참조함.

인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229개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 중 39%인 90명이 찬성 의사를 보인 반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공무원은 43%인 99명으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하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0명이나 되었다. 지역별도 보면 경기도가 50.0%로 찬성 의사가 높았고, 서울과 대구, 경상남도 등이 찬성비율이 높는데 반해 부산이나 인천, 울산,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도시보다는 군지역에서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3 참조).

〈표 V-3-3〉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민자도입에 대한 기본 입장 | | | |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의향 | | | | |
|-------|----------------|----------|--------|-----|-------------------|--------|--------|--------|-----|
| | 원칙적으로 찬성 | 바람직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 계 | 적극 설치 | 긍정적 검토 | 설치 어려움 | 필요성 없음 | 계 |
| 전체 | 90 | 99 | 40 | 229 | 4 | 104 | 48 | 69 | 225 |
| 시·도 | | | | | | | | | |
| 서울특별시 | 11 | 10 | 4 | 25 | 2 ¹⁾ | 12 | 6 | 5 | 25 |
| 부산광역시 | 6 | 9 | 1 | 16 | 0 | 8 | 2 | 6 | 16 |
| 대구광역시 | 4 | 3 | 1 | 8 | 0 | 1 | 3 | 4 | 8 |
| 인천광역시 | 3 | 5 | 1 | 9 | 0 | 7 | 1 | 1 | 9 |
| 광주광역시 | 3 | 2 | 0 | 5 | 0 | 1 | 2 | 1 | 4 |
| 대전광역시 | 2 | 2 | 1 | 5 | 0 | 3 | 1 | 1 | 5 |
| 울산광역시 | 1 | 4 | 0 | 5 | 0 | 2 | 1 | 2 | 5 |
| 경기도 | 16 | 11 | 5 | 32 | 2 ²⁾ | 24 | 4 | 2 | 32 |
| 강원도 | 6 | 6 | 4 | 16 | 0 | 8 | 1 | 7 | 16 |
| 충청북도 | 5 | 5 | 2 | 12 | 0 | 5 | 2 | 5 | 12 |
| 충청남도 | 4 | 8 | 4 | 16 | 0 | 4 | 6 | 5 | 15 |
| 전라북도 | 6 | 6 | 2 | 14 | 0 | 5 | 2 | 7 | 14 |
| 전라남도 | 8 | 10 | 4 | 22 | 0 | 5 | 8 | 7 | 20 |
| 경상북도 | 8 | 10 | 5 | 23 | 0 | 11 | 6 | 6 | 23 |
| 경상남도 | 7 | 7 | 6 | 20 | 0 | 8 | 3 | 9 | 20 |
| 제주자치도 | 0 | 1 | 0 | 1 | 0 | 0 | 0 | 1 | 1 |
| 행정구역 | | | | | | | | | |
| 시 | 34 | 32 | 10 | 76 | 2 | 39 | 14 | 19 | 74 |
| 군 | 26 | 35 | 22 | 83 | 0 | 33 | 18 | 31 | 82 |
| 구 | 30 | 31 | 8 | 69 | 2 | 32 | 16 | 18 | 68 |
| 도 | 0 | 1 | 0 | 1 | 0 | 0 | 0 | 1 | 1 |

주: 1)은 서울시 구로구, 관악구이며, 2)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다음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은 총 4곳이었다. 서울이 구로구와 관악구 두 곳으로 조사되었고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각각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응답한 곳은 총 104개 시·군·구로 전체 225개 지역 지방 공무원 중 48%인 108개 지역 공무원이 BTL방식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설치가 어렵다고 보는 곳은 48지역,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곳은 69개 지역이었다. <표 V-3-4>는 BTL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경우와 필요없다는 경우에 그 이유를 나타낸다.

<표 V-3-4> BTL방식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불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어려운 이유 | | | | | 불필요한 이유 | | | | |
|-------|--------|----------|-----------|----|----|---------------|--------|-----------|----|----|
| | 상환금 부담 | 민간 시설 반발 | 운영권 부여 문제 | 기타 | 전체 | 다른 방법으로 확충 가능 | 확충 불필요 | 비용 부담은 동일 | 기타 | 계 |
| 전체 | 8 | 16 | 14 | 6 | 44 | 3 | 28 | 28 | 7 | 66 |
| 시·도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1 | 1 | 4 | 0 | 6 | 0 | 1 | 3 | 1 | 5 |
| 부산광역시 | 0 | 0 | 2 | 0 | 2 | 1 | 3 | 2 | 0 | 6 |
| 대구광역시 | 2 | 1 | 0 | 0 | 3 | 0 | 1 | 2 | 1 | 4 |
| 인천광역시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 광주광역시 | 1 | 0 | 0 | 1 | 2 | 0 | 0 | 1 | 0 | 1 |
| 대전광역시 | 0 | 1 | 0 | 0 | 1 | 0 | 1 | 0 | 0 | 1 |
| 울산광역시 | 1 | 0 | 0 | 0 | 1 | 0 | 1 | 1 | 0 | 2 |
| 경기도 | 0 | 2 | 1 | 1 | 4 | 0 | 0 | 2 | 0 | 2 |
| 강원도 | 1 | 0 | 0 | 0 | 1 | 0 | 4 | 3 | 0 | 7 |
| 충청북도 | 1 | 1 | 0 | 0 | 2 | 0 | 1 | 3 | 0 | 4 |
| 충청남도 | 0 | 2 | 3 | 1 | 6 | 1 | 2 | 1 | 0 | 4 |
| 전라북도 | 1 | 1 | 0 | 0 | 2 | 0 | 3 | 2 | 2 | 7 |
| 전라남도 | 0 | 4 | 1 | 2 | 7 | 0 | 4 | 3 | 0 | 7 |
| 경상북도 | 0 | 1 | 3 | 0 | 4 | 0 | 4 | 0 | 1 | 5 |
| 경상남도 | 0 | 2 | 0 | 1 | 3 | 1 | 3 | 4 | 1 | 9 |
| 제주자치도 | - | - | - | - | - | 0 | 0 | 0 | 1 | 1 |
| 행정구역 | | | | | | | | | | |
| 시 | 1 | 6 | 3 | 2 | 12 | 1 | 6 | 11 | 0 | 18 |
| 군 | 2 | 7 | 5 | 3 | 17 | 2 | 15 | 8 | 4 | 29 |
| 구 | 5 | 3 | 6 | 1 | 15 | 0 | 7 | 9 | 2 | 18 |
| 도 | - | - | - | - | - | 0 | 0 | 0 | 1 | 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먼저 어려운 이유에 대해 44명 중 1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지역 민간 시설의 반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장기간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14명이었고, 민간투자 상환금도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8명이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운영권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간 부여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었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특히 지역 민간시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BTL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시·군·구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군·구 비용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이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8명으로 조사되었다. 시·구 지역에서는 시·구의 비용부담이 마찬가지로이므로 민간 투자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군단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부지 제공 가능성

BTL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부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27개의 시·군·구에서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표 V-3-5〉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의사별 부지 제공 의향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체 | 27 | 196 | 6 | 229 |
| 시 | 10 | 66 | 0 | 76 |
| 군 | 11 | 68 | 4 | 83 |
| 구 | 6 | 61 | 2 | 69 |
| 도 | 0 | 1 | 0 | 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구체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부지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V-3-6>에 제시하였다.

〈표 V-3-6〉 부지 제공이 가능한 지역

| 시·도 | 가능하다는 지역 수 | 가능 지역 |
|-------|------------|---|
| 서울특별시 | 3 | 강북구 미아동, 노원구 근린공원, 은평구 갈현동 |
| 대구광역시 | 1 | 달성군 |
| 대전광역시 | 1 | 중구 |
| 울산광역시 | 2 | 동구 동부동, 울주군 |
| 경기도 | 5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성시 봉담지역, 안성시, 김포시, 과천시 |
| 강원도 | 1 | 철원군 근남면 |
| 충청북도 | 2 | 제천시, 보은군 보은읍 |
| 충청남도 | 1 | 태안군 근흥면 |
| 전라북도 | 3 | 군산시, 고창군 고창읍, 부안군 주산면 |
| 전라남도 | 4 | 순천군 신대개발지구, 완도 노아읍, 진도 군내면, 신안군 |
| 경상북도 | 1 | 울릉군 |
| 경상남도 | 3 | 창원시 팔용동, 양산시 북정동, 웅상지역, 합천군 |
| 계 | 27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3) 위탁 운영권 관련 의견

가) 장기 위탁운영

다음은 BTL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에게 보육시설 장기 위탁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V-3-7>을 보면, 전체 공무원 응답자의 42.7%인 98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57.2%인 131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지역이 다수이었다. 그러나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서는 장기 위탁 운영권 보장에 반대 보다는 찬성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조금은 다른 특성을 보였다. 매우 찬성한다는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3개 지역이고 충남과 전라남북도가 각각 1명이었다.

〈표 V-3-7〉 민간투자자의 장기 위탁 운영권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 반대하는 편 | 절대 반대 | 계 |
|-------|-------|--------|--------|-------|-----|
| 전체 | 10 | 88 | 111 | 20 | 229 |
| 시·도 | | | | | |
| 서울특별시 | 3 | 9 | 11 | 2 | 25 |
| 부산광역시 | 1 | 5 | 9 | 1 | 16 |
| 대구광역시 | 0 | 4 | 3 | 1 | 8 |
| 인천광역시 | 0 | 6 | 2 | 1 | 9 |
| 광주광역시 | 0 | 2 | 3 | 0 | 5 |
| 대전광역시 | 0 | 1 | 4 | 0 | 5 |
| 울산광역시 | 0 | 3 | 2 | 0 | 5 |
| 경기도 | 3 | 11 | 15 | 3 | 32 |
| 강원도 | 0 | 10 | 5 | 1 | 16 |
| 충청북도 | 0 | 3 | 9 | 0 | 12 |
| 충청남도 | 1 | 4 | 8 | 3 | 16 |
| 전라북도 | 1 | 7 | 5 | 1 | 14 |
| 전라남도 | 1 | 10 | 8 | 3 | 22 |
| 경상북도 | 0 | 6 | 16 | 1 | 23 |
| 경상남도 | 0 | 7 | 10 | 3 | 20 |
| 제주자치도 | 0 | 0 | 1 | 0 | 1 |
| 행정구역 | | | | | |
| 시 | 3 | 25 | 41 | 7 | 76 |
| 군 | 3 | 36 | 36 | 8 | 83 |
| 구 | 4 | 27 | 33 | 5 | 69 |
| 도 | 0 | 0 | 1 | 0 | 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표 V-3-8〉 민간지분 활용 의견별 위탁운영권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 구분 | 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 반대하는 편 | 절대 반대 | 계 |
|----------------------------------|-------|--------|--------|-------|-----|
| 전체 | 10 | 88 | 111 | 20 | 229 |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민간 자본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8 | 44 | 34 | 4 | 90 |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민간자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 1 | 25 | 60 | 13 | 99 |
| 잘 모르겠다 | 1 | 19 | 17 | 3 | 4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BTL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

자를 대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6개 시·도별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시·군·구별로 살펴봐도 이와 같은 응답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3-9 참조).

〈표 V-3-9〉 위탁운영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다른 국공립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근본 취지에 어긋남 | 기타 | 계 |
|-------|-----------------------|--------------------------|----|-----|
| 전체 | 22 | 97 | 12 | 131 |
| 지역 | | | | |
| 서울특별시 | 0 | 11 | 2 | 13 |
| 부산광역시 | 2 | 5 | 3 | 10 |
| 대구광역시 | 0 | 3 | 1 | 4 |
| 인천광역시 | 0 | 3 | 0 | 3 |
| 광주광역시 | 0 | 3 | 0 | 3 |
| 대전광역시 | 2 | 1 | 1 | 4 |
| 울산광역시 | 0 | 2 | 0 | 2 |
| 경기도 | 1 | 15 | 2 | 18 |
| 강원도 | 1 | 5 | 0 | 6 |
| 충청북도 | 3 | 5 | 1 | 9 |
| 충청남도 | 1 | 8 | 2 | 11 |
| 전라북도 | 2 | 4 | 0 | 6 |
| 전라남도 | 3 | 8 | 0 | 11 |
| 경상북도 | 4 | 13 | 0 | 17 |
| 경상남도 | 2 | 11 | 0 | 13 |
| 제주자치도 | 1 | 0 | 0 | 1 |
| 행정구역 | | | | |
| 시 | 6 | 38 | 4 | 48 |
| 군 | 11 | 32 | 1 | 44 |
| 구 | 4 | 27 | 7 | 38 |
| 자치도 | 1 | 0 | 0 | 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나) 위탁운영 상 자율권 부여

본 연구에서는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민간 자본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위탁운영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위탁운영상 자율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금 상환기간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소 10년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의 일정 기간 동안 운영 방식은 기존의 국공립시설이나 인건비 지원 시설과는 다른 운영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정부가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보육료는 일정 수준에서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투자금에 대한 장기투자 프리미엄(a)의 수준, 출자금 상환기간, 보육료 수준, 회계처리 방식,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 등의 구체적 사항은 사업 참여 시 협약서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상 자율권을 인정하는 원칙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42개 시·군·구에서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3-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지역이 5개 지역 공무원이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지역이 21개 지역 공무원으로, 모두 26개 지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표 V-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극 동의한다는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태안군, 전라남도 화순군, 완도군이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부산시 동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등이다.

<표 V-3-10> BTL방식에서 운영상 자율권에 관한 원칙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 적극 동의 | 어느 정도 동의 | 동의하기 어려움 | 절대로 동의 못함 | 전체 |
|----|-------|----------|----------|-----------|----|
| 전체 | 5 | 21 | 14 | 2 | 42 |
| 시 | 0 | 6 | 7 | 0 | 13 |
| 군 | 4 | 6 | 4 | 2 | 16 |
| 구 | 1 | 9 | 3 | 0 | 1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표 V-3-11〉 BTL 보육시설 운영자율권 동의한 지역

| 시·도 | 적극 동의 | 어느 정도 동의 |
|-------|----------|---------------------|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강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
| 부산광역시 | | 동구 |
| 대구광역시 | | 북구 |
| 인천광역시 | | 남동구 |
| 광주광역시 | | 남구, 광산구 |
| 울산광역시 | | 남구 |
| 경기도 | |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연천군 |
| 강원도 | 정선군 |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
| 충청북도 | 태안군 | 보은군 |
| 전라남도 | 화순군, 완도군 | 장흥군, 무안군 |
| 경상북도 | | 경주시 |
| 경상남도 | | 거창군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이들 기본적으로 운영의 자율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구체적 조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된 조건은 인건비 미지원 및 별도의 보육료 체계 적용, 특정프로그램 실시, 재무회계규칙의 예외 적용, 평가인증 유예, 교사대 아동수 예외 적용이다. 이들 조건은 사실 현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 사항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로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조사결과 24개 시·군·구가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항목별로 8~17개 지역의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전반적으로 특정프로그램 실시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4개 지역, 어느 정도 찬성 13개 지역으로 가장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별도의 보육료 체계를 적용한다는 데는 적극 찬성 3지역, 어느 정도 찬성이 11지역이다. 재무회계와 평가인증 유예에 대해서는 각각 2개 지역이 적극 찬성하고 6개 및 8개 지역이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사대 아동수 예외 적용에는 적극 찬성자는 없고 9개 지역이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표 V-3-12 참조).

〈표 V-3-12〉 운영 자율권에 동의하는 경우, 각 조건별 의견

단위: 명

| 구분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반대 | 절대 반대 | 잘 모름 | 계 |
|------------------------|-------|----------|----|-------|------|----|
| 인건비 미지원, 별도의 보육료 체계 적용 | 3 | 11 | 8 | 2 | 0 | 24 |
| 특정프로그램 실시 | 4 | 13 | 6 | 0 | 1 | 24 |
| 재무회계규칙의 예외 적용 | 2 | 6 | 14 | 2 | 0 | 24 |
| 평가인증 유예 | 2 | 8 | 11 | 2 | 1 | 24 |
| 교사대 아동수 예외 적용 | 0 | 9 | 11 | 4 | 0 | 2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표 V-3-13〉 구체적 자율성 조건별 동의하는 지역

| 시·도 | 인건비 미지원, 별도의 보육료 체계 적용 | | 특정 프로그램 | | 재무회계규칙 예외적용 | | 평가인증유예 | | 교사대 아동비율 유예 | |
|-------|------------------------|-------------|---------|-------------|-------------|----------|--------|--------------------|-------------|----------------------|
|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적극 찬성 | 어느 정도 찬성 |
| 서울특별시 | | 강북구 은평구 | | 도봉구 | 은평구 | 도봉구 | 도봉구 | 강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 | 강북구 |
| 부산광역시 | | 동구 | 동구 | | | 동구 | | | | |
| 대구광역시 | | 북구 | | 북구 | | | | | | 북구 |
| 인천광역시 | | | | 남동구 | | | | 남동구 | | |
| 광주광역시 | | 광산구 | | 남구 광산구 | | | | | | 광산구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경기도 | 의왕시 | 이천시 의정부시 | | 이천시 의정부시 | | 의왕시 | | 의왕시 연천군 | | 의왕시, 의정부시, 연천군 |
| 강원도 | | 평창군 | 정선군 | 평창군 | | | 정선군 | | | |
| 충청북도 | | | 보은군 | | | | | | | |
| 충청남도 | 태안군 | | | | | | | | | |
| 전라남도 | 화순군 | 장흥군 무안군 | 화순군 | 무안군 완도군 | 화순군 | 무안군 | | 무안군 | | 장흥군, 무안군 |
| 경상북도 | | | | 경주시 | | 경주시 | | | | |
| 경상남도 | | 거창군 | | 거창군 | | 거창군 | | 거창군 | | 거창군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표 V-3-13>은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지역 명단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가 두 가지 항목 이상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부산시 동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연천군,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전라남도 화순군, 무안군, 장흥군, 완도군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거창군이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4) 보육시설 이용권 관련 의견

다음은 BTL방식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의 정원 중 일부를 사업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는 현재 영등포구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위탁운영체가 시설의 일부를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사결과, <표 V-3-14>를 보면, 매우 찬성 18명, 찬성하는 편 1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4.8%가 이 방안에 찬성하였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이 나타났고, 시·군·구별로 보면 구지역의 찬성비율이 시·군단위의 비율보다 낮았으나, 반대의견보다는 높았다.

<표 V-3-14> 정원 일부를 근로자 자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 반대하는 편 | 절대 반대 | 계 |
|-------|-------|--------|--------|-------|-----|
| 전체 | 18 | 129 | 69 | 11 | 227 |
| 시·도 | | | | | |
| 서울특별시 | 4 | 10 | 9 | 2 | 25 |
| 부산광역시 | 0 | 9 | 6 | 1 | 16 |
| 대구광역시 | 0 | 6 | 1 | 1 | 8 |
| 인천광역시 | 0 | 6 | 3 | 0 | 9 |
| 광주광역시 | 0 | 1 | 4 | 0 | 5 |
| 대전광역시 | 0 | 3 | 2 | 0 | 5 |
| 울산광역시 | 0 | 4 | 1 | 0 | 5 |
| 경기도 | 4 | 19 | 7 | 1 | 31 |
| 강원도 | 3 | 8 | 5 | 0 | 16 |
| 충청북도 | 0 | 8 | 3 | 1 | 12 |
| 충청남도 | 2 | 8 | 4 | 1 | 15 |
| 전라북도 | 0 | 8 | 6 | 0 | 14 |
| 전라남도 | 3 | 14 | 4 | 1 | 22 |
| 경상북도 | 1 | 11 | 10 | 1 | 23 |

(표 계속)

| 구분 | 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 반대하는 편 | 절대 반대 | 계 |
|-------|-------|--------|--------|-------|----|
| 경상남도 | 1 | 13 | 4 | 2 | 20 |
| 제주자치도 | 0 | 1 | 0 | 0 | 1 |
| 행정구역 | | | | | |
| 시 | 8 | 43 | 21 | 3 | 75 |
| 군 | 6 | 49 | 22 | 5 | 82 |
| 구 | 4 | 36 | 26 | 3 | 69 |
| 도 | 0 | 1 | 0 | 0 | 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표 V-3-15〉는 BTL사업에 참여한 기업 근로자의 자녀에게 해당 보육시설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79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약 40%는 지역사회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였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군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언급한 수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표 V-3-15〉 근로자 자녀 이용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기업에 너무 많은 특권 부여 | 지역사회 아동과 형평성 문제 | 국공립보육시설 근본취지에 어긋남 | 기타 | 계 |
|-------|--------------------|--------------------|----------------------|----|----|
| 전체 | 6 | 31 | 40 | 2 | 79 |
| 시·도 | | | | | |
| 서울특별시 | 1 | 5 | 5 | 0 | 11 |
| 부산광역시 | 0 | 4 | 2 | 1 | 7 |
| 대구광역시 | 0 | 0 | 2 | 0 | 2 |
| 인천광역시 | 0 | 1 | 2 | 0 | 3 |
| 광주광역시 | 0 | 2 | 2 | 0 | 4 |
| 대전광역시 | 0 | 1 | 1 | 0 | 2 |
| 울산광역시 | 0 | 0 | 1 | 0 | 1 |
| 경기도 | 0 | 1 | 7 | 0 | 8 |
| 강원도 | 0 | 2 | 3 | 0 | 5 |
| 충청북도 | 1 | 2 | 1 | 0 | 4 |
| 충청남도 | 1 | 2 | 1 | 0 | 4 |
| 전라북도 | 1 | 2 | 2 | 1 | 6 |
| 전라남도 | 0 | 2 | 3 | 0 | 5 |
| 경상북도 | 1 | 6 | 4 | 0 | 11 |
| 경상남도 | 1 | 1 | 4 | 0 | 6 |

(표 계속)

| 구분 | 기업에 너무 많은 특권 부여 | 지역사회 아동과 형평성 문제 | 국공립보육시설 근본취지에 어긋남 | 기타 | 계 |
|------|-----------------|-----------------|-------------------|----|----|
| 행정구역 | | | | | |
| 시 | 4 | 5 | 15 | 0 | 24 |
| 군 | 1 | 14 | 10 | 1 | 26 |
| 구 | 1 | 12 | 15 | 1 | 2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군·구 조사」 결과임.

4. 소결

아동교육 관련 기업, 공익법인 등 기업과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은 현재 보육제도가 규제 하에서는 육아서비스 관련 기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투자 의지는 약하다. 그러나 보육료, 프로그램 등 운영조건을 현재와 달리한다면 아동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대교, 웅진씽크빅, 한솔, 몬테소리, 킨더솔레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상 기업이 사업시행법인(SPC)을 운영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BTL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이들이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유형, 무형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안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위한 투자로서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공익성을 바탕으로 소규모로 투자하여 시설이 완공 시 위탁운영권을 보장 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일부를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응답한 사업장은 없었고, 29%가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 위탁운영권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41.4%이었다. BTL사업과 직장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시·군·구가 52개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출자금 상환기간, 보육료 수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의 새로

운 조건을 제시하여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지역이 응답한 42개 중 5개,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지역이 21개 지역으로 나타나, 모두 26개 지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운영의 자율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건비 미지원 및 별도의 보육료 체계 적용, 특정프로그램 실시, 재무회계규칙의 예외 적용, 평가인증 유예, 교사대 아동수 예외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식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8-17개 지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BTL방식으로 보육시설 설치 후 일부를 직장보육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4.8%인 147개 지역에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즉,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육 관련 기업들은 운영조건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고, 시군구에서도 일부에서 수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VI.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앞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였으며, BTL방식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 구조 및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시설 설치 미활성화 이유를 파악하였고, 아동 교육서비스 관련 기업과 시·군·구의 BTL 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관점에서 기본조건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사업모델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BTL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1.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의 기본 입장

가. BTL방식 관점에서 본 보육시설 공급정책과 문제점

참여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로 모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표준교육과정령 마련,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로 형상화되어 시행되었고,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확충 방식과 더불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의지는 다소 퇴색하였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명박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 플랜」에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수요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은 물론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저해요인이 발생

하고 있다.

1)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 비용부담의 어려움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법인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자본을 출자하고 정부에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은 기업이 자본을 출자하고 정부는 용자 혹은 설치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지원을 하더라도 도심지에서는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고밀화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크고, 비용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적절한 부지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³⁴⁾을 분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립보육시설 건립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의 부담이 있어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후 매달 운영비를 추가로 분담하여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보육시설 건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읍·면·동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설의 소규모로 인한 사업타당성 미흡

민간 보육시설은 100% 자기자본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보육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자금의 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민간 사업자가 보육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민간을 통해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렵사리 민간 자본을 통해 보육시설을 건립하였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한계가 발생한다. 대부분 보육시설의 사업규모는 10억원 미만이고 아무리 크다 하여도 20억원을 넘기 어려우며, 보육시설 운영비의

34) 서울 2:8, 기타지역 5:5임.

대부분을 보육료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료의 일정부분을 임대료나 시설건립을 위한 은행 차입금을 변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떨어지고, 최소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수익창출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이나 영세한 시설 규모를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은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 학교복합화의 문제점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보육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보육시설의 대상연령층이 만6세까지로 되어 있고, 단순 탁아를 넘어 교육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처 간의 영역 갈등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6년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추진시 보육시설과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추진하였으나 유치원단체 및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역할과 기능 및 행정적인 측면까지도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도심지와 같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움츠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설립·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비영리 보육시설인 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용률이 전체 아동 수용률의 2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보육료 대비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비영리 보육시설 중 법인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은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공립 보육시설은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BTL방식의 공립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표 VI-1-1〉 설립·운영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 | | 비영리 | | | 영리(민간) |
|----------------|-----|---------------|---------|---------------|--------|
| | | 공립 | 사회복지법인 | 직장 | |
| 비중 | 개소 | 5.7% | 4.7% | 1.0% | 88.6% |
| | 아동 | 10.8% | 10.7% | 1.4% | 77.0% |
| 시설비 (부지/건물) | 기본 | 지자체 | 법인 | 기업 | 민간 |
| | 지원 | 국고 | 재정지원 | 용자, 설치비 | |
| 운영주체 | | 직영 또는 민간위탁 | 법인직영 | 직영 또는 민간위탁 | 민간 |
| 운영비 | 기본 | 보육료(지자체 통제) | | | |
| | 결손액 | 예산지원 | 전입금+보조금 | 전입금+보조금 | 보조금 |
| 제한점 | | 비효율성 | 고비용 | 시설부족 | 영세성 |
| 서비스 수준 | | 중 | 상 | 상 | 하 |
| 서비스 대상 | | 지역 | 지역 | 직장 | 지역 |

BTL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에게 임대(lease)하고,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 받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BTL 대상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이 BTL방식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은 2005년 1월에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의 44개 유형 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은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하는 공립시설 중의 하나로 BTL사업의 우선대상이 된다.

셋째, BTL 대상시설은 일반시민에게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BTL방식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하다.

부족한 공립보육시설을 BTL방식을 적용하여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 건립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정부의 투자가 어려운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향유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립보육시설을 BTL을 통해 확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공립 보육시설과 BTL 보육시설과의 차이점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의 <표 VI-1-2>와 같다.

〈표 VI-1-2〉 공립 보육시설과 BTL 보육시설과의 차이점

| 항 목 | 공립 보육시설 | BTL 보육시설 |
|-----------------|----------------------------|-------------------------|
| 보육수요/규모 판단 | 지자체 | SPC |
| 과업지시서 속성 | Input Spec (투입인원, 시간 등) | Output Spec (서비스 성능) |
| 운영자 선정시기 | 건물 완공시 | 시작단계(착공 이전) |
| 설계시 운영자 참여구조 | 없음 | 주도적 참여 |
| 운영자 선정방식 | 가격입찰 | 성능제안서+가격+협상 |
| 운영자 책무성 | 낮음(선투자 없음) | 높음(자본출자, 선투자) |
| 평가(모니터링)주기/제재수단 | 연간/계약해지 | 분기별/페널티 부과 |
| 계약기간/안정성 | 단기간(1~3년)/재계약 | 장기간(10년 이상) |
| 설치·운영단위 | 단독 | 통합 가능 |
| 건설/운영의 경제성 | 낮음 | 높음 |
| 설계창의성/운영효율성 | 제한적 | 적극적 유인 |
| 적용규정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민간투자법 |

다. BTL방식의 보육시설 공급을 위한 충족 요건

공립보육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안은 어떻게 적기에 공급할 것인가와 사업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적기공급성(시급성)

정부가 공급을 의도하는 서비스의 적기공급성 또는 시급성은 사업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 공급의 시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보육시설은 민간의존도가 심하여 공립시설이나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특성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방식을 통해 부족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보육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방식으로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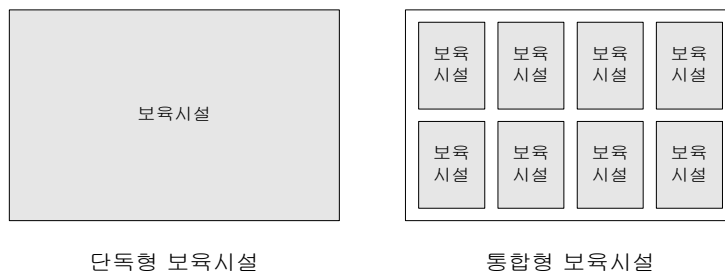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자체가 공적체계 중심으로 구축되어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균등한 서비스의 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 중 BTL 방식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인 보육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직되어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벗어나 예산 필요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정부 재정 운영방식에 탄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BTL방식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2) 사업성 확보

공립보육시설을 BTL방식으로 공급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공립보육시설을 BTL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단독형 보육시설과 통합형 보육시설의 경우로 고려할 수 있다. 단독형 보육시설은 큰 규모의 독립시설을 BTL에 적합한 사업규모로 구성하여 건립하는 것이고, 통합형 보육시설은 동일한 공립보육시설 사업을 여러 개 번들링하여 사업화하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육시설은 시설 자체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확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10억~20억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및 적격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모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I-1-1] BTL사업성 확보를 위한 방식

2.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 설정

가. 준거설정

1) 운영형태 설정

보육시설은 운영형태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형태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형태를 크게 공립, 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은 <표 VI-2-1>과 같다.

<표 VI-2-1> 시설별 지원현황

| | | 국·공립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
| 시설별 지원 | 인건비 | 원장 인건비 80% 지원(21인 이상 시설) - 영아반 교사: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교사:인건비의 30% 지원 | |
| | 취사부 | 인건비 100%지원 | |
| | 교재비 | |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개소 - 3~9인 이하 시설 : 500천원/년·개소 |
| 차량 운영비 | 대상: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지원: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 | | |
| 시설별 지원 | 영아 기본 보조금 | | 대상: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지원 : 0세반-아동 1인당 340천원, 3명까지 지원(1,020천원 상한) 1세반-아동 1인당 164천원, 5명까지 지원(820천원 상한) 2세반-아동 1인당 109천원, 7명까지 지원(763천원 상한) |
| 시설비 | 1,201,300 원/m ² ³⁵⁾ | 8년 거치 10년상환 (이자율 4.6%) | |
| 운영설비비 | 60,000 천원/개소 ³⁶⁾ | 6년 거치 7년상환 (이자율 4.6%) | |

주: 방과 후 보육료 등 정규 시간외 보육에 대한 보육료는 계산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08). 2008 보육사업안내.

35) 국공립시설 신축은 지원규모는 개소당 330m²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범위내에서 396m²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하고, 지원단가는 1,201,300원/m²(국비, 지방비 포함)으로, 국비 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임.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6)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는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 정부에서 보조하는 시설비의 단가는 1,201,300원/m²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비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시설투자비는 공사비에 시설비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하였고, 국비최대지원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보육시설의 수익구조는 크게 보육료, 보조금, 수익자부담금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익구조는 운영비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육료를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선은 운영형태에 따라 다르며, 보육시설은 운영함에 있어 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 모델설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비용을 구분하여 운영비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정하였고, 모델설정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은 중요한 요소임으로 보육서비스를 고려하여 모델을 설정하였다.

〈표 VI-2-2〉 월 보육료 상한액(2008년 기준)

단위: 원

| 연령 | 보육료 | |
|----|---------|---------|
| | 공립 | 민간 |
| 0세 | 372,000 | |
| 1세 | 327,000 | |
| 2세 | 270,000 | |
| 3세 | 185,000 | 236,000 |
| 4세 | 167,000 | 231,000 |
| 5세 | 167,000 | 231,000 |

또한 BTL사업모델의 서비스 수준설정 및 소요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여 최근 완공된 신길동 하나푸르니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표 VI-2-3>을 기본 조건으로 설정하되 공립 BTL 사업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예체능·영어 등 특별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둘째, 운영비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한 재단 전입금을 보육료에 포함한다.

셋째, 시설비 수준은 국고 보조금 수준으로 적용한다.

넷째, 하나푸르니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설 신축은 80,000천원/개소, 일반 시설 신축은 60,000천원/개소, 이진 또는 대체신축은 30,000천원/개소, 민간시설 매입은 20,000천원/개소, 공동주택은 40,000천원/개소임.

〈표 VI-2-3〉 준거사업: 하나푸르니어린이집(2008년도 개원)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 보육정원 | 138명 | 법인: 40%, 지역: 60% | |
| 교 사 수 | 15명 | 보육교사 12명, 시설장 등 3명 | |
| 연 면 적 | 1,040㎡ | 보육정보센터 제외 | |
| 보육정원당 면적 | 7.54㎡/인 | | |
| 시설비 | 2,600,000천원 | 2,500천원/㎡ | |
| 운영설비비 | 200,000천원 | | |
| 수 입 | 보육료 | 364,820천원 | 영등포구 통제가격 |
| | 경상보조금 | 215,760천원 | 인건비, 기타 |
| | 재단전입금 | 82,750천원 | 운영 결손금 재단전입 |
| | 합계 | 663,330천원 | |
| 지 출 | 인건비 | 443,235천원 | |
| | 운영관리비 | 87,925천원 | 단위면적당 비용 : 84,543원/㎡ |
| | 보육관련비 | 132,170천원 | 보육정원당 비용 : 957,753원/인 |
| | 합계 | 663,330천원 | |

주: 운영비는 2009년도 예산서에 의함.

〈표 VI-2-4〉 연령별 보육인원 및 교사수

단위: 명

| 연령구분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합계 |
|------|-----|-----|-----|-----|-----|-----|
| 정원 | 10 | 28 | 30 | 35 | 35 | 138 |
| 보육교사 | 2 | 4 | 2 | 2 | 2 | 12 |

2) 시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가 가능한 지역을 근거로 독립부지내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규모를 가진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설정을 위하여 하나푸르니어린이집의 규모를 적용하여 시설의 적정 규모를 <표 VI-2-5>와 같이 설정하였다. 교사수는 시설장 등이 포함된 수를 나타내었다.

〈표 VI-2-5〉 대상시설 규모

단위: m², 명

| 항목 | 면적 | | 수용인원 | 교사수 |
|----|------|-------|------|-----|
| | 부지면적 | 연면적 | | |
| 규모 | 841 | 1,040 | 138 | 15 |

〈표 VI-2-6〉 공립보육시설과 대상모델의 원아 수 및 보육료비교

단위: 명, 천원

| 연령구분 | 정원 | 보육료단가 | 년간보육료 | |
|------|-----|-------|---------|---------|
| | | | 공립보육시설 | 대상모델 |
| 만1세 | 10 | 327 | 39,240 | 48,484 |
| 만2세 | 28 | 270 | 90,720 | 109,802 |
| 만3세 | 30 | 185 | 66,600 | 82,290 |
| 만4세 | 35 | 167 | 70,140 | 86,664 |
| 만5세 | 35 | 167 | 70,140 | 86,664 |
| 합계 | 145 | | 336,840 | 419,590 |

〈표 VI-2-6〉은 〈표 VI-2-2〉의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모델의 규모에 적용하여 산출한 보육료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설정은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여 유사시설의 수익구조인 재단전입금을 인당비용으로 환산하여 보육료의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육료를 산정하였다.

보육료는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의 제한을 받은 비용보다 약 23.56%가 높아 연령별로 23.56%를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유사시설의 경우에서처럼 보육료 이외의 비용이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본 모델에서는 유사시설의 재단전입금을 대신하여 다소 높은 보육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보육서비스 설정

보육서비스는 양질의 교사 투입, 보육에 적합한 시설, 고급 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보육서비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서비스는 적정한 보육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투입으로 가정하여 유사시설에서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서비스는 사업초기 보육관련 사업자의 참여에 의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최

적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아수에 대한 교사배치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며, 소요되는 인건비는 <표 VI-2-7>, <표 VI-2-8>과 같다.

<표 VI-2-7> 대상시설 보육교사 배치 및 인건비

단위: 명, 원

| 연령구분 | 정원 | 교사 투입인원 | 교사봉급 (5호봉) | 정부보조 | 인건비 지출 | 총 인건비 |
|------|-----|---------|------------|------|------------|-------------|
| 만1세 | 10 | 2 | 17,728,080 | 80% | 7,091,232 | 35,456,160 |
| 만2세 | 28 | 4 | 17,728,080 | 80% | 14,182,464 | 70,912,320 |
| 만3세 | 30 | 2 | 17,728,080 | 30% | 7,091,232 | 35,456,160 |
| 만4세 | 35 | 2 | 17,728,080 | 30% | 7,091,232 | 35,456,160 |
| 만5세 | 35 | 2 | 17,728,080 | 30% | 7,091,232 | 35,456,160 |
| 합계 | 138 | 12 | | | 42,547,392 | 212,736,960 |

주: 총인건비는 정부보조금이 없는 민간보육시설 기준임.

<표 VI-2-8> 대상시설 기타 보육인건비

단위: 명, 원

| | 투입인원 | 봉급(5호봉) | 정부보조금 | 인건비지출 | 총인건비 |
|-----|------|------------|-------|------------|------------|
| 시설장 | 1 | 21,377,280 | 80% | 4,275,456 | 21,377,280 |
| 영양사 | 1 | 17,728,080 | 0% | 17,728,080 | 17,728,080 |
| 취사부 | 2 | 14,460,720 | 100% | 0 | 0 |
| 보건원 | 1 | 17,728,080 | 0% | 17,728,080 | 17,728,080 |
| 합계 | | | | 39,731,616 | 56,833,440 |

보육관련 서비스는 기본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어, 과학, 체육 등 특기 교육을 연계하여 담임교사 이외의 각 분야의 전문 강사가 투입되는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관련서비스의 설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운영 중인 4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표 VI-2-9>는 4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관련비용 및 특별 활동비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보육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량적 비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을 가정하였으며, <표 VI-2-9>에서와 같이 특별활동은 기본보육프로그램 이외의 보육관련서비스 제공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유사시설(D)의 보육프로그램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1인당 비용을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표 VI-2-9〉 보육시설 연간운영비 사례

단위: 명, 원

| | A | B | C | D |
|-----------|-------------|------------|-------------|-------------|
| 유형 | 직장 | 직장 | 직장 | 공립(민간투자) |
| 원아수 | 80 | 49 | 166 | 138 |
| 운영관리비 | 55,920,000 | 34,720,000 | 101,245,600 | 86,225,600 |
| 보육관련비 | 141,722,000 | 85,520,500 | 204,333,500 | 220,430,000 |
| 특별활동비 | 28,330,000 | 14,960,000 | 37,248,000 | 60,000,000 |
| 1인당 특별활동비 | 354,125 | 305,306 | 224,386 | 434,783 |

주: 1) 보육관련비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비용임.

2) 특별활동비는 기본 보육프로그램이외의 특기교육 등을 포함한 비용임.

4) 모델준거의 적정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준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 VI-2-10>, <표 VI-2-11>과 같이 준거를 통한 5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보육료비율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각 안의 특징을 <표 VI-2-12>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VI-2-10〉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설정

| 구분 | | 1안 | 2안 | 3안 | 4안 | 5안 |
|----------------------|--------|--------------------|--------------------|--------------------------------------|---------------------------|---------------------------|
| 기준 | 서비스 수준 | 공립 보육시설 | 공립 보육시설 | 민간개인 보육시설 | 하나푸르니 어린이집 | 하나푸르니 어린이집 |
| | 보육 비용 |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 영아 기본보조금 ¹⁾ + 시도지사 고시 보육료 |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법인전입금 |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법인전입금 |
| BTL방식 보육시설 운영 시 정부지원 | | 인건비 차등보육료 |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 인건비 차등보육료 |
| 보육료비율 ²⁾ | | 100% | 133% | 121% | 158% | 124% |

주: 1) 민간시설은 0-1세 전체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비용

2) 1안의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동일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부족분을 보육료로 산정할 경우의 비용을 의미함

〈표 VI-2-11〉 보육료 비율 산정기준

| | 1안 | 2안 | 3안 | 4안 | 5안 |
|-----------------|---------|---------|---------|---------|---------|
| 현재 총 보육비용 | 453,845 | 453,845 | 413,652 | 535,595 | 535,595 |
| 지원금(인건비 또는 보조금) | 117,005 | 4,692 | 4,692 | 4,692 | 117,005 |
| 보육료 상한선에 의한 보육료 | 336,840 | 336,840 | 408,960 | 418,590 | 418,590 |
| BTL방식 보육료 | 336,840 | 449,153 | 408,960 | 530,903 | 418,590 |
| 보육료 비율 | 100% | 133% | 121% | 158% | 124% |

〈표 VI-2-12〉 BTL방식의 보육시설 모델의 특징

| 구분 | 1안 | 2안 | 3안 | 4안 | 5안 | |
|-------------------|---------|-------------------------------------|--|--------------------------------|---|--------------------------------------|
| 지자체 | 강점 | -현행수준 유지 가능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제공 가능 | -현행수준 유지 가능 -시장원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거 | -사용자의 보육료 부담에 의한 보조금 미지출 | -고급 보육서비스 제공 요구 수요에 대응 | -고급 보육서비스 제공 요구 수요에 대응 -인건비 통제 가능 |
| | 약점 | -고급 보육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저소득 계층 소외 -인건비 통제 불가능 | -낮은 보육서비스 제공 우려 -인건비 통제 불가능 | -인건비 통제 불가능 | -인건비 통제를 위한 행정력 소요 필요 |
| 사용자(부모) | 강점 |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저소득 계층 이용 가능 | -일반 공립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유지 |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유지 | -고급 보육서비스 수혜 | -고급 보육서비스 수혜 |
| | 약점 | -서비스 수준의 한계 | -보육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상위 계층 이용 가능 | -서비스 수준의 한계 -비용대비 편익 감소 | -정부의 인건비 미보조로 인한 보육료 추가 부담 -중상위 계층 이용 가능 | -양질의 서비스 혜택에 따른 비용 추가우려 |
| 사업참여자(경영자율성 확보여부) | -미확보(하) | -확보가능(중) | -확보가능(중) | -확보가능(상) | -확보가능(중) | |

1안의 공립보육시설을 기준으로 나머지 안을 비교하여 보면 2안과 4안은 보육료 비율이 1안에 비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3안의 경우에는 보육료비율은 2안, 4안, 5안에 비해 저렴하나 인건비 통제의 어려움과 비

용대비 편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5안을 적정모델로 선정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사업모델인 5안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준공 후 일시불로 지불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임대료형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고, 시설의 운영관리비와 보육관련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업모델의 경우에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건설 완료 후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모델은 공립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연간 82,278천원으로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보육시설은 366,395천원으로 적용모델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및 적용모델의 경우는 시설투자비가 투입되지 않는 반면 민간 및 유사시설은 시설투자비가 공립보육시설 및 적용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모델의 경우는 보육료에 대한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지출비용에서 타 시설 보다 낮음으로 이에 따른 잉여 수익을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VI-2-13〉 연간 지출비용

| | 공립 | 민간 | 사업모델 |
|-------|----------|-------------|----------|
| 시설투자비 | × | 1,334,130천원 | 임대료 일부상환 |
| 금리 | × | 43,605천원 | 임대료 일부상환 |
| 인건비 | 82,278천원 | 322,754천원 | 82,278천원 |
| 연간비용 | 82,278천원 | 366,395천원 | 82,278천원 |

주: 1) 적용모델의 경우는 시설투자비의 일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2) 시설투자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3) 인건비: 5호봉 적용(유사시설 시설장 5호봉, 교사 4호봉)

4) 운영관리비는 유사규모로 가정하여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함.

〈표 VI-2-14〉 BTL 보육시설 사업모델

| 항목 | | 내용 | 산출근거 |
|--------|-------|-------------|---------------------------|
| 원아수 | | 138명 | 준거사업 |
| 연면적 | | 1,040㎡ | |
| 시설 투자비 | 공사비 | 1,249,352천원 | 국고지원단가 1,201천원/㎡ |
| | 설계비 | 60,128천원 | 건축사 설계요율 적용 |
| | 감리비 | 20,334천원 | 공사감리요율 적용 |
| | 영업준비금 | 439천원 | SPC 법인설립비 |
| | 금융부대비 | 25,661천원 | 차입금 조달비 |
| | 보험료 | 21,951천원 | 이행보증보험 및 공사보험 |
| | 운영설계비 | 200,000천원 | 준거사업 운영설비비 적용 |
| | 소계 | 1,577,865천원 | |
| 물가변동비 | | 42,328천원 |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의 물가변동비(2.98%) |
| 건설이자 | | 68,000천원 |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 |
| 총민간투자비 | | 1,688,193천원 | 총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 운영비 | 인건비 | 82,278천원 | 지자체 인건비 보조금 제외 |
| | 운영관리비 | 87,925천원 | 준거사업 |
| | 보육관련비 | 132,170천원 | |
| | 소계 | 313,010천원 | |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BTL사업의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3개의 사업을 번들링으로 하는 통합형 보육시설 모델의 사업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한다.

〈표 VI-2-15〉 통합형 모델 개요

| 항 목 | 내 용 | | 비 고 |
|-----|--------|--------|------------|
| | 단독형 | 통합형 | |
| 개 소 | 1개소 | 3개소 | 기초생활권 |
| 원아수 | 138명 | 414명 | 138명/개소당 |
| 연면적 | 1,040㎡ | 3,120㎡ | 1,040㎡/개소당 |

3. BTL방식의 보육시설 사업성 검토

가. 투자조건 검토

1) 기본가정 및 전제

본 사업은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수익률 만큼 이자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국고채금리는 2008년 연간 평균하여 적용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 조달형태, 대출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 등을 정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사업의 금융비용은 자기자본비율 5%³⁷⁾에 나머지 95% 사업비는 은행차입을 통해 전액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타인자본비율 95%에 대한 금융비용을 임대기간 10년³⁸⁾ 장기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건설이자 8.44%³⁹⁾인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운영기간동안은 시설임대료 속에 민간투자자의 시설투자비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건설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비용만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VI-3-1〉 기본가정

| 구 분 | | BTL 학교시설 | BTL 보육시설 | 비 고 |
|------------|--------|--------------------|-------------|--------------|
| 운영기간 | | 20년 | 10년 | 사업자 부담 완화 |
| 명목할인률 | | 5.50% | | 기재부 BTL 시행지침 |
| 소비자 물가상승률 | | 2.98% | | 한국은행(물가통계) |
| 5년만기 국고채금리 | | 5.37% | | 2008년 평균 |
| 건설보조금 | | 시설투자비의 60%(947백만원) | | |
| 자본 비율 | 자기자본비율 | 10% | 5%(34백만원) | 사업자 부담 완화 |
| | 타인자본비율 | 90% | 95%(652백만원) | |
| 사업 수익률 | 지표금리 | 5.37% | | 국고채 |
| | 가산율(a) | 1.2%(평균값) | 1.97%(BEP) | |
| 건설 이자 | 지표금리 | 7.04% | | 금융환경에 따라 달라짐 |
| | 가산율(a) | 1.44%(평균값) | | |
| 운영비부담 | | 지방비 | 보육료 | 경상비 일부 보조 |

37) 본 장의 다. 4) 다) 참조

38)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에 의한 10년~30년의 임대기간의 적용에 있어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10년으로 가정함.

39) 본 장의 다. 4) 라) 참조

2) 보육시설 LCC 산정

가) 건설비

본 사업의 건설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2006. 9.)”을 참조하여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1) 조사비

설계비에 조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조사비용을 산출하지 않았다.

(2) 설계비

설계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3) 공사비

공사비란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지원단가(단위면적당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본 사업은 PFI사업으로 적용함에 따라 학교시설 BTL사업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4)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근거로, 대상시설물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비상주감리를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였다.

나) 운영설비비

운영설비비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본 사업의 운영설비비 산출은 “개원예정인 공립시설에 기자재구입비 지원”에 기준하여 일반시설 신축에 해당하는 개소당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운영준비금

운영준비금이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운영개시 이전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의미한다. 본 사업의 운영준비금은 SPC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법적요율만 적용하여 운영준비금을 산출하였다.

〈표 VI-3-2〉 사업모델 개요

| 항 목 | 내 용 | | 비 고 | |
|-------|-----------|-------------|---------------------|-------|
| | 단독형 | 통합형 | | |
| 개 소 | 1개소 | 3개소 | 기초생활권 | |
| 원아수 | 138명 | 414명 | 138명/개소당 | |
| 연면적 | 1,040㎡ | 3,120㎡ | 1,040㎡/개소당 | |
| 시설투자비 | 공사비 | 1,249,352천원 | 3,748,056천원 | 단가적용* |
| | 설계비 | 60,128천원 | 180,384천원 | 요율적용 |
| | 감리비 | 20,334천원 | 61,002천원 | 요율적용 |
| 운영설비비 | 200,000천원 | 600,000천원 | 통합형은 개소당 비용으로 적용 | |

2) 운영설비비는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

라) 운영관리비

(1) 운영 제경비

보육시설의 운영비 항목으로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보육관련비로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인건비는 시설장 등의 지원인력과 보육에 관련된 교사 등의 인건비로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등을 포함하였다. 인건비는 시설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의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연봉의 비율을 제외한 비용을 적용하였으며 연봉은 “200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하였다.

운영관리비는 시설에 관련된 비용으로 청소비(청소원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수도 광열비, 소독용역비, 각종 검사비, 유지보수비 등 시설운영의 제반 경비를 포함하였다. 운영관리비는 유사시설의 비용을 인당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청소원 인원은 협회기준 등의 부재로 “초중등 학교시설 BTL사업 표준운영비 산정연구”를 참조하여 학교시설을 준용하여 전체 연면적에 대한 1일 청소면적⁴⁰⁾을 기준으로 산출

40) 여자의 경우 2,225㎡임

하였다.

보육관련비는 원아의 급식비를 포함하여 교구교재비, 특별활동 등 원아의 보육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였다.

기타제경비의 산출은 유사시설(하나푸르니어린이집)의 항목 및 비용을 준거로 적용 산정하였으며, 운영비 산정을 위한 보육시설의 정원은 총 145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운영관리비 및 보육관련비의 경우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 항목 및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VI-3-3〉 운영제경비 항목

| 항목 | 포함 내역 |
|-----------------------|--|
| 인건비 운영관리비 보육관련비 | 시설장 및 교사 연봉(퇴직충당금 및 사대보험 포함) 수도광열비, 소독용역비, 각종검사비, 유지보수비, 청소원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

(2)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란 시설대체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대수선 및 전면교체는 제외한다. 시설대체비는 운영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체비용으로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내용연수와 대체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초중등 학교시설 BTL사업 표준운영비 산정연구”를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표 VI-3-4〉 보육시설 운영비산정

(단위 : 천원)

| | | 단독형 | 통합형 | 비고 |
|------|-------|---------|---------|------------------|
| 수용인원 | | 138명 | 414명 | 138명/개소 |
| 운영비 | 인건비 | 82,278 | 246,834 | 유사시설 운영비 및 항목 적용 |
| | 운영관리비 | 87,925 | 263,775 | |
| | 보육관련비 | 132,170 | 396,510 | |

다. 타당성 분석

1) 사업타당성분석의 접근방법(NPV, IRR법)

투자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안이 미래에 창출하리라고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민간 사업참여자의 사업타당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주무관청의 민간 사업참여자 입찰 평가 시에도 총투자비의 총액과 현재가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흐름할인법에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법 및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법이 있으며, 이러한 순현재가치법 및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보육시설 BTL 사업타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법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안의 수행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적절한 할인율(WACC: 가중평균자본비용)로 할인하여 산출한 현재가치에서 투자소요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클 경우에 경제성이 있으며, 여러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는 NPV가 큰 투자안일수록 보다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NPV의 산출과정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순현재가치} = \sum_{T=1}^N \frac{FCF(t)}{(1+WACC)^t}$$

FCF (t) : t년도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 \text{순이익(NI)} + \text{비현금비용} \pm \text{업무용 운전자본투자} \\ - \text{유형자산투자} - \text{기타자산투자} + \text{이자비용}$$

t : 현금흐름예측 연도

WACC : 가중평균자본비용

n : 현금흐름 예측기간 이후 첫해년도

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법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수행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의 현재와 투자비

용인 현금유출의 현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내부수익률, IRR)을 산출하여 동일 투자위험하의 대체가능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과 비교하거나 해당투자안의 위험이 반영된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대체가능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다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평가하며,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해당 투자안의 위험이 반영된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가능한 투자안으로 평가한다. 여러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이 큰 투자안일 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text{순현재가치} = \sum_{T=1}^N \frac{FCF(t)}{(1 + IRR)^t}$$

FCF (t) : t년도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 순이익(NI) + 비현금비용 ±업무용 운전자본투자
 - 유형자산투자 - 기타자산투자 + 이자비용

t : 현금흐름예측 연도
 n : 현금흐름 예측기간 이후 첫해년도

2) 사업타당성 절차

보육시설 BTL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수행하였다.

가) 잉여현금흐름(FCF : Free Cash Flow)의 추정

보육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및 손익구조를 항목별로 개별 분석하여 각 영업활동에서 향후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각각의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산정

사업타당성의 접근방법으로 제시된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정한다.

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및 순현재가치의NPV: Net Present Value)의 산출

상기의 절차에서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을 통하여 보육시설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

기 위해 내부수익률 및 순현재가치를 산출한다.

라) 사업타당성의 검토

사업성분석절차를 거쳐 산출된 내부수익률 및 순현재가치를 통하여 보육시설사업의 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림 VI-3-1] 사업타당성 분석절차 흐름도

3)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추정

투자안의 잉여현금이란 사업참여자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순현금흐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순운전자본변동으로 인한 증분현금흐름에 이자비용의 법인세 감세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보육시설 BTL의 경우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주주의 순증감액을 잉여현금흐름으로 가정하였다. 잉여현금흐름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및 개요는 <표 VI-3-5>과 같으며, <표 VI-3-6>과 <표 VI-3-7>는 단독형과 통합형에 대한 보육시설 BTL사업의 잉여현금흐름과 운영기간 10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형태별 잉여현금흐름 상세 내역은 <표 VI-3-8> 별첨에서 상세히 보이고 있다.

<표 VI-3-5> FCF 산출 기본 가정

| 구 분 | 개 요 | | | |
|--------------|---------------------------|-------|--------------------|--------------|
| 공사착공시점 | 2009년 7월 1일 | | | |
| 공사준공시점 | 2009년 12월 1일(공사기간 6개월 가정) | | | |
| 건설보조금 | 시설투자비의 60% 지급 | | | |
| 국고채 5년물 | 2008년 1년간 평균 수익률 가정 | | | |
| 회사채 3년물(AA-) | 2008년 1년간 평균 수익률 가정 | | | |
| 가산율 | 사업수익율 | 7.34% | 국고채 5년물 5.37% | 가산율(α) 1.97% |
| | 건설이자 | 8.48% | 회사채 3년물(AA-) 7.04% | 가산율(β) 1.44% |

〈표 VI-3-6〉 단독형 FCF 현재가치

단위: 천원

| 구분 | 합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현금흐름 | 13,637 | -34,336 | 4,689 | 4,708 | 4,730 | 4,752 | 4,777 | 4,803 | 4,831 | 4,861 | 4,894 | 4,928 |
| 현재가치 | 9 | -34,336 | 4,231 | 4,028 | 3,835 | 3,652 | 3,480 | 3,316 | 3,162 | 3,016 | 2,878 | 2,747 |

〈표 VI-3-7〉 통합형 FCF 현재가치

단위: 천원

| 구분 | 합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현금흐름 | 40,152 | -101,101 | 13,805 | 13,863 | 13,926 | 13,993 | 14,065 | 14,142 | 14,225 | 14,314 | 14,409 | 14,512 |
| 현재가치 | 26 | -101,101 | 12,459 | 11,859 | 11,291 | 10,754 | 10,246 | 9,765 | 9,310 | 8,880 | 8,473 | 8,089 |

〈표 VI-3-8〉 사업형태별 잉여현금흐름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단독형 | 통합형 |
|------------|-----------|-------------|
| 영업활동현금흐름소계 | 700,364 | 2,062,166 |
| 현금유입 | 4,773,491 | 14,265,274 |
| 시설임대료 | 993,168 | 2,924,305 |
| 운영비 정부지급금 | 3,780,323 | 11,340,969 |
| 현금유출 | 4,073,127 | 12,203,108 |
| 운영비 | 3,780,323 | 11,340,969 |
| 이자비용 | 291,119 | 857,176 |
| 법인세비용 | 1,685 | 4,963 |
| 투자활동현금흐름소계 | - 686,727 | - 2,022,014 |
| 현금유입 | - | - |
| 현금유출 | 686,727 | 2,022,014 |
| 총민간투자비 | 686,727 | 2,022,014 |
| 재무활동현금흐름소계 | 34,336 | 101,101 |
| 현금유입 | 686,727 | 2,022,014 |
| 자본금 | 34,336 | 101,101 |
| 차입금 유입 | 652,391 | 1,920,913 |
| 현금유출 | 652,391 | 1,920,913 |
| 차입금 상환 | 652,391 | 1,920,913 |
| 당기증감 | 47,973 | 141,253 |
| 주주현금유출 | - 34,336 | - 101,101 |
| 주주현금유입 총계 | 13,637 | 40,152 |

총민간사업비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의 사업범위, 사업조건 및 성과요구수준서상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정한다고 가정한다. 물가변동비는 가격산정기준시점으로 산정한 총사업비 항목별 금액을 투입완료시점까지 물가상승률에 비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건설이자는 사업시설건축을 위한 차입금에서 자본화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와 가산율(β)을 적용한 것이다. <표 VI-3-9>는 단독형과 통합형에 대한 총민간투자비 산정 금액을 보이고 있다.

〈표 VI-3-9〉 사업형태별 총민간투자비

단위 : 천원

| 구분 | 단독형 | 통합형 |
|----------------|---------|-----------|
| 총민간사업비(불변금액:A) | | |
| 1. 조사비 | - | - |
| 2. 설계비 | 24,051 | 72,154 |
| 3. 공사비 | 499,741 | 1,499,222 |
| 4. 보상비 | - | - |
| 5. 부대비 | 37,877 | 77,968 |
| 6. 운영설비비 | 80,000 | 240,000 |
| 7. 영업준비금 | 179 | 526 |
| 소계 | 641,848 | 1,889,870 |
| 물가변동비(B) | 17,218 | 50,697 |
| 경상사업비(C: A+B) | 659,066 | 1,940,567 |
| 건설이자(D) | 27,661 | 81,447 |
| 총민간투자비(E: C+D) | 686,727 | 2,022,014 |

보육시설 BTL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매년 수령하는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참여자에게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VI-3-10>은 단독형과 통합형의 시설임대료에 대한 비용을 보이고 있다.

$$\text{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사업수익률}}{1 - (1 + \text{사업수익률})^{-\text{(임대기간)}}$$

〈표 VI-3-10〉 사업형태별 연간시설임대료

| 구분 | 단독형 | 통합형 |
|---------|-----------|-------------|
| 총민간투자비 | 686,727천원 | 2,022,014천원 |
| 사업수익률 | 7.34% | 7.34% |
| 임대기간 | 10년 | 10년 |
| 연간시설임대료 | 99,317천원 | 292,430천원 |

한편, 사업수익률은 가격산정기준시점의 5년 만기 국채금리와 가산율(a)을 적용한 것이다. 5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년 연평균 수익률 5.37%를 가정하였고 가산율(a)은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있는 최소적정가산율 1.97%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단독입찰의 경우 가산율 한계선은 1%이나 최근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손익분기가산율도 1.97%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학교시설 BTL과 달리 보육시설은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낮기 때문에 손익분기 가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산정

가) 자본비용의 개념

투자안의 가치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자안의 미래의 잉여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적절한 할인율은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서 각 자금조달 원천별(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비용을 자금의 구성비에 의하여 가중 평균한 비용이다.

나) 자본비용 가정

일반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가중평균자본비용 즉, 명목할인율을 5.5%로 고시하고 있다. 한편, 투자안의 평가 시 해당 참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보육시설 BTL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명목할인율이 해당기업의 가중평균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다) 목표자본구조

보육시설 BTL 사업 참여자의 자본구조는 자기자본 5%와 타인자본 95%로 가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자기자본 요구비율 10%로 보다 낮은 것으로 보육시설 BTL 사업의 활성화를 하고자 관련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라) 건설이자(타인자본비용)

건설이자(타인자본비용)는 주무관청의 일반적인 사업계획안에 따라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수준의 금리에 가산율(β)을 적용하였다. 한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의 금리는 가격결정기준일 시점의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이 원칙이나 향후 시행될 사업의 기준일을 확정할 수 없어 2008년 연간 평균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7.04%를 적용하였다. 또한, 가산율(β)은 과거 2006년~2008년까지 BTL 사업참여자 62업체의 평균 가산율(β) 1.44%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8.48%(7.04%+1.44%)이다.

5)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

IRR은 미래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인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투자안의 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서 특정한 투자안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투자비용의 향후 벌어들이는 투자수익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안의 IRR은 투자안의 FCF를 할인하여 NPV를 영(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계산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표 VI-3-11>과 <표 VI-3-12>은 단독형과 통합형에 대한 NPV와 IRR값을 보이고 있다.

<표 VI-3-11> 단독형 분석 요약

| WACC | IRR | NPV |
|------|-------|-----|
| 5.5% | 6.53% | 9천원 |

<표 VI-3-12> 통합형 분석 요약

| WACC | IRR | NPV |
|------|-------|------|
| 5.5% | 6.53% | 26천원 |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IRR과 자본비용(WACC)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IRR은 특정 투자안을 수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고, WACC는 그 투자에 소요되는 총자본의 비용이므로, 어떤 투자안의 IRR이 WACC보다 크다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시설 BTL의 경우 IRR이 WACC보다 약 0.53%가 높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순현재가치(NPV)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투자안의 NPV가 영(0)보다 크다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투자안의 경우 NPV가 9(26)천원으로 산출되므로 투자안을 수행할 경우 현재가치로 동 금액만큼의 이익이 예상되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론 및 한계점

상기 투자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가정치를 바탕으로 NPV와 IRR의 결과치 모두 사업타당성이 있다. 한편, 사업참여자의 수익률 결정요소 즉, 사업 참여 여부는 운영비가 아닌 시설임대료의 가산율(α)에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영비가 금액에 무관하게 사업참여자로 결정될 경우 정부지급금으로 지급되어 수익과 비용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형과 통합형의 경우 IRR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단독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대한 NPV(통합형-단독형) 이득은 약 17천원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참여자는 단독형 보육시설보다 통합형 보육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상의 가정치는 변동이 가능한 것이며 그 변동에 따라 결과치 및 사업타당성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

7) 민감도 분석

변동요인의 주요 변수인 보육시설 수입금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 단독형과 통합형의 수익률은 동일하다. 이는 정부가 시설임대료의 지급을 통해 사업참여자의 시설투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와 무관하게 IRR이 동일한 것이다. 한편, 사업참여자 입장에서도 IRR은 사업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Factor)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업참여자는 단독형 보다 통합형의 경우 시설투자비의 절대금액이 높기 때문에 보다 큰 NPV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참여자는 동일한 IRR 하에서 보다 큰 NPV를

언기 위해 통합형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자의 가산율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수익률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표 VI-3-13>은 단독형 보육시설과 통합형 보육시설의 가산율(α)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대하여 가산율의 변화에 따른 NPV와 IRR값을 보이고 있는데, 가산율(α) 1.97% 적용시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13〉 사업형태별 가산율 민감도 요약

| 대안 | 가산율(α)- 1.92% | | 가산율(α)- 1.97% | | 가산율(α)- 2.02% | |
|-----|------------------------|--------|------------------------|-------|------------------------|-------|
| | 단독형 | 통합형 | 단독형 | 통합형 | 단독형 | 통합형 |
| NPV | -63천원 | -186천원 | 9천원 | 26천원 | 81천원 | 239천원 |
| IRR | 6.49% | 6.49% | 6.53% | 6.53% | 6.58% | 6.58% |

4. 소결

가. 사업성 검토에 따른 시사점

국내의 보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 보육시설의 소규모로 인한 VFM 창출 한계, 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쉽사리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보육시설을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여건상 정부의 투자가 쉽지 않은 보육시설을 BTL방식으로 확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BTL방식으로 확충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 부분으로 BTL방식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재정방식보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을 통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방식을 적용한 가상의 보육시설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의 내부수익률(IRR)과 순현재가치(NPV)를 조사하여 BTL방식 보육시설의 사업성을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민감도 분석결과 가산율(a)이 1.97%로 기존 학교 BTL사업 평균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협상 가능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이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쟁에 의해 확정될 사항으로 사업구조, 시기, 경쟁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셋째, 입지조건,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단독형에 비해 NPV가 높은 통합형 사업모델의 민간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금융상황 악화로 사업참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겠으나 학교 BTL 사업과 비교하여 민간자본 투자비가 과소되며, 자기자본비율이 10%에서 5%로 완화하였고, 관리운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건설보조금을 60%를 지급한다.

나. 제언: 적용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공립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국내 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인해 정부가 보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보육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보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적용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BTL방식을 적용하여 단독형과 복합형 보육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BTL방식의 공립 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몇 가지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BTL 보육시설 적용방안

첫째, 건설한 비영리 운영법인 중심의 사업구조를 적용한다. 비영리 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사업계획서 평가시 운영법인 출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입찰 등에 의해 건설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건설사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경영의 유연성을 인정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선택형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초과이익 발생시 임대료

를 차감하도록 한다. 또한 주무관청, 학부모 등에 의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 서비스 만족도에 의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셋째,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 적용한다. 개발계획 수립시 통합형 공립 BTL 보육시설을 전제로 보육시설 입지를 선정하며, 기초생활권, 거리 등을 감안 2개 이상의 보육시설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 학교시설과의 복합화

첫째,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한 기존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하고 방과후 학교의 보육프로그램과 연계 및 우선 적용한다. 이는 인천 등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

둘째, 신·개축 학교의 경우, 유치원 병설학교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보육시설 복합화를 의무화하며, 재정방식과 BTL방식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내 직장 보육수요 함께 고려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합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관계기관의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는 가장 손쉽게 부족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관련 기관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문화시설과의 복합화는 관련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제외되어 버렸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복합화 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최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복합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국방부(2008). 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BTL민간투자사업 홈페이지. URL: <http://www.mpb.go.kr/kor/section/btl/intro/main.jsp>
- 기획재정부(2008). 연도별 BTL사업 현황.
- 남광토건(2008). 내부자료.
- 모성은(2000).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제6호.
- 배득중·김성수·유평준(1995). 민자유치론-도시 및 사회공익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최혜선·유은영(2006). 유아 기본보조급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신제우(2006). 소규모시설 BTL사업 적용방안.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심포지엄 「교육시설 BTL사업의 안정화·고품질화」 발표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 유승희(2007). 한국의 BTL사업에 관한 연구: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 일본 保育研究所(2008a), 保育情報, No. 383. 2008. 10.
- 일본 保育研究所(2008b), 保育情報, No. 381. 2008. 8.
- UK National Audit Office(2003). PFI: Construction Performance.

부
속



〈부표 II-3-1〉 보육시설 재무 회계 규칙 내용

| 구분 | | 내용 |
|--------|--------|--|
| 총칙 | 회계연도 | -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 | 출납기한 |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 예산 | 예산편성 | -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 | 준예산 |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보육시설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예산 성립시까지 종사자 보수, 시설운영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등 일부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 | 추가경정예산 |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 | 예비비 | -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 | - 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시설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 | 전용의 제한 |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 이월 | 이월 |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 | 회계총칙 |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이 회계업무 겸임 가능 - 회계 방법은 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 가능) |
| 수입 | 수입 |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 | 지출 |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 | | |
|---|---------|-------------------|
| ○ 예산편성지침을 보육시설에 통보 | 시·군·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 ○ 당해연도 예산편성 |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월전 |
|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인건비 지원 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 보육시설장 | 해당시설만 |
| ○ 이사회의 예산 의결 | 사회복지법인 | 해당시설만 |
|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
| ○ 시설장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보육시설장 |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후 |

[그림 II-4-1] 보육시설 예산편성절차

| | | |
|--|--------|------------|
|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보육시설장 | 출납완료시 |
|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인건비 지원 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 보육시설장 | 해당시설만 |
|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 사회복지법인 | 결산보고서 작성시 |
| ○ 시·군·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 보육시설장 | 익년도 3.31까지 |
| ○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보육시설장 | 결산보고서 제출후 |

[그림 II-4-2] 보육시설 결산절차

〈부표 II-3-2〉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입예산 내역

| 과 목 | | | 내 역 |
|-----------|----------|--------|--|
| 관 | 항 | 목 | |
| 입소자 부담금수입 | 입소비용 수입 | 보육료수입 |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
| | | 수익자부담금 | 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부담 필요경비 |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 금년도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
| 잡수입 | 잡수입 | 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
| | | 후원금수입 |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후원금·찬조금 등 |
| | | 기타잡수입 |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
| 보조금수입 | 경상보조금 수입 | 인건비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시설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
| | | 보육료보조금 | 저소득층 등 아동별 지원되는 보육료 |
| | | 기본보조금 |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영아반운영비) |
| | | 기타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
| | 자본보조금 수입 | 자본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
| 전입금 | 전입금 | 전입금 |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
| | | 차입금 | 일시 운영 차입금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
| | |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보육시설은 잡수입 과목 통합 가능

〈부표 II-3-3〉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출예산 내역

| 과 목 | | | 내 역 | |
|------------|-----------|-------------|--|--|
| 관 | 항 | 목 | | |
| 시설 운영비 | 인건비 | 급여 |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 |
| | |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 | | 제수당 | 종사자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종사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
| | | 사회보험 부담비용 | 종사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 |
| | | 기타 후생경비 | 종사자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종사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
|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 | 직책급 | 시설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회의비 |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 관리 운영비 | 여비 | 종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의료비, 약품구입비 등 | |
| | | 공공요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 |
| | |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시설에서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비, 화재·자동차보험료 | |
| | | 차량비 |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
| |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 | | 기타운영비 |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 | |
| | 사업비 | 사업 운영비 | 급간식비 | 보육아동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보육아동의 간식비 등 |
| | | |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
| 행사비 | |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 |
| 수익자 부담금 지출 | |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 |

(표 계속)

| 과 목 | | | 내 역 |
|-----------|-----------|-------------|---|
| 관 | 항 | 목 | |
| 재산 조성비 | 시설비 | 시설비 |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
| |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
| | |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 |
| 전출금 | 전출금 | 법인회계 전출금 |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 | | 차입금 상환 |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
| | | 반환금 | 정부보조금 반환금 |
| 과년도 지출 | 과년도 지출 | 과년도지출 |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 잡지출 | 잡지출 | 잡지출 |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 금 등 |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시설은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별도) 및 시설비 과목 통합 가능

〈부표 II-3-4〉 J어린이집 예산액과 집행액

단위: 원

| 관 | 과 목 | | 예산액 | 집행액 | 비 고 |
|--------------------|------------|-------------|-------------|-------------|-----|
| | 항 | 목 | | | |
| 합 계(1+2+3+4+5+6+7) | | | 651,686,000 | 638,493,805 | |
| 시 설 운영비 | 소 계 1) | | 466,842,000 | 455,020,577 | |
| | 인건비 | 급 여 | 316,997,000 | 316,996,130 | |
| | | 일용잡급 | 21,158,000 | 21,157,800 | |
| | | 제수당 | 17,431,000 | 11,477,380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26,358,000 | 26,138,460 | |
| | | 사회보험 부담비용 | 24,387,000 | 24,386,780 | |
| | | 기타후생비 | 8,713,000 | 8,247,520 | |
| | 업 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2,500,000 | 900,728 | |
| | | 직책급 | 3,600,000 | 2,450,985 | |
| | | 회의비 | 3,000,000 | 1,043,100 | |
| | 관 리 운영비 | 여 비 | 220,000 | 210,600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17,092,000 | 17,091,474 | |
| | | 공공요금 | 8,455,000 | 8,454,370 | |
| | | 제세공과금 | 3,920,000 | 3,920,000 | |
| | | 차량비 | 0 | 0 | |
| | | 연료비 | 13,011,000 | 12,545,250 | |
| 기타운영비 | 0 | 0 | | | |
| 사업비 | 소 계 2) | | 119,848,000 | 119,795,728 | |
| | 사 업 운영비 | 급간식비 | 72,820,000 | 72,819,148 | |
| | | 교재 교구비 | 10,333,000 | 10,332,580 | |
| | | 행사비 | 7,760,000 | 7,758,480 | |
| | | 수익자 부담금지출 | 28,935,000 | 28,885,520 | |
| 재 산 조정비 | 소 계 3) | | 63,678,000 | 63,677,500 | |
| | 시설비 | 시설비 | 55,286,000 | 55,286,000 | |
| | | 자산취득비 | 7,866,000 | 7,865,700 | |
| | 시설장비유지비 | 526,000 | 525,800 | | |
| 전출금 | 소 계 4) | | 0 | 0 | |
| |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 0 | 0 | |
| | | 차입금상환 | 0 | 0 | |
| 과년도지출 | 소 계 5) | | 0 | 0 | |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0 | 0 | |
| 잡지출 | 소 계 6) | | 0 | 0 | |
| | 잡지출 | 잡지출 | 0 | 0 | |
| 예비비 | 소 계 7) | | 1,318,000 | 0 | |
| | 예비비 | 예비비 | 1,318,000 | 0 | |

〈부표 II-3-5〉 H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단위: 원

| 관 | 과 목 | | 예산액 | 집행액 | 비 고 |
|--------------------|------------|----------------|-------------|-------------|-----|
| | 항 | 목 | | | |
| 합 계(1+2+3+4+5+6+7) | | | 832,636,810 | 670,937,600 | |
| 시 설 운영비 | 소 계 1) | | 596,770,410 | 505,219,100 | |
| | 인건비 | 급 여 | 374,671,500 | 325,824,450 | |
| | | 일용잡급 | 17,650,000 | 21,088,000 | |
| | | 제수당 | 13,320,000 | 12,690,000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31,222,625 | 28,480,370 | |
| | | 사회보험 부담비용 | 33,308,275 | 27,863,960 | |
| | | 기타후생비 | 5,449,000 | 3,690,000 | |
| | 업 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3,600,000 | 3,544,740 | |
| | | 직책급 | 3,000,000 | 1,739,700 | |
| | | 회의비 | 400,000 | 459,700 | |
| | 관 리 운영비 | 여 비 | 2,800,000 | 2,238,700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19,000,000 | 18,778,250 | |
| | | 공공요금 | 25,000,000 | 15,200,150 | |
| | | 제세공과금 | 4,146,000 | 4,680,600 | |
| | | 차량비 | 0 | 0 | |
| | | 연료비 | 14,000,000 | 12,507,880 | |
| | 기타운영비 | 49,203,010 | 26,432,600 | | |
| 사업비 | 소 계 2) | | 199,020,000 | 138,703,740 | |
| | 사 업 운영비 | 급간식비 | 92,400,000 | 80,801,290 | |
| | | 교재교구비 | 19,800,000 | 19,669,080 | |
| | | 행사비 | 1,820,000 | 2,073,640 | |
| | | 수익자 부담금지출 | 85,000,000 | 36,159,730 | |
| 재 산 조정비 | 소 계 3) | | 28,500,000 | 27,014,760 | |
| | 시설비 | 시설비 | 8,000,000 | 7,831,000 | |
| | | 자산취득비 | 13,500,000 | 13,733,600 | |
| | 시설장비유지비 | 7,000,000 | 5,450,160 | | |
| 전출금 | 소 계 4) | | 0 | 0 | |
| |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 0 | 0 | |
| | | 차입금상환 | 0 | 0 | |
| 과년도지출 | 소 계 5) | | 0 | 0 | |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0 | 0 | |
| 잡지출 | 소 계 6) | | 0 | 0 | |
| | 잡지출 | 잡지출 | 0 | 0 | |
| 예비비 | 소 계 7) | | 8,346,400 | 0 | |
| | 예비비 | 예비비 | 8,346,400 | 0 | |

〈부표 II-3-6〉 K어린이집 세입예산과 수납액(2007)

단위: 원

| 관 | 과 목 | | 예산액 | 집행액 | 비 고 |
|--------------------|------------|-------------|-------------|-------------|-----|
| | 항 | 목 | | | |
| 합 계(1+2+3+4+5+6+7) | | | 773,125,065 | 677,184,053 | |
| 시 설 운영비 | 소 계 1) | | 500,780,145 | 474,035,000 | |
| | 인건비 | 급 여 | 322,275,140 | 312,784,650 | |
| | | 일용잡급 | 15,225,000 | 13,359,000 | |
| | | 제수당 | 38,520,000 | 37,560,000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31,499,828 | 28,802,740 | |
| | | 사회보험 부담비용 | 31,090,328 | 27,343,170 | |
| | | 기타후생비 | 12,040,000 | 12,017,600 | |
| | 업 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2,640,000 | 1,225,720 | |
| | | 직책급 | 2,760,000 | 1,585,110 | |
| | | 회의비 | 1,770,000 | 1,058,420 | |
| | 관 리 운영비 | 여 비 | 1,900,000 | 1,375,000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17,227,579 | 14,506,470 | |
| | | 공공요금 | 12,568,650 | 11,422,700 | |
| | | 제세공과금 | 3,343,620 | 3,159,750 | |
| | | 차량비 | 0 | 0 | |
| | | 연료비 | 7,920,000 | 7,834,670 | |
| | 기타운영비 | 0 | 0 | | |
| 사업비 | 소 계 2) | | 216,655,920 | 158,929,853 | |
| | 사 업 운영비 | 급간식비 | 101,100,000 | 77,916,863 | |
| | | 교재교구비 | 28,800,000 | 28,029,790 | |
| | | 행사비 | 5,026,000 | 2,365,700 | |
| | | 수익자 부담금지출 | 81,729,920 | 50,617,500 | |
| 재 산 조정비 | 소 계 3) | | 48,440,000 | 44,219,200 | |
| | 시설비 | 시설비 | 25,500,000 | 25,358,400 | |
| | | 자산취득비 | 14,500,000 | 12,213,200 | |
| | 시설장비유지비 | 8,440,000 | 6,647,600 | | |
| 전출금 | 소 계 4) | | 0 | 0 | |
| |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 0 | 0 | |
| | | 차입금상환 | 0 | 0 | |
| 과년도지출 | 소 계 5) | | 0 | 0 | |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0 | 0 | |
| 잡지출 | 소 계 6) | | 0 | 0 | |
| | 잡지출 | 잡지출 | 0 | 0 | |
| 예비비 | 소 계 7) | | 7,249,000 | 0 | |
| | 예비비 | 예비비 | 7,249,000 | 0 | |